연구보고 2019-06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

박원순·구자연·김보미·임다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06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박 원 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임 다 희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06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정인애드 02)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01-2 9332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우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금까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올 해 처음으로 이주민 가정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대한 외부의 기대도 컸겠으나 면담과 설문조사 등 과정은 쉽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연구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그리고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민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비용에 대한 걱정, 부모, 특히 아버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제한적인 양육 참여의 문제와 질 높은 교육·보육에 대한 관심과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관련 정책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이주배경 가족들의 자녀 양육실태와 정책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연구진의 개별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9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대상 및 범위 19
3. 연구 내용 및 방법 20

Ⅱ. 이주배경 가족의 현황과 육아 29
1. 이주배경 가족의 정의 31
2. 이주배경 가족의 현황 34
3.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문제 49
4. 이주배경 가족 관련 법령과 정책 54
5. 지방자치단체 사례: 경기도 안산시 56

Ⅲ. 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61
1. 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63
2. 호주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74
3. 싱가포르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83
4.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87
5. 소결 98

Ⅳ.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 101
1. 이주배경 가족 육아 실태 설문조사 결과 103
2. 이주배경 가족 육아 관련 심층면담 결과 116
3. 소결 139

Ⅴ.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의 방향 143
1. 이주배경 가족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 145
2. 이주배경 가족 육아지원 방안 ····· 148
3. 주체별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 제언 ····· 152

참고문헌 155

Abstract 161

부록 165

1. 면담질문지 ····· 165
2.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 ····· 167
3. 이주배경 가족 양육 실태 설문 ····· 173

표 목차

〈표 Ⅰ-1〉 이주배경 가족의 유형별 체류 자격 ····· 20
〈표 Ⅰ-2〉 이주배경 가족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 21
〈표 Ⅰ-3〉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 24
〈표 Ⅰ-4〉 설문 응답자의 한국 체류기간별 분포 ····· 25
〈표 Ⅰ-5〉 설문 응답자의 체류자격별 분포 ····· 25
〈표 Ⅱ-1〉 이주배경 가족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정의 ····· 31
〈표 Ⅱ-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34
〈표 Ⅱ-3〉 외국인주민 한국 체류기간별 현황 ····· 34
〈표 Ⅱ-4〉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연령별 현황 ····· 35
〈표 Ⅱ-5〉 체류자격별 경제활동 참가율 ····· 47
〈표 Ⅱ-6〉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 50
〈표 Ⅱ-7〉 국내 체류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현황 ····· 50
〈표 Ⅱ-8〉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외국국적 이주민과 귀화허가자의 응답 ····· 52
〈표 Ⅱ-9〉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1만명 이상 또는 인구대비 비율 ····· 57
〈표 Ⅱ-10〉 2019년 4월 기준 ····· 59
〈표 Ⅲ-1〉 미국 내 이주민 현황 ····· 64
〈표 Ⅲ-2〉 0-5세 아동의 부모의 주요 특성 ····· 70
〈표 Ⅲ-3〉 HIPPY 가구소득 ····· 72
〈표 Ⅲ-4〉 PCHP 이용아동의 연령 ····· 74
〈표 Ⅲ-5〉 Part A의 자격 요건 ····· 79
〈표 Ⅲ-6〉 Part B의 자격 요건 ····· 80
〈표 Ⅲ-7〉 Parental Leave Pay의 자격 요건 ····· 81
〈표 Ⅲ-8〉 Dad and Partner Pay의 자격 요건 ····· 82
〈표 Ⅲ-9〉 Dad and Partner Pay의 추가되는 자격 요건 ····· 82
〈표 Ⅲ-10〉 싱가포르 체류외국인 현황(2019년 기준) ····· 83
〈표 Ⅲ-11〉 싱가포르 인구 증가 예측 ····· 85
〈표 Ⅲ-12〉 Baby Bonus ····· 86
〈표 Ⅲ-13〉 Children Development Account ····· 87

〈표 Ⅲ-14〉 아동수당 지급액 ····· 92
〈표 Ⅲ-15〉 소득 제한 한도액 ····· 93
〈표 Ⅲ-16〉 무상보육 지원 ····· 94
〈표 Ⅳ-1〉 이주배경 가족 설문응답자 일반적 특성(교육년수, 한국체류기간) ·· 104
〈표 Ⅳ-2〉 이주배경 가족 설문응답자 일반적 특성(가계소득별) ····· 105
〈표 Ⅳ-3〉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양육분담 정도 ····· 106
〈표 Ⅳ-4〉 유아교육·보육 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의 차이 · 109

그림 목차

[그림 Ⅱ-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연령별 현황 ····· 35
[그림 Ⅱ-2]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연도·국적별 현황 ····· 37
[그림 Ⅱ-3]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 수 ····· 43
[그림 Ⅱ-4] 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체류 현황 ····· 45
[그림 Ⅱ-5]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체류 현황 ····· 46
[그림 Ⅱ-6] 이민자의 총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 49
[그림 Ⅱ-7]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외국국적 이주민과 귀화허가자의 응답 ····· 51
[그림 Ⅱ-8] 안산시 인구 변화 추이 ····· 56
[그림 Ⅲ-1] 미국 내 전체 인구 및 이주민 ····· 63
[그림 Ⅲ-2] 미국출생과 이민자와의 학력수준 비교 ····· 65
[그림 Ⅲ-3] 미국 내 이민자 아동 현황 ····· 66
[그림 Ⅲ-4] Head Start 프로그램 특성 ····· 68
[그림 Ⅲ-5] Head Start 프로그램 이용 분포 ····· 68
[그림 Ⅲ-6] HIPPY 프로그램 실시지역 ····· 71
[그림 Ⅲ-7] HIPPY 이용자들의 인종 ····· 71
[그림 Ⅲ-8] HIPPY 돌봄자 학력수준 ····· 72
[그림 Ⅲ-9] PCHP 프로그램 실시지역 ····· 73
[그림 Ⅲ-10] PCHP 이용자들의 인종 ····· 74
[그림 Ⅲ-11] 인구증가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정도 ····· 75
[그림 Ⅲ-12] 호주 이민유형(2016년 기준) ····· 76
[그림 Ⅲ-13] 이민자 가족구성(2016년 기준) ····· 76
[그림 Ⅲ-14] 싱가포르 체류외국인 현황(2019년 기준) ····· 84
[그림 Ⅲ-15] 일본 내 이주민 현황 ····· 88
[그림 Ⅲ-16] 일본 내 이주민 구성 현황(2018년 기준) ····· 89
[그림 Ⅲ-17] 일본 내 이주배경 아동 현황 ····· 90
[그림 Ⅲ-18] 아동수당 제도 리플릿 ····· 91
[그림 Ⅲ-19]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 수 ····· 97
[그림 Ⅲ-20]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 수 ····· 97

[그림 Ⅳ-1] 이주배경 가정의 평균 자녀 수 ····· 104
[그림 Ⅳ-2] 이주배경 가정의 주 양육자 ····· 105
[그림 Ⅳ-3]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밥 먹이기 분담 정도 ····· 106
[그림 Ⅳ-4]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옷 입히기 분담 정도 ····· 107
[그림 Ⅳ-5]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놀아주기 분담 정도 ····· 107
[그림 Ⅳ-6]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자녀가 아플 때 돌보기 분담 정도 ····· 108
[그림 Ⅳ-7]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목욕시키기 분담 정도 ····· 108
[그림 Ⅳ-8]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 110
[그림 Ⅳ-9]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긴급히 대리양육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 및 기관 ····· 111
[그림 Ⅳ-10]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자원 ····· 111
[그림 Ⅳ-11]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 112
[그림 Ⅳ-12]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자녀 양육에 활용하는 공공자원 ····· 113
[그림 Ⅳ-13] 이주배경 가족 자녀 유아교육·보육기관 이용 및 미이용 실태 ·· 113
[그림 Ⅳ-14] 이주배경 부모가 자녀의 유아교육·보육기관 선택 이유 ····· 114
[그림 Ⅳ-15] 이주배경 부모가 이사 때 자녀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고려하는 기준 ····· 115
[그림 Ⅳ-16] 이주배경 부모가 이사 때 자녀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고려하는 기준 ····· 115
[그림 Ⅴ-1] 외국인정책위원회 분야별 담당 위원부처 ····· 145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체류 이주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음

-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월 말 현재 1,691,608명

□ 이주민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기여가 상당함

-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를 16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강동관, 2016)
- 2017년도의 외국인들은 약 1조 2천억원의 소득세를 납부

□ 우리나라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육

- 한국은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에서 상위 10위권 (세이브더칠드런, 2019)
-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국적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아동의 출생지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은 크게 개선된 바가 없음

□ 연구의 목적

-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실태를 파악하고, 육아지원 방안 도출
- 대표적 이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른 이주민 집중거주지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밝힘
-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양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제안

나. 연구대상 및 범위

□ 이주배경 가족 중 등록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함

-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그 가족을 연구 대상으로 함

다. 연구 방법

□ 심층면담

- 재정착 난민 4명, 난민인정자 2명, 인도적 체류자 3명, 유학생 1명, 이주노동자 2명 등 총 12명, 관계단체 관계자 총 3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
-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연구진 2~3명과 통역,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의 동행으로 실시되었음
- 면담 시간은 대략 2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어 분석에 사용되었음

□ 설문조사

- 외국국적동포,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웹으로 제작된 설문을 휴대전화, 컴퓨터, 프린트된 설문지의 형태로 실시
- 설문 내용은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로 번역하여 실시

□ 사례조사

- 안산시를 방문하여 경기도 안산의 지자체 지원 실태를 조사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안산시 소재 어린이집, 안산시 영유아 학부모 면담을 통하여 안산시의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지원 정책 조사

2. 이주배경 가족의 현황과 육아

가. 이주배경 가족의 정의

□ 광의의 정의

- 광의의 이주배경 가족은 가족의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모든 경우를 포함

□ 유사 용어

- 외국인, 이민자 등은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대칭되는 개념이지만 이중국적자 혹은 귀화자의 경우 경계선에 있음

나. 이주배경 가족의 현황

□ 난민의 현황

- 이 연구에서 난민은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를 모두 포괄하여 난민으로 통칭함
- 난민의 63.0%가 자녀를 기관이 아닌 집에서 돌보고 있음 (김현미 외, 2010)

□ 이주노동자의 현황

- 이주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
- 갈수록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음

□ 외국국적동포의 현황

- 2018년 8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국적동포는 총 862,722명 (진현준 외, 2018)
- 지금까지 주로 중도입국자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CIS국가 출신의 경우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학생의 현황

-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월 현재 161,153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 유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20.9%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에 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큼

다.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문제

□ 정책적 지원 미비

- 결혼이주여성, 법적 다문화가족의 자녀 외에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비함

□ 사회적 지원 미비

- 이주민 자녀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 지지망이 필요하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임

라. 이주배경 가족 관련 법령과 정책

□ 관련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법」 등 이주배경 가족이 직접 관련된 법률
-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이주배경 가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인권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의 국제 협약

마.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경기도 안산시

□ 인구 특성

- 안산시의 외국인을 제외한 총인구는 2019년 5월 현재 657,260명으로 2011년 7월 총인구가 716,423명을 기록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
- 안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주민은 82,242명 (행정안전부, 2018)으로 전체 인구의 11%가 넘음
-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 주민 2/3가 외국인임 (박범종, 2017)

□ 안산시 이주배경 가족 관련 제도

-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2개의 과에 다문화정책, 외국인인권, 다문화특구지원, 다문화복지, 지구촌문화, 다문화교육 등 6개의 담당 24명의 조직이 시의 외국인주민관련 정책을 총괄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외국인노동자의집, 제일다문화센터, (사)손에손잡고,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다문화안전경찰센터 등 민관 협력의 다양한 전달체계 구축
-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학비 지원금이 전체 외국인 관련 예산 중 약 절반에 해당

3. 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가. 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 인구 변화

- 미국내 체류 이주민 비율 1990년 7.9%에서 2017년 13.7% (미국이민정책연구원, 2019 인출)

□ 이주배경 아동 지원 제도

-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국적을 획득하므로 이주배경 아동의 지원은 부모의 국적 등으로 확인하며 이민자 양육 지원 제도 역시 저소득층 지원과 병행되어 실시하고 있음
- 헤드스타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주로 기관을 중심으로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임
- 홈비지팅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혹은 이주배경 가정을 방문하여 학교 준비와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나. 호주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 호주의 이민정책

- 호주는 꾸준히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호주는 자국 내 부족한 노동인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금 투자자와 기술자 우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음 (문병기 외, 2018)

□ 보육비 보조금(CCS, Child Care Subsidy)

-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3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호주에서 인정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보육비 보조금을 지급
- 기본적으로 시민권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특수 목적 비자, 다양한 임시비자(Partner Provisional 또는 Temporary Protection)를 소지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임.
- 구체적인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액이 산정
- CCS이외에도 Additional Child Care Subsidy가 있는데, 일부 가족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

□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 주로 CCS 의 대상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짐

□ 양육비 지원금(Parenting Payment)

-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한부모는 8세 미만) 지원
-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함

다. 싱가포르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 싱가포르의 이주자 현황

- 싱가포르 2019년 현재 총 인구는 약 570만명 수준임
- 싱가포르 전체 인구 중 비영주권자가 1990년 31만명 수준에서 2019년 167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싱가포르의 이민 아동 지원 제도

- 이민자들의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인 경우 16주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자녀의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자녀가 7세가 될 때까지 유급 보육 휴가(단,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일 경우 기준이며 시민이 아닌 경우 고용 계약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6일의 유급 영아 보육 휴가(단,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일 경우 기준이며 시민이 아닌 경우 고용 계약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라.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 일본의 이주자 현황

- 일본의 합계출산율 2017년 기준 1.43으로 인구감소가 지속적인 사회문제
- 2018년 현재 이주민이 약 342만명에 달하고 있음
- 이주자 증가에 따라 이주 배경 아동의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 일본의 이주 아동 지원 제도

- 아동 수당은 중학교 졸업시까지 일본 내 자국민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 (2012년 6월 12일 외국인 관련 규정 개정)

- 지급 금액은 아동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 유치원, 탁아소, 기타 인정되는 기관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의 모든 어린이가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유아 교육 및 보육의 무상화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이용에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음
- 학교교육에 있어서 일본 아동은 의무교육의 대상이지만 이주배경 아동은 의무교육 의무교육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이주배경 아동이 학교에 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학교에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습득을 위한 별도의 일본어 교육을 제공

4.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

가. 이주배경 가족 육아실태 설문조사 결과

□ 자녀의 주 양육자

- 이주배경 가족의 주 양육자는 부모이며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1/4 이상임

□ 독박육아

- 아버지의 긴 노동시간으로 양육 참여율이 낮음
- 어머니 중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는 주중/주말 양육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박육아” 현상이 심각함

□ 부모교육 요구

- 정책 지원 요구 중 자녀의 발달에 관한 지식 등을 배우고 싶다는 요구가 가장 높았음

□ 높아진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 83.2%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음
- 이사를 하는 경우에 75.7%의 응답자가 자녀의 교육·보육 기관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나. 이주배경 가족 육아실태 심층면담 결과

□ 의료시설 및 보험 제도

- 2019년 7월16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여 최소 월 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
- 중위수준의 최소 건강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료보험 만족도가 높음
- 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기 전에는 비싼 병원비에 사회단체의 지원 등이 없이는 병원 이용이 제한적이었음
- 보건소 등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정책 등이 전달되지 않아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의사소통의 문제 등은 번역 앱이나 단골 병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안전

- 한국사회의 안전함에 만족도가 높음
-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교육

-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한국의 자유로운 교육환경 등 출신국가에 비해서 수준이 높음
- 한국의 교육문화는 양육문화와 더불어 강점임

□ 높은 취업 의지

- 대부분 높은 취업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야근 등 초과 근로를 자청하고 있음
-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음

□ 직종 다양성

- 이주민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왔으나 한국에서의 직업은 대부분 단순 생산직 혹은 식당 서비스 등으로 유사함
- 고용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훈련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직종으로 전환을 꾀하는 경우도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이주민의 구직활동에는 제한이 많음

□ 일과 육아

- 이주민들은 주로 노동집약적 직종에 종사하기에 그리고 맞벌이를 선호하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
- 자녀 육아를 돕기 위한 친척이 비이주민들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에 구직에도 제한이 많음
- 직장의 문제로 출신국 조부모에게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음
- 구직에 있어서도 어린 자녀는 제약으로 여겨짐
- 많은 이주 배경 부모들이 부부간에 양육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 맹모삼천지교

- 이주배경 부모들이 다양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으며 주요한 요인 중 자녀의 양육 문제가 있음
- 자녀를 위해 보다 나은 어린이집을 찾고 있으며 그 조건으로 긴 보육 시간,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 한국어 습득 등의 이유가 있었음
- 최근 안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보육료 지원정책도 일부 이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서류 처리 등의 복잡함, 다른 부모님들이 싫어함,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의 곤란함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미인가 보육시설 이용 혹은 방임

- 이주배경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따른 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특히 장시간 이용 시간), 어쩔 수 없이 미인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이전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아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 자녀를 방임하고 직장에 가는 경우도 있음

□ 미디어의 사용

- 이주배경 부모들은 모국어로 자녀와 의사소통하고 싶어하지만 또한 한국에서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의 습득을 원함
-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핸드폰 등 멀티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지역의 도서관에 모국어로 된 서적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음

5. 이주배경 가족 육아지원 방안

가.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의 방향

□ 인권, 이주 아동의 권리

-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동과 아동의 권리에서 출발
- 출생등록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사회 통합적 관점

-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정책은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이주민의 불가시성(invisibility) 해소

- 한국의 기본적인 통계 및 정책에서 국민이 아닌 주민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함

나. 이주배경 가족 육아지원 방안

□ 법령에 따른 적극적 지원

- 이주민 가족이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주민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 지원체계 강화

- 이주아동은 미등록 아동도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는 있으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은 등록이주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제한이 많고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육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 지원이 더욱 절실함
-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주아동을 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들을 수용한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 자료의 다양한 언어번역 지원 서비스 등이 필요함

□ 미인가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간접 지원

- 이주민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 중 미인가인 경우가 많음
- 미인가시설의 인가 전환 시 민간단체의 후원이 끊기는 경우에 정부에서 민간단체를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방식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와 같이 미인가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간접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지원

- 이주민 부모가 조기에 정착하고 양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이 필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해 양육관련 지식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을 정책 조율을 위한 컨트럴타워 구축

- 이주민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의 컨트럴타워가 필요
- 컨트럴타워는 현장의 모든 일을 도맡는 방식이 아닌 조율하고 안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부서 및 전달체계가 능동적으로 이주민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자녀 가정의 지역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건강보험료가 적지 않은 수준임(2019년 기준 11만원 선)
- 유학생의 경우 50%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 만큼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이주배경 가족에게도 이와 같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 주체별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 제언

□ 중앙정부

-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경제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다니는 기관에 바른 지원이 필요함

- 기본계획의 수립에 국민이 아닌 이주민을 포함한 “주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양육지원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주민을 위한 양육지원정책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가 많은 시간을 거쳐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안산시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시민단체 등

- 정부 기관에서 집행하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지원 사업이 실제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시민단체의 활동역시 공적인 활동으로 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직되고 부족한 전달체계를 보완하도록 적극 활용해야 함

I

서 론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대상 및 범위
03 연구 내용 및 방법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경제·사회·정치적 변화로 국가 간의 거리 및 시간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Guillen, 2001). 우리나라 역시 최근 2~30년간 인적교류가 꾸준히 증가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노동을 위하여, 유학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위하여 한국을 찾고 있다. 2019년 1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257,116명으로 단기체류자 565,508명을 제하고도 1,691,608명이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이주민의 수가 늘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 특히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변화된 산업구조,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해, 이주민이 없는 우리나라 경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2~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의 취업자 수를 바탕으로 경제기여효과를 추정한 강동관(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측면으로 바라볼 때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53.7조 원으로 추정(2012년: 부가가치유발효과 13.6조 원과 생산유발효과40.0조 원)되며 중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74.1조원으로 추정(2016년: 부가가치유발효과 18.8조원 + 생산유발효과 55.3조 원)되고, 장기적으로는 162조 원의 경제적 총 효과를 추정(2026년: 부가가치유발효과 41.3조원 + 생산유발효과 121.0조 원)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2019. 1. 15)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동안 신고된 외국인의 소득세는 8,407억원이었으며 2017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액인 3,645억원을 합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약 1조 2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관세 426억원을 납부하였으며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간접세

까지 합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납부하는 국세의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편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과 이탈방지를 위해 입학 및 전학, 특별학급 설치,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한데 이어 아동의 교육권 보장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과,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한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내실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2015: 95).

아동 삶의 질에 관한 한 국제 NGO 단체의 최근 보고서(Save the Children, 2019)에 따르면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서유럽 8개국과 함께 상위 10위권에 랭크되었다.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서비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같은 비용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유아 양육부문에서 단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대부분 국적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이주민이 우리 국민에 준하는 자녀 양육환경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나라는 국적이나 인종 등 다양한 배경에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이주아동은 교육, 의료, 보육 서비스 등의 접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지 근 3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의 출생지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은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

이주배경 가족이 낯선 환경에서 육아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및 다양한 종류의 지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 전반에 걸친 문제를 밝히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처한 열악한 양육환경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누차 지적된 바가 있다. 그러나 정작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 이주아동조차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과제의 연구자들은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유효한 초등 저학년 이하의 등록 이주아동의 양육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실태를 조사하여 그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 육아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먼저 이주배경 가정에서 자녀 돌봄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현 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한다.

둘째, 대표적 이주민 집중거주지역인 기초자치단체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른 이주민 집중거주지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밝히고, 어려움 및 단점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극복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셋째, 이주아동의 등록제도 및 행정 절차를 검토하여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양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 대상 및 범위

2017년 말 국내 등록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은 222,455에 이른다(행정안전부, 2018). 그러나 위와 같은 등록 이주아동 외에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18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8,000명가량(최대 약 1만 3천여명, 최소 5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병기 외, 201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배경 가족과 그들의 아동 자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법령과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 및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관련 연구가 아동을 주로 18세 미만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를 위한 대상은 연구의 편의 등의 이유로 초등 고학년 이상 청소년이 주되다 할 수 있다.

한편 등록 이주아동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일지는 모르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제도 및 지원 정책이 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내국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여 등록 이주아동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껏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주배경의 가족뿐 아니라 국내 일반 국민들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3학년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

진 등록 이주아동과 그 가족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진 초등 저학년 이하의 자녀와 그 가정이며 이들을 체류 자격별로 5가지의 유형(영주자격 포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Ⅰ-1〉 이주배경 가족의 유형별 체류 자격

	유형	가족체류 불가	가족체류 가능/양육지원 비대상		정부의 양육지원 대상
1	이주 노동자	E-9	E-1~E-7 전문인력	F-2 거주 F-5 영주	
2	(외국인) 유학생	D-4-1, D-3	D-2 유학생 D-10 구직		
3	난민		G-1-5 난민신청자 G-1-6 인도적체류자		F-2-4 난민인정자
4	외국국적 동포	H-2 방문취업	F-4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 심층면담, 설문조사, 자문회의, 사례조사의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주로 선행연구와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과 관련한 연구와 인구주택총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교육통계 결과를 통하여 전반적인 국내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한 기술통계를 검토하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배경 가족의 현안을 분석하였다.

나. 심층면담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실태조사는 질적 접근법을 통한 심층면담의 방법과 설문조사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이다.

심층면담은 이주배경 가족의 부모와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 중 심층면담의 대상은 자녀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 즉, 등록·미등록 이주아동, 중도입국 자녀, 해외 출생 국내 입양 아동 등 초등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한편 이주배경 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는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는 것은 이주배경 가족의 다양한 특성과 차이로 인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할만큼 충분한 사례수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집단별로 사례수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그 대표성을 충분히 얻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련 기관의 종사자 역시 NGO 단체의 활동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산하기관 및 전달체계의 종사자 등 다양한 차이가 있고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특성이 제각기 달라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이주배경 가족의 부모 면담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Ⅰ-2〉 이주배경 가족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연번	성별	구분	국적	입국	체류자격	자녀 수
1	여	재정착난민	미얀마	2018년	G-1	2
2	여	재정착난민	미얀마	2018년	G-1	1
3	여	재정착난민	미얀마	2015년	G-1	5
4	여	재정착난민	미얀마	2016년	G-1	8
5	남	난민인정자	아프리카*	2016년	G-1	4
6	여	난민인정자	아프리카*	2010년	G-1	2
7	여	인도적체류자	시리아	2015년	G-1	2
8	여	인도적체류자	시리아	2016년	G-1	1
9	여	인도적체류자	중국	2015년	G-1	5
10	여	이주노동자	베트남	2012년	D-10 귀화 신청	1
11	남	이주노동자	방글라데시	2011년	F-2	1
12	여	유학생	몽골	2011년	F-2	2

* 면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출신 국가를 표시하지 않음

면담참여자 1(여)은 미얀마 국적의 재정착 난민으로 2018년 12월 입국했으며, 현재 경기도 ○○에 거주 중이다.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는 2015년생,

2018년생 두 명이 있으며,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2(여) 역시 미얀마 출신의 재정착 난민으로서 2018년 입국, 경기도 ○○에 거주 중이며, 남편과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 자녀는 2014년생 한명이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3(여)은 미얀마 출신의 재정착 난민으로 2015년 12월 입국, 인천 ○○에 살고 있다. 자녀가 5명이 있으며 막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4(여)는 미얀마 출신의 재정착 난민으로 2016년 11월 입국했으며, 인천 ○○에 거주중이다. 자녀가 8명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는 2003년생이며, 미취학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5(남)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2016년 12월에 입국하였으며, 2017년 12월 난민인정자 체류자격을 얻었다.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경기도 ○○에 거주중이다. 자녀는 2002년생, 2009년생, 2012년생, 2015년생 4명이 있으며 가장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6(여)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으로 2010년에 입국, 2018년 7월 난민인정자 체류자격을 얻었다. 경기도 ○○에 살고 있으며 2011년생과 2014년생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7(여)은 시리아 출신의 인도적체류자로 2015년 입국했으며 경기도 ○○에 살고 있다. 자녀는 2015년생과 2017년생 두 명이며, 첫째 자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둘째 역시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첫째 자녀의 경우 현재 NGO 기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8(여)은 시리아 출신의 인도적 체류자로서 2015년 말 입국했으며 현재 경기도 ○○에 거주중이다. 연령은 23세로 구직 중이며, 2016년생 자녀가 한명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9(여)는 중국 출신의 인도적 체류자로서 산아제한 정책을 피해 2015년 입국했으며, 현재 서울 ○○에 거주중이다. 자녀는 5명이며, 2014년생과 2015년생 두 자녀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9는 76년생으로 초기이민자들을 위한 멘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남편은 건설업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면담참여자 10(여)은 88년생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으로 2012년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는 귀화 신청 중에 있으며,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왔던 베트남인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경기도 ○○에 거주중이며, 2015년생 자녀가 한명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면담참여자 11(남)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민으로 2011년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는 거주비자(F-2)를 취득한 상태다.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배우자 역시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6년생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중이다.

면담참여자 12(여)는 몽골 출신의 이주민으로 2011년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해서 현재는 거주비자(F-2)를 취득한 상태로 경기도 ○○에 거주중이다. 배우자 역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해서 현재 거주비자(F-2) 자격을 얻었으며,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2년생과 2017년생 자녀가 두 명 있으며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한편 연구진은 이주배경 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 2명, NGO 단체 활동가 3명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NGO 단체 활동가는 각각 광주의 고려인 마을을 설립하고 안착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활동가와 난민의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난민 지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시작으로 이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이주민을 돕는 역할을 하는 단체의 대표였다. 또한 이주민 아동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 2명을 개별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주민 부모가 보육기관에 바라는 바를 들을 수 있었다.

다. 설문조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이주배경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으로 인해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설문은 웹으로 제작되어 휴대전화, 컴퓨터 등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기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린트된 설문지에 응답을 하고 이를 관계기관에서 온라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이주배경 가족의 특성상 무선적으로 표집하거나 체계적으로 표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주민 지원 NGO 단체, 이주민 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 등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이주민 중에서 자녀가 초등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모집 기관에서 확인한 참여자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응답 혹은 허위 응답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 참여자는 가급적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 이주민을 중심으로 모집하였으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았고, 응답자의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효한 설문은 총 155건을 확정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었지만, 240건 이상의 설문은 온라인 설문의 특성 및 6개 언어 버전을 사용하는 복잡함 등으로 인하여 중도 포기, 동일인의 반복적인 입력,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설문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표 Ⅰ-3〉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합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이상	아프리카/중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무응답
155명	31	124	24	82	49	72	48	27	8
100.0%	20.0	80.0	15.5	52.9	31.6	46.5	31.0	17.4	5.2

*러시아 출신 4명은 편의상 중앙아시아에 포함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는 전체 155명이었으며 이들 응답자 중에서 여성이 12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0.0%에 이르렀고 남성 응답자는 3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15.5%, 30대가 52.9%, 40대 이상이 31.6%로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설문 참여자는 국적은 총 27개국으로 출신지역별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이 46.5%, 중앙아시아 31.0%, 동아시아 17.4% 였다. 다만 4명의 러시아 출신의 응답자는 언어 등의 유사성으로 중앙아시아로 분류하였다.

〈표 Ⅰ-4〉 설문 응답자의 한국 체류기간별 분포

합계	한국체류기간별			
	4년 미만	4~9년	10년 이상	무응답
155명	62	76	10	7
100.0%	40.0	49.0	6.5	4.5

한편 한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보면 4년 미만이 40.0%, 4년 이상 10년 미만이 49.0%, 10년 이상이 6.5%였다.

〈표 Ⅰ-5〉 설문 응답자의 체류자격별 분포

합계	체류자격별								
	G1	F4	H2	F2	F1	F3	D2	F6	모름/무응답
155명	57	34	23	11	10	6	1	1	12
100.0%	36.8	21.9	14.8	7.1	6.5	4.4	.6	.6	7.7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를 체류자격별로 구분하여 보면, 난민신청 후 인도적체류자격을 얻은자(G-1)가 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국적동포(F-4) 34명, 방문취업비자 소지자(H-2)가 23명, 난민인정자 등 거주자(F-2)가 11명, 방문동거비자 소지자(F-1)가 10명, 동반자(F-3)가 6명, 종교인(D-2) 및 결혼이민자(F-6)가 각각 1명씩 있었다.

라.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연구 내용의 조정, 사례조사 대상 검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정부 부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 부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이며, 관련 학계는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교수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다. 관련 현장 전문가는 각 시·도의 자치단체 공무원, 법무부 공무원, 전달체계 직원과 시민단체 활동가와 더불어 이주배경 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등이다.

마. 사례조사

경기도 안산시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른 69개의 외국인(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 집중거주지역이다. 특히 안산시 원곡동은 주민의 60% 이상이 외국 국적의 이주민이라 타지역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안산 시청 소속의 공무원, 민간단체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등과 지역 부모 면담을 바탕으로 안산시의 이주민 양육 지원정책을 입체적으로 보았다.

Ⅱ

이주배경 가족의 현황과 육아

01 이주배경 가족의 정의

02 이주배경 가족의 현황

03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문제

04 이주배경 가족 관련 법령과 정책

05 지방자치단체 사례: 경기도 안산시

Ⅱ. 이주배경 가족의 현황과 육아

1. 이주배경 가족의 정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2015. 5)는 이주아동을 “한국 국적이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되 이들을 출생지에 따라서 외국과 한국 출생자로 구분하고, 국적에 따라서는 외국국적자 혹은 무국적자로, 그리고 유효한 체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 이주아동과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주배경 가족은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가정과 이들의 자녀에 관련된 다양한 정의는 위의 이주아동에 대한 구분에 더해, 결혼이주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외국에서 낳은 외국국적 자녀인 중도입국 자녀, 이민자, 귀화자,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유학생, 난민, 외국국적 동포,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 해외 출생 아동의 국내 입양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 가족은 가족 중 어느 한명이라도 외국(북한 포함)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표 Ⅱ-1〉 이주배경 가족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정의

번호	용어	정의
1	미등록 이주아동	법적으로 국내 체류가 유효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스스로의 사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18세 미만의 아동
2	등록 이주아동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갖지 아니한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한국에 이주한 부모가 한국 체류 중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로 사증의 체류기간이 유효한 자
3	중도입국 청소년	①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모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 ②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한 청소년, ③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그리고 ④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중국인 등)과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청소년[1)]

번호	용어	정의
4	이민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던 자가 해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장기간(91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5	귀화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2]
6	결혼 이주(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3]
7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4]
8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해 대한민국의 학교에 다니는 자
9	난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5]
10	외국국적 동포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6]
11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7]
12	다문화 가족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13	해외 출생 국내 입양 아동	해외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 와/또는 모의 가정에 입양된 아동

가. 외국인, 이민자 vs. 이주자,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

외국인은 당사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이라고 칭한다. 즉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외국인이다. 그러나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이주민을 포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의 경우 그렇다. 물론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1)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2) 「국적법」 제4조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12. 18). 대한민국은 미가입.
5) 난민협약(1951).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않고, 타 국가의 국적의 취득은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주민인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체택하고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출생한 국민이 한국에 돌아온 경우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민자는 어떠한가? 이민자 역시 국적을 중심으로 외국국적을 지닌 사람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민자라고 부르겠지만, 한국국적자가 이주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체류자격에 있어서도 귀화자의 경우 이주자로는 분류되기는 하지만 이민자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귀화자 역시 이주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기에 외국인이나 이민자로 분류되지 못한다.

즉 이처럼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배경을 지닌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이주배경이라는 표현이 유용할 수 있다.

나. 합법체류 외국인 아동 vs. 등록이주아동

합법체류는 불법체류의 대응어이다.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지 못했거나 체류자격의 시효가 만료된 외국인을 불법체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적극적 이주 옹호자의 경우 합법적인 이주와 불법적인 이주로 나누는 근거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는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에도 언제부터 이를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이러한 체류 자격 등과 관련한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가 다르고, 이를 해석하는 법률 기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합법과 불법을 임의대로 명명하는 대신 등록 혹은 미등록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이주배경 가족의 현황

가. 우리나라 이주배경 가족의 일반 현황

서론에서 밝힌 바처럼 본 연구의 대상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진 초등 저학년 이하의 자녀와 그 가정이지만 먼저 우리나라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Ⅱ-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주민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총계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17년	1,861,084	1,479,247	495,792	160,653	117,127	276,750	428,925	169,535	212,302
	구성비	(79.5%)						(9.1%)	(11.4%)
16년	1,764,664	1,413,758	541,673	159,501	95,963	235,926	380,695	159,447	191,459
	구성비	(80.1%)						(9.0%)	(10.8%)
증감	96,420	65,489	△45,881	1,152	21,164	40,824	48,230	10,088	20,843
	(5.5%)	(4.6%)	(△8.5%)	(0.7%)	(22.1%)	(17.3%)	(12.7%)	(6.3%)	(10.9%)

출처: 행정자치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이주민은 한국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44.7%이며 3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66.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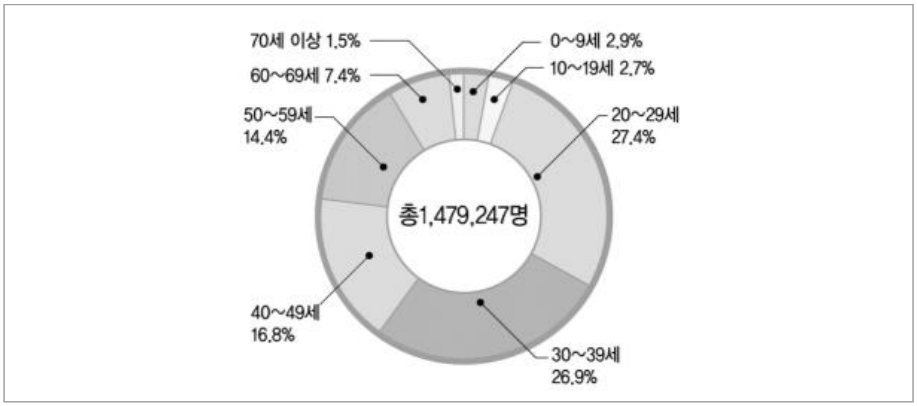
〈표 Ⅱ-3〉 외국인주민 한국 체류기간별 현황

(단위: %)

	합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외국인	100.0	1.8	7.4	24.5	21.5	25.7	19.0
남자	100.0	1.9	7.3	26.2	22.9	24.6	17.1
여자	100.0	1.8	7.6	22.1	19.7	27.2	21.6
귀화허가자	100.0	0.2	0.2	1.3	5.9	53.7	38.4

출처: 통계청·법무부(2018). 보도자료: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44.

[그림 Ⅱ-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연령별 현황



출처: 행정자치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45.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외국국적의 이주민 총 1,479,247명 중 20대가 가장 많은 405,422명(27.4%), 그 다음으로는 30대 : 398,025명(26.9%), 세 번째로는 40대 249,196명(16.8%), 그리고 50대 : 212,663명(14.4%), 60대 : 109,584명(7.4%), 10세 미만 : 42,174명(2.9%), 10대 : 39,379(2.7%), 70세 이상 : 22,804명(1.5%)의 순으로 연령대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05,422명(27.4%)으로 가장 많으며, 20대와 30대를 합하면 54.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30.1%)가 여자는 20대(26.6%)가 가장 많았다.

〈표 Ⅱ-4〉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남		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479,247	100	845,663	100	633,584	100
0~9세	42,174	2.9	21,499	2.5	20,675	3.3
10~19세	39,379	2.7	18,645	2.2	20,734	3.3
20~29세	405,422	27.4	236,600	28.0	168,822	26.6
30~39세	398,025	26.9	254,872	30.1	143,153	22.6
40~49세	249,196	16.8	145,034	17.2	104,162	16.4
50~59세	212,663	14.4	106,646	12.6	106,017	16.7
60~69세	109,584	7.4	54,155	6.4	55,429	8.7
70세이상	22,804	1.5	8,212	1.0	14,592	2.3

출처: 행정자치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45.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문병기 외, 2018)는 외국인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200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자녀가 있는 체류자 중 합법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학부모 478명과 외국인 부모에서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미취학, 학생(초·중·고등학생·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연령층 아동 중 합법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동 329명을 조사하였다. 체류 이주민으로서 한국에서의 자녀보육은 '어렵지 않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6.3%에 불과한 반면, 어렵다고 답한 경우는 42.9%이고, 50.8%가 보통(한국인과 비슷하다)고 대답했다. 어렵다고 대답한 경우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6.6점으로 낮게 나왔다.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등록 시 어려운 점으로는 47.4%가 출생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42.2%가 출생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준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양육 장소(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집'(93.5%),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 위탁'(8.8%), '친가/외가, 아는 지인에게 위탁'(6.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주 양육자로는 '엄마'(76.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부모(7.6%), 거의 혼자 지냄(5.1%)로 조사되었다. 부부간 양육분담을 살펴보면, '주로 엄마 양육, 아빠 일부 도움'(41.8%), '엄마 전담 양육'(31.5%), '부부공동'(25.1%), '주로 아빠 양육, 엄마 일부 도움'(1.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보육시설 경험 비율은 57.8%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시설 이용 경험은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 시 어려웠던 점은 '친구 사귀기'(26.3%), '서툰 한국 말'(13.2%), '집에서 보육시설까지의 먼 거리'(12.6%), '부모가 준비물 못 챙김'(1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 정책 요구 중 국내체류 아동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최우선 고려요소로서 국내체류 아동은 한국어 교육 서비스(53.5%), 한국사회 이해 교육(30.4%), 진로지도(30.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군포아시아의 창(2012)이 발간한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양육환경 조사결과는 보육환경으로는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보육료의 부담으로 주변 지인에게 맡기는 빈도도 높았다. 보고서에서 이주민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대부분이 보육시간에 만족을 하고 있었으나 과반수가 넘게 보육료에는 부담된다고 하였다. 또한 군포아시아의 창 외(2012)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 아동은 출생신고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보였으나 병원이용이 많은 유아기의 외래진료는 많은 할인이 되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양육환경은 비용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문제로 고국으로 보내지게 되는 아이들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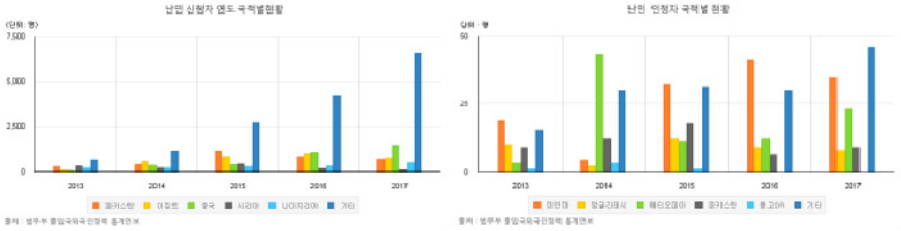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문병기 외, 2018)는 합법체류와 미등록체류의 구분 없이 학부모·아동 대상 심층면담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학부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자녀교육이 힘들다, 자녀 양육비 지원 필요 등을 이야기하였고, 아동은 부모님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혼자 있어야하는 시간이 길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학부모는 교육비용이 비싸다, 어린이집 보육비 부담이 크다 등이 있었고, 아동은 다문화 가족 지원과 따로 공부하는 방법, 외국어 공부와 한국어 공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었다. 외국인이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의 결과로 학부모는 아동 교육 무료서비스,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실시, 한국정부의 일자리 해결 등이었고 아동의 경우 이주아동을 위한 시설, 한국 문화 체험 교육 등을 이야기하였다.

나. 난민 현황

1) 일반 현황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는 증가추세로 “2011년 1,011명에서 2013년 1,574명, 2015년 5,711명으로 늘어났다” (김환학, 2016: 209). 최근 장기간 공항에서 기거하는 공항 난민가족에 대한 기사(정철운, 2019. 3. 7., 미디어오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한해 동안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9,942명인데 반해 난민 인정자는 121명에 그치고 있다.

[그림 Ⅱ-2]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연도·국적별 현황



출처: e-나라지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 Detail. do?idx_cd=2820 에서 2019. 3. 11. 인출

난민인권센터(2018)에 의하면 국내난민신청자의 평균 체류허가 기간은 3개월이며, 난민 신청 후 G-1-5체류 자격을 받고 6개월 이후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취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 제도는 난민신청자의 취업 범위를 단순노무직종에 한정하고 있어서 단순노무직종의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건장한 성인남성을 선호하여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현실은 생계유지와 주거지 확보에도 영향을 미쳐 체류지 입증 서류가 없어 체류연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난민인권센터, 2018). 또한 난민법 제4조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초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무부의 홍보가 미비하고 생계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배정된 예산액도 적은 문제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재정착난민을 위해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음악심리치료, 푸드아트테라피,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난민신청자에게는 한국어, 한국문화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난민인권센터, 2018).

2) 난민 신청자[8)]

2012년 제정 및 2013년 시행된 국내 난민법 제2조에는 난민의 지위를 크게 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 ②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 ③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 ④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재정착희망난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난민인정자(Recognized refugees)는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인도적체류자(Humanitarian status holders)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그리고 난민신청자(Refugee Status Applicants)는 난민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8) 노충래·고주애·윤수경·김주리(2017).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참고

난민불인정 결정이나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 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착희망난민은 난민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박영아, 2015). 하지만 우리나라에 난민 유입이 보다 본격화된 것은 2012년 제정,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이다. 난민법으로 인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으며(난민법 제6조),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난민의 자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난민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출입국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먼저 난민인정 심의 회부 여부 결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는 이 단계를 거치고 난민인정 심사 회부가 결정되면 난민신청접수증이 교부된다. 난민 인정심사 회부가 결정되면 그 즉시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보장되어 거주지의 제한, 난민심사를 위한 출석요구 등의 조건을 전제로 90일 범위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입국한 난민신청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담당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이후 난민신청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거점사무소에서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된다.

두 번째 난민 신청 방법은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이다. 즉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난민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난민 인정심사를 받는다.

난민심사관 등은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 또는 진술 등을 검토하고, 난민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면접을 하고,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난민 여부를 결정한다. 그 결과 난민인정자인 경우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불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결정을 받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송효진 외(2015). 연구는 난민인정 심사과정, 절차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부족으로 인해 제기 되는 인권의 문제들이 발견돼 절차상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난민여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 등에 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유민·오은정(2016)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의 처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교육에서는 초·중등교육은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어서 재정적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재정이 뒷받침되더라도 언어장벽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심리부분에서도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4곳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나 언어적 어려움이 나타났고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도움을 줄 전문가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료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감기 등 일반적인 진료는 불가했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되는 의료비용이 상당했다. 생계비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며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6개월 동안 영종도에 위치한 난민지원센터에서 거주할 수 있다.

3) 인도적 체류자[9)]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체류가 허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은 G-1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포괄적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고, 난민법에 규정된 주거시설의 지원, 교육의 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같은 수준의 처우 지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사회적 권리는 대부분 제한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2015)의 연구에서 인도적 체류자들은 난민 인정심사 과정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는 기준이 불투명하고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9) 노충래·고주애·윤수경·김주리(2017).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참고

면밀한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케 하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2015)에 따르면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특히 아랍어로 된 서류나 책자는 한국에 거의 없어서 출산에 임박한 시리아난민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음에도 의료서비스 정보를 몰라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소개했다.

4) 난민 인정자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이다. 기본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 적응 교육, 학력·자격 인정, 배우자 및 그 미성년자녀의 입국 허용 등의 처우가 보장된다. 난민 인정자에게는 F-2 비자가 발급되어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취업과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김현미 외, 2010). 구체적으로 난민은 난민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난민인정자 본인이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33조). 또한 이들은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며(난민법 제34조),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35조, 제36조). 즉 난민은 참정권을 비롯한 일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 국민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외국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현미 외, 2010).

5) 난민 지원 민간단체의 역할

신은주 외(2018)의 연구는 시민사회단체인 더칠드런의 난민관련 사업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에 의하면 “더칠드런은 국가로부터 생계비, 보육비, 지원을 받고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난민인정자는 제외”(p.47)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더칠드런은 2010년부터 20가정의 아동들에게 월 20만원씩 아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초의 경

제적 지원을 실시하였고, 아동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난민 부모교육'을 연간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주제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제공' 및'자녀 양육 기술 및 부모자녀 애착증진' 등으로 제공하였다(신은주 외, 2018). 이 단체는 국내 지지 체계가 취약한 난민아동이 한국에서 생활함에 있어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신은주 외, 2018).

노충래 외(2017)는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신청 중이거나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4개월에서 18세 미만의 난민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국내 난민 현황, 국내외 난민아동 및 부모지원체계, 국내 난민 아동 실태조사 및 연구 현황 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노충래 외(2017)(2017)은 난민부모에 대한 경제적, 언어적, 자녀양육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난민아동의 건강권 보장, 난민영유아 대상 언어영역발달지원이 필요하며, 전체 난민아동에 대한 한국어교육, 학습, 예체능 활동, 진로 상담 등의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환경 조성과 이중언어 사회복지사 및 전문가 양성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6) 난민의 육아 문제

김현미 외(2010)의 연구는 조사에 응한 난민의 54.3%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무상보육 및 교육정책이 보편화된 2012년 이후의 연구가 없어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지만 김현미 외(2010)의 연구는 난민의 63.0%가 자녀를 기관이 아닌 집에서 돌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일반 한국 국민의 경우보다 가정내 양육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육료 및 교육비가 비싼 것을 들고 있다.

김현미 외(2013)는 난민아동의 체류조건 및 법적 지위, 난민아동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생활실태조사, 난민 부모 및 아동의 건강 및 심리적 상태조사를 통해 난민 아동의 삶의 질이 부모의 난민지위, 취업상황, 심리적 안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부모의 난민지위가 체류권 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난민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삶의 불안정성은 아동의 양육, 건강, 심리, 교육, 미래 기획에 있어 기회와 자원을 제한하며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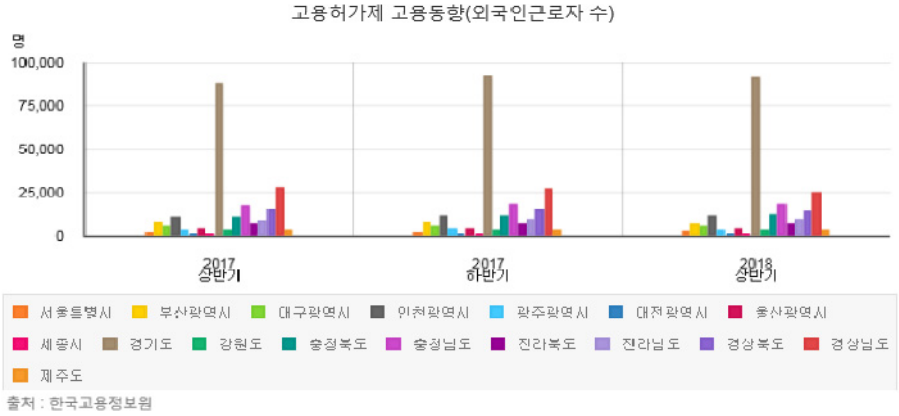
김현미 외(2013)는 또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이 아동이나 난민 후속세대 관련 구체적인 지원책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안에 난민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와 보호의 내용뿐만 아니라 난민 후속세대, 즉 이들의 자녀에 대한 '통합'관점의 서비스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미 외(2013)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가족' 단위의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 난민이 아이의 출생, 양육, 교육, 건강 및 의료, 문화적 전수 및 안전한 거주공간의 마련 등 한국에서 사회적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방식과 형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난민아동의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마련해주는 것이 비호국의 임무이며 이를 위해 난민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이나 UN 사회문화권 보장 등의 아동 인권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이주노동자 현황

1) 일반 현황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 노동자의 수는 2018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총 222,374명에 이르고 있다. 밝힌 바대로 이는 법무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수만을 표시한 것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그림 Ⅱ-3]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 수



출처: e-나라지표,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1 에서 2019. 3. 11. 인출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보통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한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E-1~7 전문직 취업으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의 육아 문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최근 선행연구(군포아시아의 창 외, 2012)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한국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결혼 후에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도입국자 자녀보다 이들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양육문제는 미등록 출생 자녀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김이선(2015)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단체나 시설이 생겨났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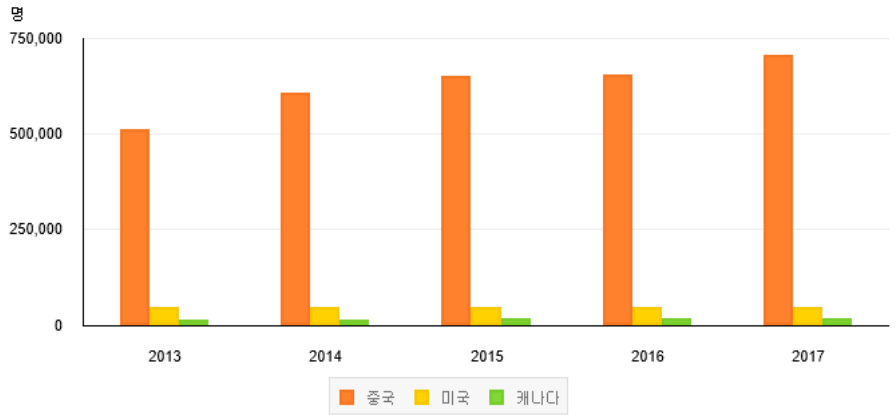
장복희(2008)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실태는 아주 열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국제엠네스티 2007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36만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특히 1/3에 해당하는 여성이주노동자는 성폭행 등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장복희, 2008).

라. 외국국적동포 현황

1) 일반 현황

2018년 8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국적동포는 총 862,722명이다 (빈현준·육동형·강성환·공존행, 2018).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중국 동포 자녀와 구소련 국가 동포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판준, 2018: 121).

[그림 Ⅱ-4] 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체류 현황



출처: e-나라지표, 외국국적동포 연도별·국적별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 Detail. do?idx_cd=2821 에서 2019. 3. 11. 인출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국적 동포의 경우 2017년 현재 702,932명이 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동포는 보통 H-2 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원하는 사람은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는다.

오정은(2015)은 국내거주 고려인 연구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을 통한 입국자통계, CIS국가 출신 외국인 가운데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F-4사증과 H-2 사증 소지자 통계를 통해 보면 입국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밝혔다. 오정은(2015)은 연구에서 중앙정부의 고려인동포 관련 정책이 현지 출신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거주 고려인을 위한 정책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지원사업 이외에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오정은(2015)은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낯선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적응으로 고려인이 동포임에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초기적응 과정에 언어와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2) 외국국적동포의 육아문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증가하며 특히 학교 내에서 이들을 돕기위한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포 및 구소련 국가 동포자녀가 대부분인 외국국적 동포 자녀는 중도입국자녀가 많은 데 이들은 거주국 언어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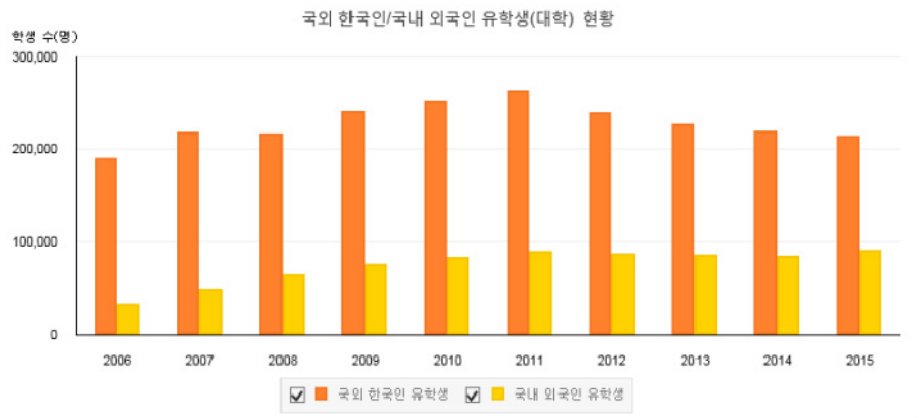
많아 이들의 언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기울어져 왔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중언어 정책을 도입한 학교와 대안 교육 기관들이 들어나 외국국적 동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돕고 있다 (김판준, 2018).

마. 유학생 현황

1) 일반 현황

유학생의 체류자격은 교육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지만 D-2 비자로 매학기 학교에 등록하고, 제약조건 하에 시간제 노동을 통해 일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림 Ⅱ-5]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체류 현황



출처: e-나라지표, 교육기본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 에서 2019. 3. 11. 인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20.9%로 2017년 15.6%에 비하여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에 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5〉 체류자격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천 명, %)

		'17년					'18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8년 외국인 합계		868.7	834.2	356.6	70.9	68.1	929.1	884.3	371.7	71.4	68.0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255.7	255.6	0.2*	99.9	99.9	262.3	262.1	0.0*	100.0	99.9
	방문취업(H-2)	174.4	166.7	27.1	86.6	82.7	179.8	170.5	29.9	85.7	81.3
	전문인력(E-1~E-7)	38.2	38.2	0.4*	99.2	99.2	36.9	36.6	0.3*	99.2	98.4
	유학생 (D-2, D-4-1, 7)	15.4	12.4	83.2	15.6	12.6	25.3	19.6	96.1	20.9	16.2
	재외동포(F-4)	194.0	181.6	83.9	69.8	65.3	211.6	199.1	95.0	69.0	64.9
	영주(F-5)	78.1	74.8	24.5	76.0	72.8	83.0	78.6	21.1	79.8	75.6
	결혼이민 (F-2-1, F-6)	54.0	52.0	54.5	49.8	47.9	63.0	60.1	45.6	58.0	55.3
	기타	58.9	53.0	82.8	41.6	37.4	67.2	57.7	83.7	44.6	38.3

출처: 통계청·법무부(2018). 보도자료: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62.

2) 유학생의 육아문제

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상 이들의 결혼과 양육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 지역 외국인 유학생 인권실태 관련 연구(송미영, 2016)에서 밝힌 연구대상 외국인 유학생 중 기혼자 비율은 3.2%에 달했다. 2019년 1월 현재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161,153명인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만일 위의 연구의 기혼자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약 5,157명의 기혼자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결혼 생활 및 양육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바. 기타 이주민 현황

연구의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이주배경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이주민"은 그런 점에서 이주배경을 가졌지만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주민을 말한다.

먼저 이주배경 가족의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은 흔히 다문화 가정으로 알려진 결혼이주민 가족이다. 한국인 배우자(대부분 남편)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대부분 아내)가 국내에 거주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경우이다. 2017년 현재 18세 이하 외국인·다문화 가정 자녀는 총 201,333명이다 (김판준, 2018). 이들의 양육 실태는 집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주 양육자는 결혼이민자 어머니 본인인 경우(74.3%)가 가장 많았다 (장명림 외, 2013). 자녀 양육에 주된 조력자에 있어서는 주로 시댁식구(57.8%)이며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사람 역시 시댁식구(35.7%, 장명림 외, 2013; 37.4%, 서문희 외, 2011)가 가장 많았다. 부모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자녀와 함께 문화생활을 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2019)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국내에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 1월 현재 결혼 이민자는 159,74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2019). 그러나 이 숫자는 결혼 귀화자의 숫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실제 결혼 이주자의 수는 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미경 외(2017)의 연구는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정을 다루었는데, 결혼이민자의 특성상 한국에 친척이 거의 없어서 긴급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다문화 가족의 양육 지원은 부족한 혈연관계의 1차 네트워크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조모임과 2차 네트워크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8~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해외로 송출하는 입양에 대해서만 관심이 주어져 왔다. 그러나 결혼이주자가 늘어나면서 본국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입양청구를 하는 일이 늘어나 해외출생 국내 입양 아동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보연, 2019). 현재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혼 자녀의 입양아동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에 정확한 해외 출생 국내 입양아동의 수를 알기는 어렵다 (신윤정, 2019).

3.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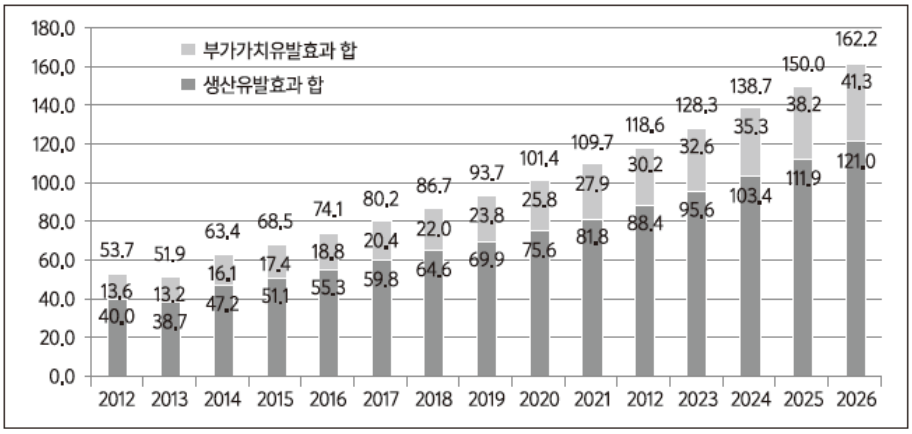
가. 이주민 증가의 배경

이주민이 우리나라 경제에 162조 원의 경제적 총 효과를 추정(2026년: 부가가치유발효과 41.3조원 + 생산유발효과 121.0조 원)한 강동관(2016)의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민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소득은 올리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그림 Ⅱ-6] 이민자의 총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조 원)



출처: 강동관(2016). 국내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39.

그러나 국세청(2019. 1. 15)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동안 신고된 외국인의 소득세는 8,407억원이었으며 2017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액인 3,645억원을 합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약 1조 2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관세 426억원을 납부하였으며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간접세까지 합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납부하는 국세의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표 Ⅱ-6〉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귀속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 체류인원(천 명)		1,576	1,797	1,899	2,049	2,180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천 명)	480	508	544	563	558
	소득금액(억 원)	6조 6,305	8조 1,405	8조 8,431	9조 4,462	9조 8,130
	세금(억 원)2)	6,025	6,614	6,947	7,210	7,707

출처 : 법무부(2019) 2018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표 Ⅱ-7〉 국내 체류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현황

귀속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종합 소득세	신고인원(천 명)	41	49	61	73	85
	소득금액(억 원)	1조 6,926	2조 376	2조 650	2조 1,539	2조 3,156
	세금(억 원)1)	2,957	3,654	3,781	3,577	3,645
일용 근로소득	신고인원(천 명)	435	425	440	472	499
	소득금액(억 원)	3조 9,239	4조 6,374	5조 3,344	6조 8,180	7조 7,379
	세금(억 원)2)	144	209	310	523	700

출처 : 법무부(2019) 2018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이와 같이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출국에 송금하는 것 등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부정확한 가짜뉴스(예, 한겨레신문, 2019년 6월 24일, 외국인은 한국에 기여한 바 없다? 황교안의 주장은 틀렸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9087.html) 에 기대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들 이주 노동자들이 송출국에 임금을 보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것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다양하지만, 이들의 가족이 이들과 함께 동반자 자격으로 체류하려면 체류자격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제한적인 조건과 함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가능하다.

나. 국내 이주배경 가족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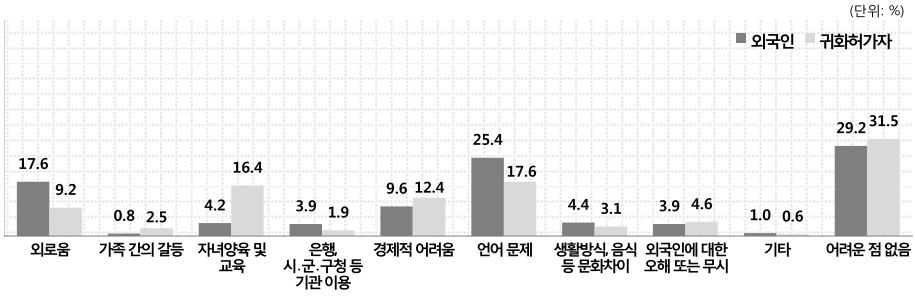
이주아동을 위해서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과 이탈방지를 위해 입학 및 전학, 특별학급 설치, 학력심의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한데 이어 아동의 교육권 보장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과,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한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내실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2015: 95).

아동 삶의 질에 관한 한 국제 NGO 단체의 최근 보고서(Save the Children, 2019)에 따르면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서유럽 8개국과 함께 상위 10위권에 랭크되었다.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같은 비용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유아 양육 부문에서 단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대부분 국적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이주민이 우리 국민에 준하는 자녀 양육환경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통계청·법무부(빈현준 외, 2018)에서 실시한 이민자 체류실태조사결과 이주민들에게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귀화허가자, 즉 장기간 국내에 체류한 이주민의 경우 외국인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른 응답을 보인 것이 자녀 양육 및 교육(16.4%)으로 언어문제(17.6%) 다음으로 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7]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외국국적 이주민과 귀화허가자의 응답



출처: 통계청·법무부(2018). 보도자료: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33.

〈표 Ⅱ-8〉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외국국적 이주민과 귀화허가자의 응답

(단위: %)

	외국인			귀화허가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외로움	17.6	20.9	13.4	9.2	5.4	10.0
가족 간의 갈등	0.8	0.6	1.2	2.5	1.1*	2.8
자녀양육 및 교육	4.2	2.9	6.0	16.4	6.5	18.3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	3.9	3.5	4.3	1.9	3.3	1.9
경제적 어려움	9.6	8.9	10.5	12.4	19.6	11.1
언어 문제	25.4	26.8	23.5	17.6	6.5	20.0
생활방식, 음식 등 문화차이	4.4	4.7	4.0	3.1	2.2	3.2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	3.9	3.1	5.0	4.6	5.4	4.4
기타	1.0	1.0	1.0	0.6	1.1*	0.5*
여려운 점 없음	29.2	27.6	31.2	31.5	50.0	27.6

출처: 통계청·법무부(2018). 보도자료: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76.

우리나라는 국적이나 인종 등 다양한 배경에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이주아동은 교육, 의료, 보육 서비스 등의 접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체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및 양육지원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지 근 3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의 출생지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은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김소영·송효진·김연재(2016)의 연구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자녀와 관련해서 부모가 이혼에 이르는 과정, 이혼 이후 생활을 살펴보았는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자립의 어려움으로 방치되는 자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영·문영민(2017)의 연구는 이주배경가족의 자녀가 이들의 합법적 체류 자격 여부와 관계 없이 결혼이주여성이나 법적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양육 및 교육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것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 없이 비용을 자부담으로 전부 지불한다고 해도 이주민 자녀는 입소우선

순위에 밀려 원하는 어린이집에 원하는 시기에 보낼 수 없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김나희(2019)는 이주배경 아동의 상당수가 높은 보육료로 인해, 그리고 어린이집의 입소거부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들이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지켜주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보육료를 저렴하게 받으며 외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과 기부금으로 운영예산을 받는다고 했다(김나희, 2019).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인가를 받으면 재정이 안정되나 행정업무가 많고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인가를 받지 않으면 언어소통이 원활하고 보육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보육교사로 채용해 운영할 수 있다고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Portes와 Fernández-Kelly (2008)는 이민 아동 종단연구(CILS,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 자료의 분석을 통해 1992~1993년의 표본 5,262 사례 중에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전문 직종에 진출한 사례는 오직 50 건에 불과했음이 2002~2003년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혔다. Portes 와 Fernández-Kelly (2008)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례들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런 특징 중 하나는 “매우 현저한 타자”(really significant others: 예를 들어 교사, 상담사, 가족의 친구, 혹은 형이나 누나 등)였으며 또 다른 것은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남영옥(2012)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른 성인의 지지라고 밝혀, 이들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지망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남영옥(2012)은 개인요인 중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주배경 가족이 낯선 환경에서 육아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및 다양한 종류의 지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 전반에 걸친 문제를 밝히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처한 열악한 양육환경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누차 지적된 바가 있다. 그러나 정작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 이주아동조차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주배경 가족 관련 법령과 정책

이주배경 가족과 그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 제6조에서 다루고 있다. 헌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기에 이주배경 가족의 아동은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법」 등이 이주배경 가족이 직접 관련된 법률들이며,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도 이주배경 가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률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인권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의 국제 협약 역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주배경 가족 및 그 자녀와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문제 및 이에 대한 개선에는 일반 국민의 정책의견이 중요한데, 문병기 외(2018)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출생등록 혹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문제, 강제퇴거 유예정책, 미등록 이주아동의 합법적 관리의 필요성,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교육 혜택 및 복지혜택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과 동록 이주아동 간의 동일한 권리보장과 같은 개선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군포아시아의 창(2012)이 발간한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와 관련한 법제도 현황과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한국 내 관련 근거법 내에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유아/아동의 건강과 보육 등에 관련한 국내법과 지방조례, 시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상우·박지인(2018)연구는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의 논의들을 통해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상우·박지인(2018)은 이주아동이 우리 헌법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이며,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으로서 그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제한될 수 없으며, 아동의 이익과 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우·박지인(2018)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등록 이주 아동이나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이주아동 체제에서 이주아동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들(문병기 외, 2018; 신윤정 외, 2018; 홍현미라 외, 2016)은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령 및 제도를 살피고 있다. 홍현미라 외(2016)는 우리나라 의 정책과 제도를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권, 국적취득권, 보육·교육권, 건강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문병기 외(2018)는 우리나라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을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출생등록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신윤정 외(2018)는 아동의 연령, 자유권(체류권 및 구금되지 않을 권리), 공정하게 처우받을 권리, 출생등록권, 국적권, 가족생활권(비분리 및 가족 재결합),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통적이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출생등록에 관한 문제인데, 김철효 외(2013)에 의하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부모의 체류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등록이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등록은 출생등록의 기본적인 요건인 출생지와 부모에 관한 사항이 없기에 출생증명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철효 외(2013)에 의하면 난민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국으로부터 국적을 확인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사실상 무국적' 상황인데, 당당 공무원이나 신고인이 국적란을 임의로 기재하고 있다고 한다. 출생등록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다른 권리의 보장 및 정부의 교육 및 복지서비스 등에 기본이 되기에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홍현미라 외(2016: 23)는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지역, 출생 장소 등 출생 여건과 관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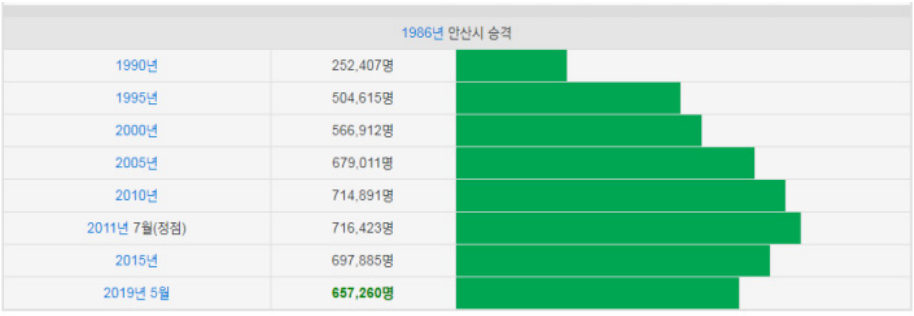
한 국가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인 보편적 출생 등록(universal birth right)을 소개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경기도 안산시

가. 안산시 이주민 현황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9년 5월 현재 총인구 657,260명이나 이는 외국인을 제외한 수이다. 특히 2011년 7월 총인구가 716,423명을 기록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은 82,242명으로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69개의 시군구 중에서 가장 외국인주민이 많은 곳이며 이는 2016년 79,752명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자치부, 2018).

[그림 Ⅱ-8] 안산시 인구 변화 추이



출처: 행정자치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2018, 8)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이주민 주민수가 3만 이상인 시군구가 10개 있는데 먼저 안산이 82,242명, 수원 58,302명, 영등포 54,145명, 화성 51,928명, 구로 49,996명, 시흥 49,564명, 부천 37,278명, 평택 31,957명, 천안 30,379명, 금천 30,317명에 이른다. 한편 절대 인구기준과 달리 인구 구성 비율로 따져서 총 인구 대비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는 모두 8개로, 영등포 13.8%, 음성 12.6%, 금천 12.1%, 구로 11.4%, 안산

11.2%, 포천 11.2%, 진천 11.2%, 시흥 11.1% 순으로 이어진다. 참고로 전국의 외국 국적의 이주민 비율은 3.6%이다.

〈표 Ⅱ-9〉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1만명 이상 또는 인구대비 비율

구 분	인구 대비 10% 이상(8)	인구 대비 5% 이상(29)	인구 대비 3% 이상(22)	인구 대비 3% 미만(10)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10)	안산시 영등포구 구로구 시흥시 금천구	화성시 평택시	수원시 부천시 천안시	
외국인주민수 2만명 이상(12)		관악구 김해시 김포시 아산시 광진구 동대문구	성남시 부평구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 청주시
외국인주민수 1만명 이상(34)	포천시 음성군	광주시 용산구 안성시 경주시 오산시 종로구 울주군 양주시 서울중구	인천서구 남동구 광산구 동작구 제주시 파주시 성북구 서대문구 인천남구 마포구 연수구 성동구 거제시 경산시 군포시 광명시 이천시	안양시 달서구 서울강서구 송파구 남양주시 전주시
외국인주민수 1만명 미만(13)	진천군	당진시 부산강서구 논산시 영암군 함안군 동두천시 창녕군 금산군 완도군 고령군 성주군 진도군		

출처: 행정자치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9.

그중에서도 안산시 원곡동은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 3명 중 2명이 외국인이다(박범종, 2017). 원곡동 일대는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고 다양한 다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은 1970년대 반월공단 건설로 당시 신길동, 선부동, 원시동, 와동 등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하게 된 곳이다 (박범종, 2017).

한편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와 서울올림픽을 통한 중국과 교류 확대 및 고향방문입국 허용 등의 제도로 중국동포들과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이 많이 유입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의 산업구조의 중심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옮겨가며 중소규모의 제조업체가 밀접한 반월공단은 경기침체로 국내노동자의 이탈현상이 심화되었다. 국내노동자의 이탈과정에서 이러한 중소사업장의 내국인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들이 대체하게 되어갔다(구본규, 2013; 박범종, 2017에서 재인용).

특히 공단의 인력난과 고용허가제도 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원곡동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 이주노동자 거주지가 되어갔다. 그래서 원곡동은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 '외국인마을' '국경없는 마을' 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2015; 박범종,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안산시는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기존의 민간단체와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정성영 외, 2016). 다만 정성영 외(2016)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나. 안산시 관련 조례 및 제도

안산시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안산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삼았다.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2개의 과에 다문화정책, 외국인인권, 다문화특구지원, 다문화복지, 지구촌문화, 다문화교육 등 6개의 담당 24명의 조직이 시의 외국인주민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외국인노동자의집, 제일다문화센터, (사)손에손잡고,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다문화안전경찰센터와 같은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다. 안산시 육아지원 사업의 예: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안산시는 2018년 7월부터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22만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11월부터는 관내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만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는 어린이집과 동일한 22만원을 공립유치원은 6만원을 지원하지만 이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기본 학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 것이다. 이어서 안산시는 2019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1인당 22만원을 지원하지만, 0~2세의 보육료는 연령별, 그리고 이용 서비스(종일반 및 맞춤반)의 종류에 따라 22만원을 상회하므로 지원금액으로 보육료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아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연간 시의 추정 지원금 총액을 나타낸 표이다.

〈표 Ⅱ-10〉 2019년 4월 기준

구분	대상연령	수혜자	1인당 월간 지원금	월간 지원금 총액
어린이집	0~5세	1,440명	220천원	316,800천원
유치원	3~5세	200명	사립 220천원 공립 60천원	(최대)44,000천원 (최소)12,000천원
		1,640명	연간 약39억 5천만원 ~ 43억 3천만원	

출처: 안산시청 내부자료

안산시의 외국인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은 체류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기에 수혜자 숫자는 매달 변동이 크다. 그러므로 보육료 혹은 유아 학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 중에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안산시의 사례를 기준삼아 전국에서 안산시와 같은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단순히 비율로 계산해 본다면 전국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국적의 영·유아 중 약 33,733명이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유치원의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공립유치원에서 지원하는 유아가 거의 없고 전부 사립유치원을 다닌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900억원의 보육료 및 유아 학비가 전국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01 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02 호주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03 싱가포르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04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05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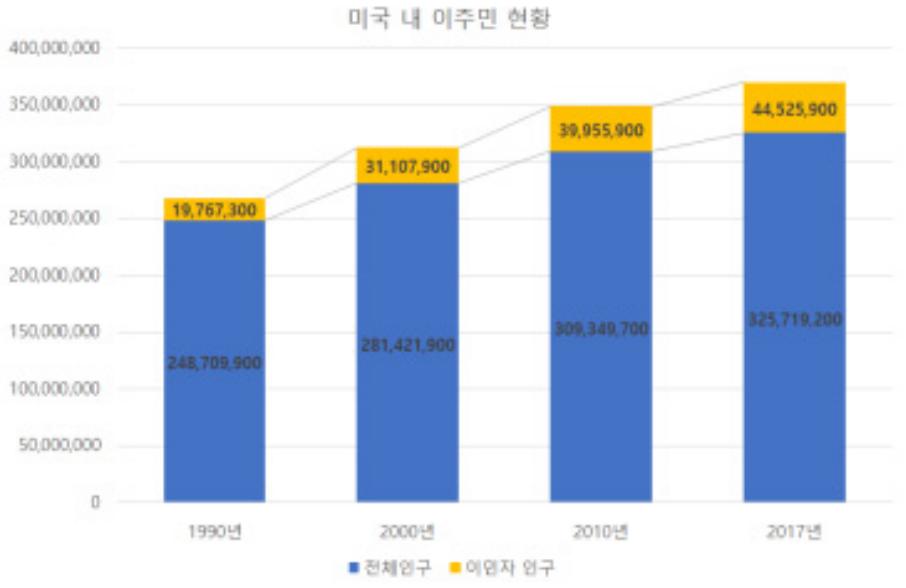
Ⅲ. 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1. 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가. 미국 내 이민자 현황

미국은 대표적인 다(多)민족국가이며, 세계적으로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면서 발전한 국가이다. 트럼프 정부 이후 트럼프 정부 이후 반(反)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내 이주민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미국 내 체류하는 이주민들의 수는 44,525,900명으로 1990년 19,767,300과 비교하였을 때,

[그림 Ⅲ-1] 미국 내 전체 인구 및 이주민



출처: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총 인구수 및 이민자 점유율,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immigrant-population-state-1990-present?width=900&height=850&iframe=true 에서 2019. 9. 11. 인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들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26.9%), 뉴욕(22.9%), 뉴저지(22.8%)의 순으로 이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미국 이민정책연구소, 2017).

미국 내 체류하는 이주민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7.9%에서 2017년 13.7%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에서 2000년의 이주민 증가가 가장 급격하게 나타났으며(1990년 7.9%→2000년 11.1%) 이후에는 다소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 미국 내 이주민 현황

구분	1990	2000	2010	2017
전체 인구(명)	248,709,900	281,421,900	309,349,700	325,719,200
이주민 인구(명)	19,767,300	31,107,900	39,955,900	44,525,900
이주민 비율(%)	7.9	11.1	12.9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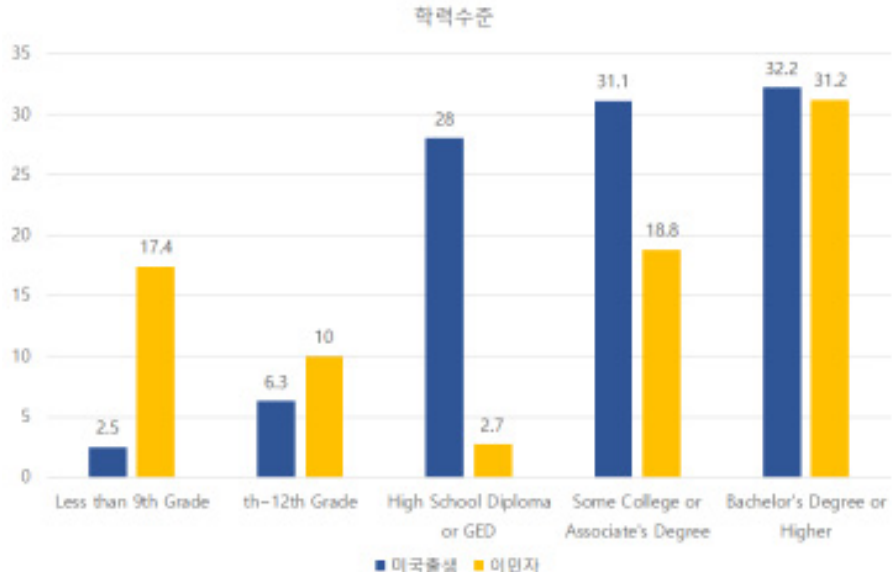
출처: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총 인구수 및 이민자 점유율,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immigrant-population-state-1990-present?width=900&height=850&iframe=true 에서 2019. 9. 11. 인출

2017년 미국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출생국가(미국 및 미국이외)에 따른 학업성취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내 거주하는 25세 성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며, 미국출생과 이민자와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항목은 미국의 학교 학년 기준으로 9학년 이하의 학력 차이이다. 이민자의 경우 9학년 이하의 학력 수준이 17.4%였으나 미국출생 성인의 경우 2.5%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 졸업에서 전문대 수준의 학력을 가진 미국출생 성인이 이민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많았으며,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의 차이는 미국출생자가 32.2% 이민자는 31.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출생자와 이민자의 학력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2] 미국출생과 이민자와의 학력수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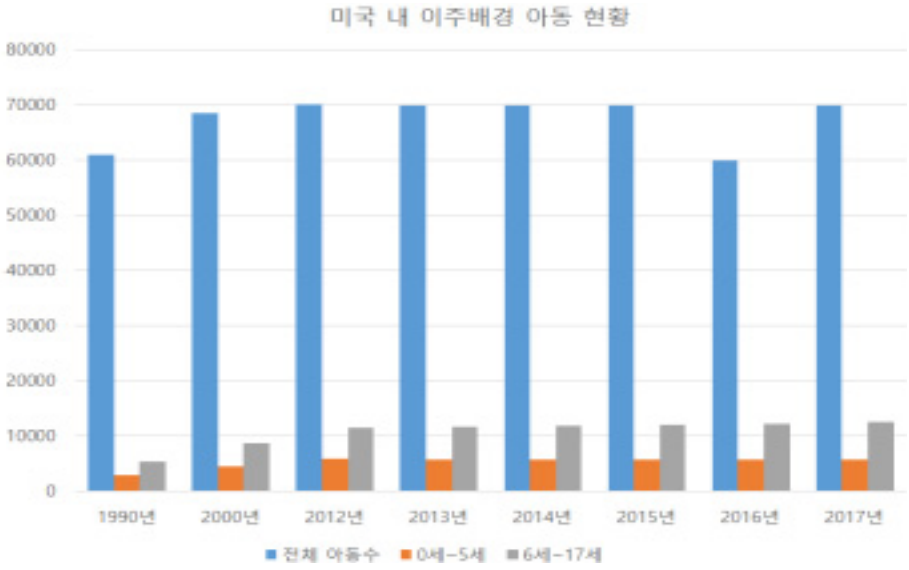


출처: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7년 출생 및 출생 국가별 미국 성인(25세 이상)의 교육 달성.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us-immigration-trends 에서 2019. 9. 11. 인출

이주민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주민 아동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미국 내 이주민 아동을 살펴보면 1990년대 13.4%에서 2017년 26%로 약12.6% 수준으로 이주민 배경의 아동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전체 아동 인구에서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의 비율이 20%를 넘긴 시기는 2000년대 초반[10]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 내 이주민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2000년 이후의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0) 2000년 미국 내 이민자 배경을 지닌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19.1%이다.

[그림 Ⅲ-3] 미국 내 이민자 아동 현황



출처: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미국 이민자 가족, programs/data-hub/charts/children-immigrant-families?width=900&height=850&iframe=true 에서 2019. 9. 11. 인출

2017년 기준에 따르면 4명 중 1명의 어린이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이주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reenberg et al. 2019). 이민자 배경을 지닌 부모의 아이들은 미국 어린이 인구의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94%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이 이들에게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며,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Mark et al. 2016: 2).

나. 이민자 아동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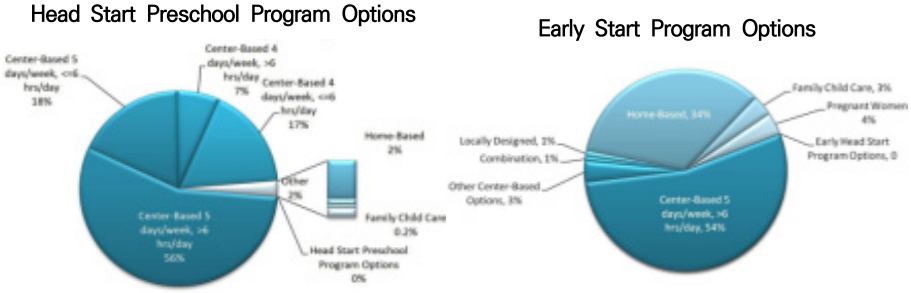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미국으로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민자들을 미국사회에 흡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나 정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병기 외, 2018: 110). 하지만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미국 내 영토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부여 하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주배경을 지니고 있을 지라도 자녀가 미국 내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미국에서 제공하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Head Start

Head Start는 미국 내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5세까지 어린이의 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사회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모델은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센터 또는 학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은 가정을 중심으로 제공되기도 한다(https://www.acf.hhs.gov). Head Start는 1965년 존슨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최초의 대규모 연방정부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이며(Mark et al, 2016: 8), 오늘날까지 미국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7년 부시 대통령 재임시절 Head Start Act가 마련되었으며 Head Start 품질 강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방정부의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와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내 Head Start 사무소가 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이다. 아동가족국(ACF)은 50개 주를 10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지역마다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Head Start 사무소가 10개의 지역사무소를 관리하는 구조이다(보건복지부, 2015).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이중언어 학습자 즉, 이주배경을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Head Start 등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Head Start 또는 Early Head Start에 등록하는 어린이 1/4이 상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다. Head Start를 이용하는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92%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86%와 아버지의 90%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났다(McNamara, 2016).

Head Start Preschool 프로그램 이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센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주 5일 이상의 이용자 비율이 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Head Start Preschool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센터에 기반을 두고 이용하는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정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4%로 나타났다.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의 경우 비교적 연령이 낮은 아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분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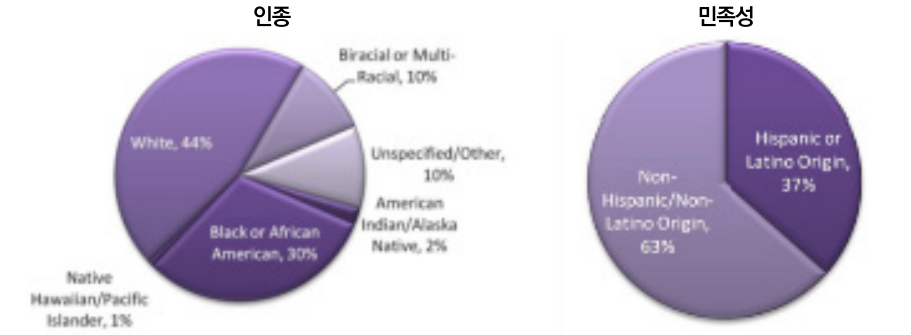
[그림 Ⅲ-4] Head Start 프로그램 특성



출처: 헤드스타트 홈페이지, https://eclkc.ohs.acf.hhs.gov/about-us/article/head-start-program-facts-fiscal-year-2018# 에서 2019. 9. 17. 인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Head Start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의 아동 대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신분 제한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대부분은 이러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Mark et al, 2016: 10). Head Start 프로그램의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인종은 백인이 44%로 나타났으며,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 Head Start 프로그램 이용 분포



출처: 헤드스타트 홈페이지, https://eclkc.ohs.acf.hhs.gov/about-us/article/head-start-program-facts-fiscal-year-2018# 에서 2019. 9. 17. 인출

2) Home Visiting

Home Visiting은 전반적으로 미국 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학교 준비를 보조하는 것, 부모의 자녀양육 보조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보편적 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부모의 교육수준,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Park et al, 2019: 4).

2017년 미국 내에서 운영된 15개의 Home Visiting 서비스는 3,523,599 가구를 방문하였으며, 그 중 304,259가구와 334,354명의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가구 중 1가구는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두었으며, 부모 10명 중 3명이 고졸미만의 학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NHVRC, 2018: 13.

이주배경을 지닌 부모를 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Home Visiting은 미국 내 비교적 열악한 환경(저소득층 및 거주환경 등)에 처해있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본래 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과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Park et al, 2019: 5). 0-5세 아동 부모들의 주요 특성을 이민자와 비이민자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자 부모의 경우 영어실력이 부족한 사준인 비율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이민자의 경우 1.6%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언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 내 언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들의 진학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에서도 이민자 부모와 비이민자 부모와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졸 이상 대졸 미만의 교육수준에서 이민자 부모와 비이민자 부모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도 비이만 부모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을 대상으로 Home Visiting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Ⅲ-2〉 0-5세 아동의 부모의 주요 특성

	이민자 부모		미국 출생 부모	
	수	비율(%)	수	비율(%)
영어 수준				
전체 인구	6,486,000	100.0	22,003,000	100.0
제한된 영어 실력	3,249,000	50.1	356,000	1.6
교육 수준				
25세 이상 부모 인구	6,170,000	100.0	19,623,000	100.0
고졸 미만	1,684,000	27.3	1,271,000	6.5
고졸 이상 대졸미만	2,472,000	40.1	10,835,000	55.2
대졸 이상	2,013,000	32.6	7,517,000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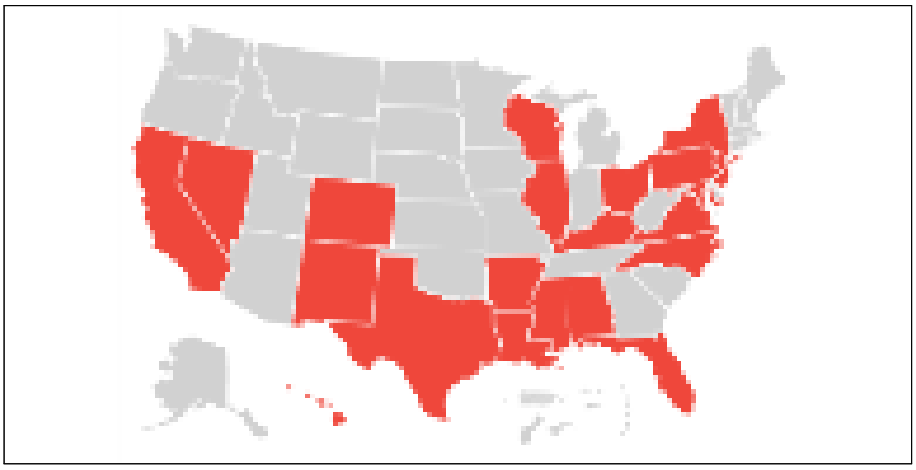
출처: Maki Park and Caitlin Katsiaficas(2019: 5)

Home Visiting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6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2개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미취학 아동 부모를 위한 가정지도 이다(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 HIPPY). HIPPY는 아동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화책(storybook)과 각본을 통해 아이들에게 진학 준비를 위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델은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home visitors를 고용함으로서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가정방문은 일주일에 한번 이루어지며, 유치원 졸업시까지 제공된다. 3살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HIPPY의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3살~5살의 자녀를 가진 가정, 제한된 교육과 기술을 가진 부모/돌봄자, 아동학대/방임/아동복지시스템에 포함된 기록이 있는 가정, 아동학대, 방임/아동복지제도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가정, 언어의 장벽을 경험하는 이민자 가정이 포함된다. HIPPY는 미국의 21개 주 126개의 지역사무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림 Ⅲ-6] HIPPY 프로그램 실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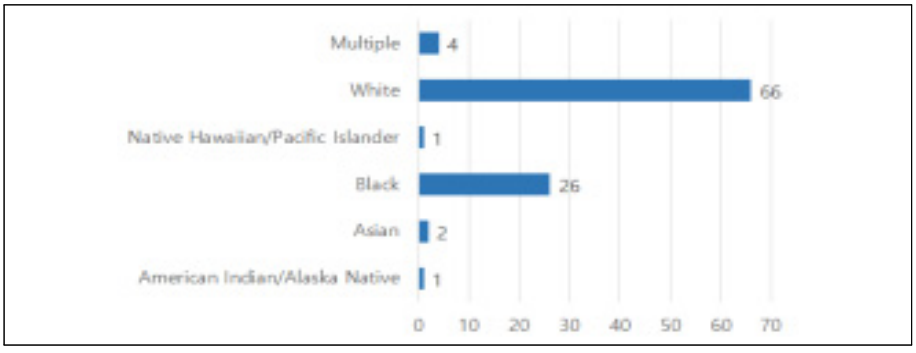


출처: 2018 Home Visiting Yearbook(NHVRC, 2018: 189)

2017년도에는 298,442가정을 방문하였으며, 13,523가구와 15,526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인종은 백인(White)이 66%이며, 다음으로 흑인(Black)이 26%의 수준으로 높은 이용률로 나타났다. 이외의 인종특성을 지닌 이용자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하게 민족성(ethnicity)의 경우 라틴계(Hispanic or Latino)가 39%, 비라틴계(Not Hispanic or Latino)가 61%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HIPPY 이용자들의 인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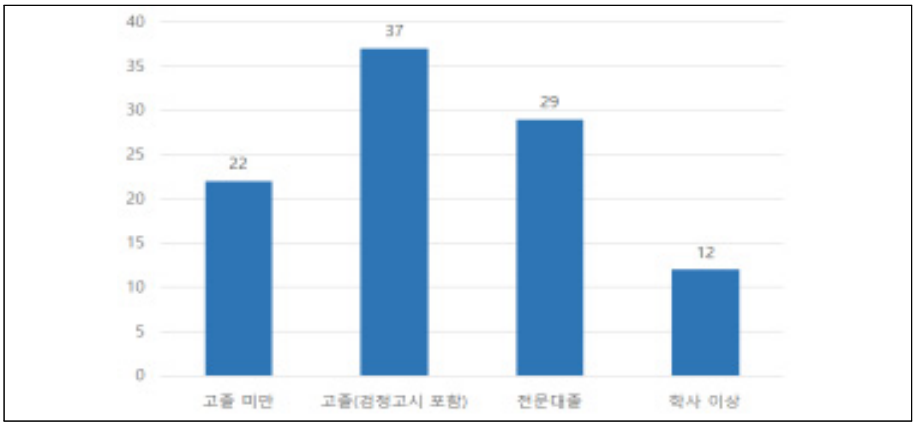


출처: 2018 Home Visiting Yearbook(NHVRC, 2018: 190)

돌봄자들의 학력수준은 고졸(검정고시 포함)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대졸이 2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된 이용자들의 학력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8] HIPPY 돌봄자 학력수준

(단위: %)



출처: 2018 Home Visiting Yearbook(NHVRC, 2018: 190)

가구 소득은 20,000달러 이하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20,001달러 이상 40,000달러 이하가 33%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HIPPY 이용자들의 소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고소득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3〉 HIPPY 가구소득

소득($)	분포(%)
20,000달서 이상	50%
20,001달러 이상 40,000달러 미만	33%
40,001달러 이상 60,000달러 미만	10%
60,001달러 이상	6%

출처: 2018 Home Visiting Yearbook(NHVRC, 2018: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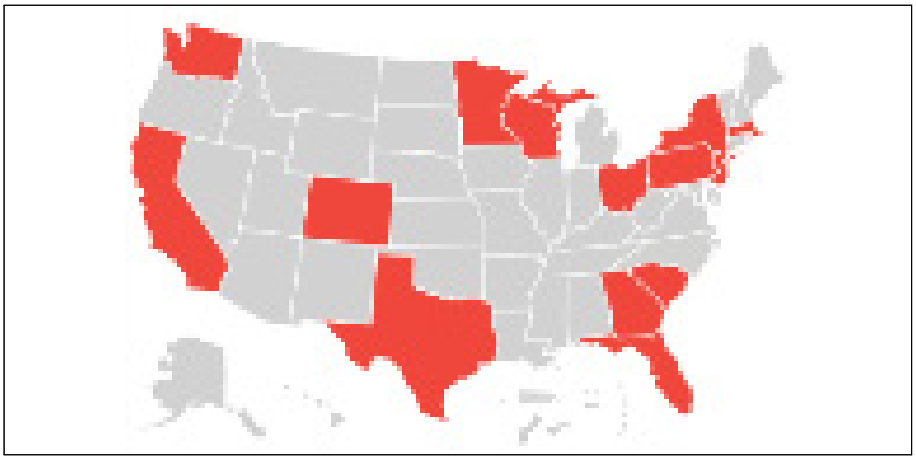
둘째, 부모-자녀 홈 프로그램(Parent-Child Home Program: PCHP) 이다. PCHP는 소외된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Home visiting 프로그램이며, 이들

에게 지식,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된 가정의 아동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PCHP의 목적은 고소득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정방문은 최소한 46주(총 92회 방문)을 위해, 23주를 2번의 주기로 주2회 방문이 이루어진다. 서비스는 15개월에서 4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이후에는 예비 초등학교 또는 Head Start 센터 기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PCHP의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언어 또는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가정,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가정, 제한된 교육 수준을 가진 부모/돌봄자, 이민자/난민 가정, 노숙자 가정 등이 포함된다.

PCHP는 14개의 주 115개의 지역 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Ⅲ-9] PCHP 프로그램 실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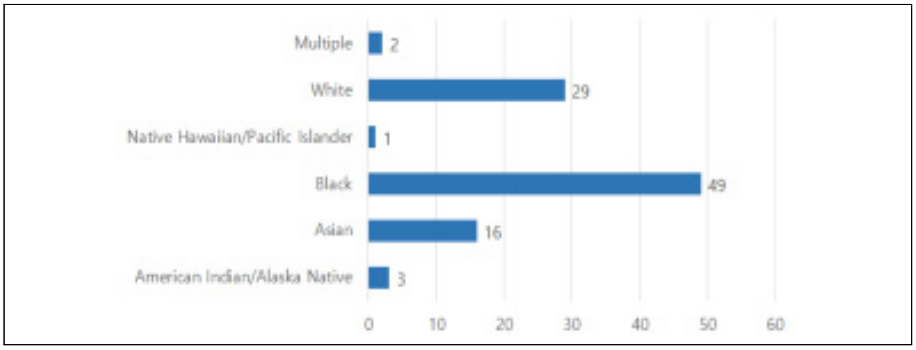


출처: 2018 Home Visiting Yearbook(NHVRC, 2018: 205)

2017년 PCHP는 303,612가정을 방문하였으며, 7,129가구와 7,372명의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흑인(Black)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백인(White)이 29%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민족성(ethnicity)의 경우 라틴계(Hispanic or Latino)가 42%, 비라틴계(Not Hispanic or Latino)가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PCHP 이용자들의 인종

(단위: %)



출처: 2018 Home Visiting Yearbook(NHVRC, 2018: 206)

이용 아동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1세와 2세 아동의 이용비율이 8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5세 아동의 경우 12%수준으로 나타났다. 1세 미만의 아동은 2% 수준으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프로그램 대상 연력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PCHP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은 모두 저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표 Ⅲ-4〉 PCHP 이용아동의 연령

	분포(%)
1세 미만	2%
1세~2세	86%
3~5세	12%

출처: 2018 Home Visiting Yearbook(NHVRC, 2018: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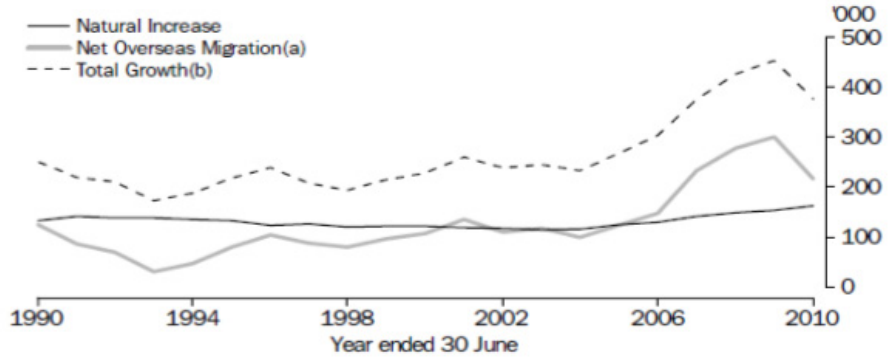
2. 호주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가. 호주 내 이민자 현황

호주는 이민을 통해 구성된 대표적인 이민국가이다. 1788년 호주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되어오고 있다. 이에 호주정부는 '다문화 호주(Multicultural Australia)'를 표방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DIAC, 2011a: 김철효, 2011: 29). 이러한

배경에 따라 호주 내 이민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호주 국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호주 인구증가는 이민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증가보다 이주증가율의 변화가 호주의 전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증가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연증가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순 이주증가가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호주의 인구변화는 순 이주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순 이주증가의 변화형태에 따라 전체 인구의 변화형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1] 인구증가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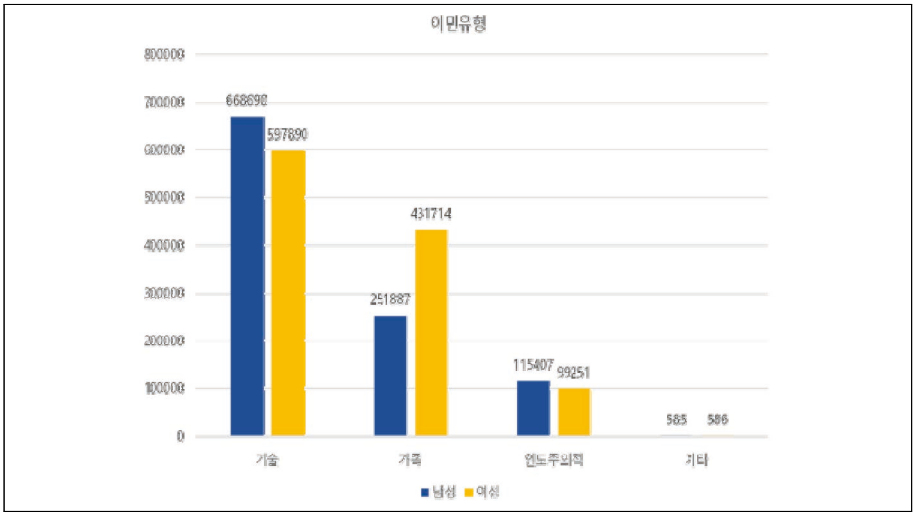


출처: ABS(2011); 김철효(2011: 31)

호주 내 이민자 유형은 기술이민, 가족이민, 인도주의적 이민과 기타로 구분된다. 호주는 자국 내 부족한 노동인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금 투자자와 기술자 우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외국인 인력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여하였다(문병기 외, 2018: 135). 이러한 배경하에 기술이민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이민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기술이민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여성의 경우 가족이민을 통한 호주 내 이민이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이민유형에서 기술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8% 수준이며, 가족이민이 32%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도주의적 이민은 전체 이민유형에서 10%의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 호주 이민유형(2016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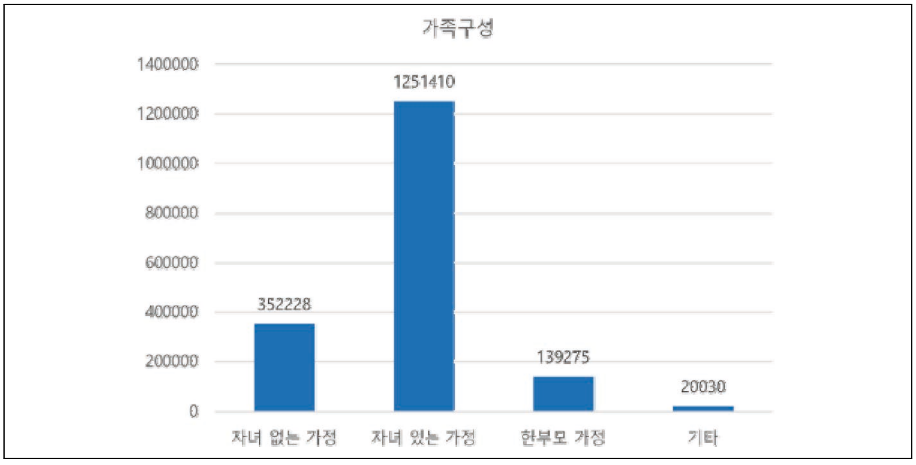


출처: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이민자 비자 특성,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3417.02016?OpenDocument 에서 2019. 9. 27. 인출

이민자들의 가족구성 유형 중 자녀가 있는 가정이 전체 이민자 중 1,251,410명으로 다수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3] 이민자 가족구성(2016년 기준)

(단위: 명)



출처: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이민자 비자 특성,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3417.02016?OpenDocument 에서 2019. 9. 27. 인출

나. 이민자 아동 지원 제도

1) Child Care Subsidy[11)]

Child Care Subsidy(보육비 보조금: CCS)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3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호주에서 인정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보육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부모 중 1명 이상은 호주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Special Category 비자를 소지하였거나 CCS가 인정하는 임시비자(Partner Provisional 또는 Temporary Protection)를 소지하였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권자 또는 특정 비자를 소지하지 못하였을 지라도 외국 유학생으로 호주 정부에서 후원하는 학업과정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CCS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CCS는 가족소득액, 보육 서비스유형, 자녀의 연령, 부모의 활동 중 인정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규모가 결정되어 진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액이 산정되며, 이용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도 보조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유급 근무(출산 휴가 등의 휴가 포함), 학업 및 직업훈련, 가족의 사업장에서 무급 근무, 구직 활동, 장원봉사, 자영업, 기타 등이 고려되어 진다. 부부 모두가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경우 부부 모두의 활동 시간이 책정된다.

CCS이외에도 Additional Child Care Subsidy가 있는데, 일부 가족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3가지 우형의 추가 보조금이 있으며, Grandparent, Temporary Financial Hardship, Transition to Work로 구분된다.

첫째, Grandparent는 조부모 이상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손자 또는 손녀의 주요 양육자 역할을 하는 경우 보육비를 지원해주며, 가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둘째, Temporary Financial Hardship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11)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child-care-subsidy에서 2019. 9. 27. 인출

셋째, Transition to Work는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통해 소득지원금 수령을 중단하는 과도기에 있는 경우 보육비를 지원한다.

호주는 Child Care Subsidy를 통해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Parenting Payment[12)]

Parenting Payment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아이들의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Parenting Payment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부모 중 한명의 보호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된다. 부모, 조부모 또는 아동의 주 양육자가 수혜자격이 되며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부모로 8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이다.

둘째, 배우자가 있으며, 6세 미만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이다.

셋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의 경우이다.

넷째, 호주정부에서 제시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필요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다.

이상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Parenting Paymen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액은 매년 두 차례 갱신되며, 3월과 9월에 이루어진다.

수령 받을 수 있는 Parenting Payment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상이하며, 호주 내 그리고 호주 이외에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모두 지급액 산정에 포함된다. 지급액 갱신과 달리 소득과 자산심사는 매년 3월, 7월, 9월에 걸쳐 3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3) Family Tax Benefit[13)]

Family Tax Benefit(가족세제혜택)은 양육비를 보조하는 것이며, 자녀에게 지급(Part A)되는 것과 부모에게 지급(Part B)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

12)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ing-payment에서 2019. 9. 27. 인출

13)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에서 2019. 9. 27. 인출

Family Tax Benefit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호주정부가 요구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Special Category 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임시비자(Partner Provisional 또는 Temporary Protection)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 역시 이와 같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한 양육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Family Tax Benefit을 지원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Part A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족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한 살 이전 자녀가 부모의 보호 하에 있는 경우 Family Tac Benefit Part A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신생아 일시지급(Newborn Upfront Payment) 또는 신생아 보조금(Newborn Supplement)이라 한다.

Part A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격요건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Ⅲ-5〉 Part A의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요건 1	15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요건 2	16세~19세 이상의 자녀를 두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12학년 또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 학업량이 필요한 풀타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교육 요건을 면제 받은 경우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Family Tac Benefi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who-can-get-it/ftb-part-eligibility 에서 2019. 9. 27. 인출

둘째, Part B는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부모 가족, 주 양육자(조부모 포함), 주 생계부양자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급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조사가 이루어지며,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된다. Part B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Part B와 같이 자격요건은 자여읜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져 있다.

〈표 Ⅲ-6〉 Part B의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요건 1	부부이며 자녀가 13세 이하인 경우
요건 2	한부모, 조부모(증조부모)이며 다음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 16세 이하의 자녀 18세가 되는 해말까지 풀타임으로 중등학교 다니는 학생[14]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Family Tac Benefi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who-can-get-it/ftb-part-b-eligibility 에서 2019. 9. 27. 인출

Family Tax Benefit은 자녀의 예방조건 증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자녀가 4세가 되는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를 담당 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Family Tax Benefit의 신청은 2주 마다 지급 혹은 연간 일시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주 마다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동안의 소득을 추산하여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연간 일시금을 받길 원하는 경우 회계연도 말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호주 국세청에서 부부 모두의 소득이 확인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매년 6월 30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Family Tax Benefit의 수당을 결산하고, 가구 소득에 근거하여 지급액수가 결정된다. 만약 소득과 지급액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수당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4) Parental Leave Pay[15]

Parental Leave Pay는 육아휴직 수당으로 신생아 또는 입양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비율로 산정하여 이루어지며 최대 18주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Parental Leave Pay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4) 16세~19세 자녀가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Family Tax Benefit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al-leave-pay에서 2019. 9. 27. 인출

〈표 Ⅲ-7〉 Parental Leave Pay의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요건 1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한 자녀의 일차 양육자
요건 2	지난 회계연도에 개인 소득이 $150,000이하인 경우
요건 3	Paid Parental Leave 기간 동안 휴직상태 또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요건 4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전 13개월 중 10개월 간 일을 한 경우
요건 5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arental Leave Pay,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rental-leave-pay 에서 2019. 9. 27. 인출

요건 5중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주 거주자, 호주 생활자, 영주권 비자 소지자, Special Category 비자 소지자, 가족 구성원,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임시비자(Partner Provisional 또는 Temporary Protection)를 소지하고 있으면 Parental Leave Pay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여겨진다.

Parental Leave Pay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에도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가 신청서에 시작 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작일 지정을 위해서는 출생 또는 입양 후 4주 이내에 출생증명서, 입양 증명서 등을 지급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Parental Leave Pay 지급일의 가장 빠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Parental Leave Pay는 18주 동안 지급되지만 18주를 온전히 수령받기 위해서는 출생 또는 입양 후 34주 이내의 날짜로 지정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날짜에 수당이 지급된다.

Parental Leave Pay는 고용주 또는 호주 정부에서 지급이 이루어진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는 주기에 따라 지급이 되며, 호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경우(자영업자 등) 정부에서 2주 마다 지급하게 된다.

4) Dad and Partner Pay[16)]

Dad and Partner Pay는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무급 휴가 중에 있는 아버지 또는 반려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2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Dad and Partner Pay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6)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dad-and-partner-pay에서 2019. 9. 27. 인출

〈표 Ⅲ-8〉 Dad and Partner Pay의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요건 1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
요건 2	생모의 반려자
요건 3	입양 부모 또는 입양 부모의 반려자
요건 4	대리모로 태어난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ad and Partner Pay,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dad-and-partner-pay/eligibility/who-can-get-it에서 2019. 9. 27. 인출

이외에도 추가되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Ⅲ-9〉 Dad and Partner Pay의 추가되는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요건 1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요건 2	지난 회계연도에 개인 소득이 $150,000이하
요건 3	Dad and Partner Pay 기간 동안 일은 하지 않거나 유급 휴가가 없는 경우
요건 4	근로를 하였거나 동등한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건 5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ad and Partner Pay,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dad-and-partner-pay에서 2019. 9. 27. 인출

요건 5중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주 거주자, 호주 생활자, 영주권 비자 소지자, Special Category 비자 소지자, 가족 구성원,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임시비자(Partner Provisional 또는 Temporary Protection)를 소지하고 있으면 Parental Leave Pay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여겨진다.

Dad and Partner Pay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후 52주 이내에 언제든지 수령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Dad and Partner Pay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충족되는 근로조건이 있는데, 13개월 동안 최소 330시간을 근무하였거나 10개월 동안 최소 주당 하루이상은 근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싱가포르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가. 싱가포르 내 이민자 현황

싱가포르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동시장의 공급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엄격히 규제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이민 규제를 완화하여왔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시장에 노동인구가 부족하게 되면서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민정책을 변화시켜 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4). 싱가포르 역시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며, 인구의 약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비거주자(외국인)는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싱가포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장임숙, 2018: 213).

싱가포르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약 403만 명으로 전년도(2018년)보다 0.8% 수준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 인구(외국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주권자와 비거주자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대와 2019년도를 비교하면 시민권자 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싱가포르 체류외국인 현황(2019년 기준)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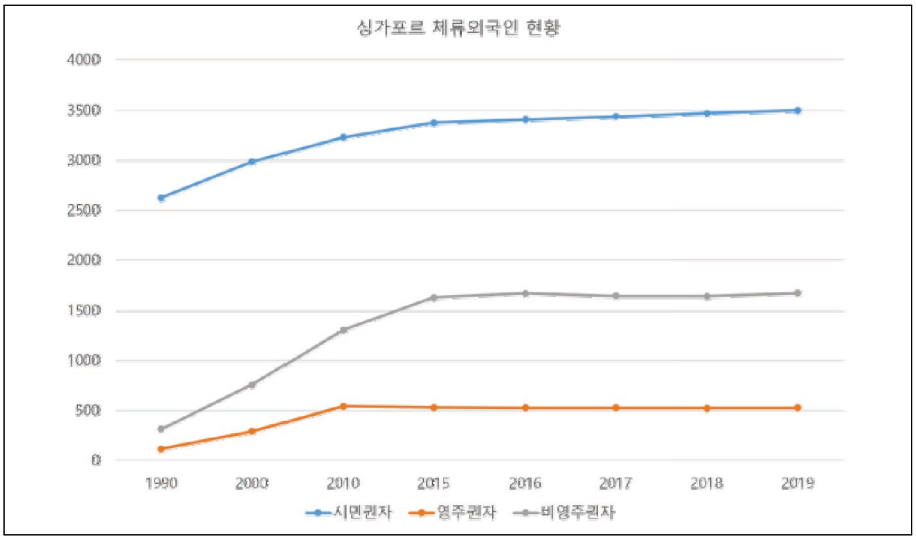
구분	1990	2000	2010	2015	2017	2018	2019
총 인구수	3,047.1	4,027.9	5,076.7	5,535.0	5,612.3	5,638.7	5,703.6
거주자	2.735.9	3.273.4	3.771.7	3.902.7	3.965.8	3.994.3	4.026.2
시민권자	2,623.7	2,985.9	3,230.7	3,375.0	3,439.2	3,471.9	3,500.9
영주권자	112.1	287.5	541.0	527.7	526.6	522.3	525.3
비거주자	311.3	754.5	1,305.0	1,632.3	1,646.5	1,644.4	1,677.4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9. 10. 14. 인출

싱가포르 인구 구성에 대한 변화는 비영주권자에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변화는 급격하지 않고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추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영주권자의 경우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Ⅲ-14] 싱가포르 체류외국인 현황(2019년 기준)

(단위: 천 명)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9. 10. 14. 인출

싱가포르 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예측은 2013년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백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싱가포르 인구는 약 530만명에서 2030년도 까지 650만~69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중 외국인 인구의 증가율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 한 이유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하였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Ⅲ-11〉 싱가포르 인구 증가 예측

(단위: 백만 명)

구분	2012년	2020년	2030년
거주자	3.29	3.5~3.6	3.6~3.8
영주권자	0.53	0.5~0.6	0.5~0.6
비거주자(외국인)	1.49	1.8~1.9	2.3~2.5
합계	5.31	5.8~6.0	6.5~6.89

출처: Kotra 홈페이지(news.kotra.or.kr). 싱가포르, 인구백서에 따른 인구통계 변화. 2019. 10. 14. 인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외국인 정책은 영주권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3년 싱가포르 수상실 장관 Grace Fu의 발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의 인구정책에서 주요한 두 가지 핵심은 출산율과 이민이라는 것이다(신윤정 외, 2013: 134).

나. 이민자 아동 지원 제도

싱가포르는 자국 내 부족한 노동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자 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는 부모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자녀가 싱가포르에서 태어나서 싱가포르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이민자(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서 성립된 계약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첫째, 출산휴가 이다. 이민자들의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인 경우 16주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유급휴가의 개념으로 제공되는데 첫 8주는 고용주가 지불하고, 나머지 8주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 출산 휴가 일수는 고용 계약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둘째, 육아 휴직이다.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자녀의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자녀가 7세가 될 때까지 유급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일 중 3일은 고용주가 지불하고, 나머지 3일은 정부에서 지불하는 구조이다. 아동 수에 상관없이

부모의 총 육아 휴직 자격은 매년 6일로 제한된다. 육아 휴직의 경우에도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은 고용계약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셋째, 영어 돌봄 휴가이다. 육아 휴직과 유사하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6일의 유급 영아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일 경우에 가능하며, 만약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2) 베이비 보너스 제도(Baby Bonus Scheme)

베이비 보너스 제도는 자녀 양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8,000달러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10,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모는 현금을 18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표 Ⅲ-12〉 Baby Bonus

(단위: 달러)

구분	첫째와 둘째자녀	셋째와 그 이상
출생 등록 후 7일~10일 이내 또는 가입 날짜 중 가장 최신 날짜	$3,000	$4,000
자녀 출생 후 6개월	$1,500	$2,000
자녀 출생 후 12개월	$1,500	$2,000
자녀 출생 후 15개월 이후 베이비 보너스 플러스	$1,000	$1,000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후 베이비 보너스 플러스	$1,000	$1,000
합계	$8,000	$10,000

출처: 사회가족부 홈페이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policies/Strong-and-Stable-Families/Supporting-Families/Pages/Baby-Bonus-Scheme.aspx. 2019. 10. 14. 인출

더불어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발달 계좌(Children Development Account)에 현금을 매칭하여(dollar-for-dollar matching)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는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위한 특별 저축 계좌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6,000달러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12,000

달러가 지급된다. 이 지급액은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예치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표 Ⅲ-13〉 Children Development Account

(단위: 달러)

구분	CDA 혜택		합계
	CDA 첫 단계	Dollar-for-Dollar 매칭	
첫 째와 두 번째 자녀	$3,000	최대 $3,000	최대 $6,000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녀		최대 $9,000	최대 $12,000
다섯 번째 자녀 이상		최대 $15,000	최대 $18,000

출처: 사회가족부 홈페이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policies/Strong-and-Stable-Families/Supporting-Families/Pages/Baby-Bonus-Scheme.aspx. 2019. 10. 14. 인출

베이비 보너스 제도의 경우 다자녀 가족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을 보조함으로서 출상장려정책의 성겪을 띄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이주배경을 지녔을 지라도 자녀가 싱가포르의 시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의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다양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여진다.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국민들은 외국인 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상황(신윤정 외, 2013: 140)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저출산 상황에서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유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이지만 국민들은 자국 내 부족한 한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가. 일본 내 이민자 현황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적·인종적으로 동일성의 정도가 높았던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장을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의 유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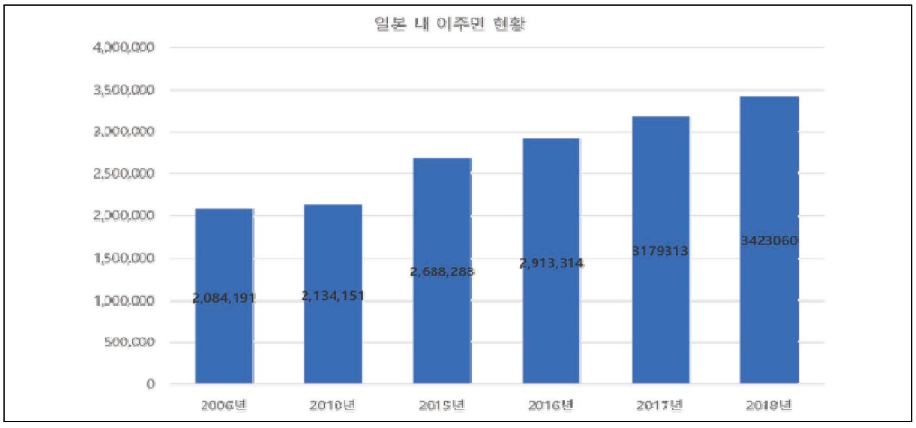
확대시키게 되었다. 이후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력 유입 확대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안전, 2011: 63-64).

일본 내 외국인 유입의 원인은 당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값싼 외국 인력을 자국으로 유입함으로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이주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박봉수 외, 2014: 67).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 역시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합계출산율은 1.43이였으며, 사망한 사람의 수에서 신생아 수를 뺀 전체 인구 감소폭이 역대 최대인 39만명(중앙일보 2018.06.01. 기사)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내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이 직면한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내 거주하는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내 이주민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Ⅲ-15] 일본 내 이주민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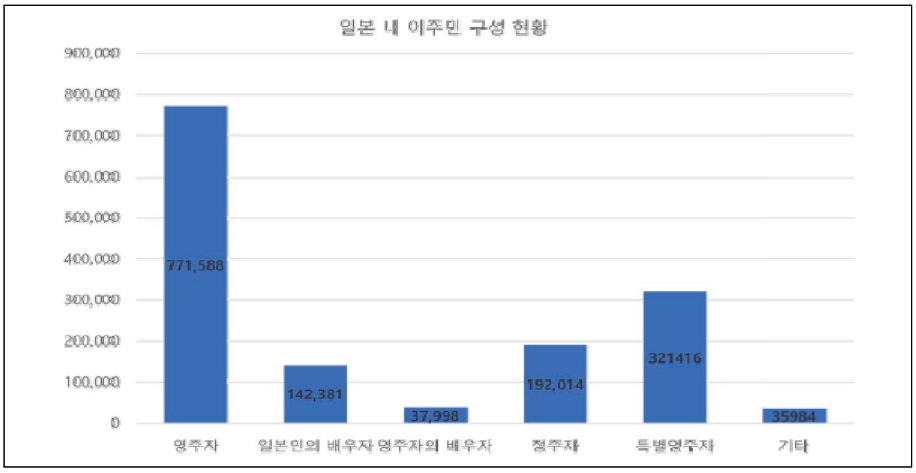


출처: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 재류외국인 통계,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에서 2019. 10. 31. 인출

일본 내 이주민의 구성 현황을 체류 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특별영주자,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 중에서 영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특별영주자이며,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의 순이다. 영주자의 배우자와 기타는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16] 일본 내 이주민 구성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출처: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 재류외국인 통계,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에서 2019. 10. 3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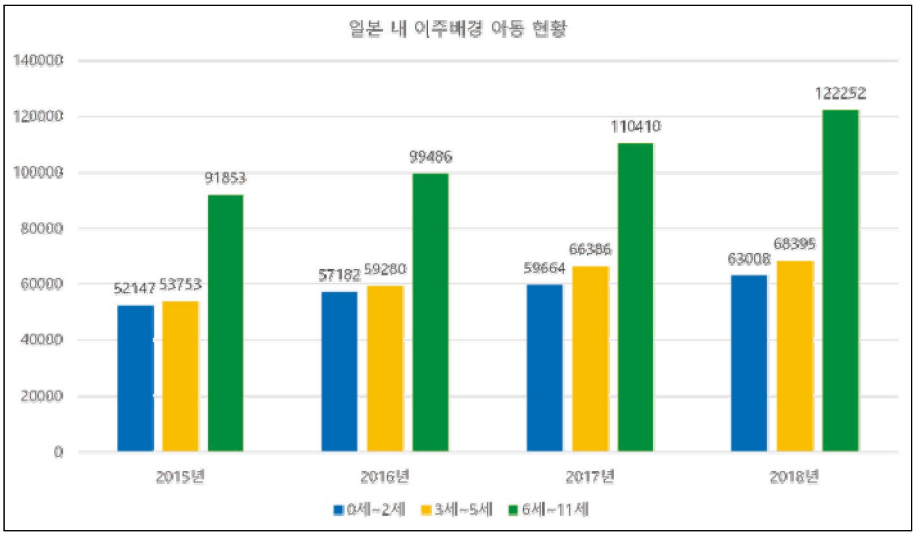
일본 내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력의 증가와 함께 시감이 지남에 따라 아동의 수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교육시스템에 따라 취학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기에 상관없이 6세~11세 아동의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에서 11세 아동의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받는 시기이며, 3세~5세는 유아교육을 받는 시기이다. 0세~2세는 일본정부로부터 받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없다.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라 6세~11세, 3세~5세, 0세~2세의 순으로 구성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연령구분에 따른 분포 순서와 상관없이 연령구분에 따라서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모든 연령 분포의 아동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 내 이주배경 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의 증가가 지속되지 않는 다면 아동 수 증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Ⅲ-17] 일본 내 이주배경 아동 현황

(단위: 명)



출처: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 재류외국인 통계,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에서 2019. 10. 31. 인출

나. 이민자 아동 지원 제도

1) 아동 수당 제도

아동 수당은 일본내 자국민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동 수당제도는 「児童手当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은 2012년 6월 12일(헤세이 24년 6월 13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아동 수당 지급을 규정함으로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Ⅲ-18] 아동수당 제도 리플릿



출처: 내무성 홈페이지(http://www8.cao.go.jp/), 아동 수당 제도 안내, 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gaiyou.html 에서 2019. 10. 31. 인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에서 정한 수급적격자는 일본 주소를 둔 사람으로 외국인도 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에 대한 기준은 일본 국민과 유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지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등록에 대한 조건 충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수급 자격자와의 관계 등의 확인은 주민 기본 대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외국인 아동에 대해 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은 아동의 연령이 15세에 이르는 날 3월 31일까지이다.

셋째,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내 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주소지 내용은 제2에 준하여 취급된다. 또한, 동항에 규정 된 아동의 국내 거주 요건의 예외가 되는 「유학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이유」의 취급에 대해 일본 국민과 비슷하다.

일본 내 거주 및 체류하는 외국인의 아동이 일본을 출국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은 중학교 졸업까지(15번째 생일 후 첫 3월 31일까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는데 3세 미만에게는 일괄적으로 15,000엔이 지급되며, 3세 이상부터 중학생까지 10,000엔이 지급된다. 다만, 3세 이상임에도 셋째 자녀이후부터는 15,000엔이 지급됨으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월 5,000엔이 지급되기도 한다.

〈표 Ⅲ-14〉 아동수당 지급액

(단위: 월액/인당)

아동의 연령	지급 액
3세 미만	일률 15,000엔
3세 이상~초등학교 수료 전	10,000엔 (셋째 자녀 이후는 15,000엔)
중학생	일률 10,000엔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 아동 수당 제도 안내, 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annai.html 에서 2019. 10. 31. 인출

아동 수당의 지급은 대부분의 자녀 양육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아동 1인당 5,000엔을 지급받게 된다.

〈표 Ⅲ-15〉 소득 제한 한도액

(단위: 엔)

부양 가족 수	소득 제한 한도액	수입액 기준
0명	662.0	833.3
1명	660.0	875.6
2명	698.0	917.8
3명	736.0	960.0
4명	774.0	1002.1
5명	812.0	1042.1

주: 1) 소득세 법에 규정하는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이 있는 분의 한도액(소득액 기준)은 위의 금액에 해당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 친족 1인당 6만엔을 가산한 금액
2) 부양 가족 수가 6명 이상의 경우 한도액(소득액 기준)은 5명을 넘어선 사람에 대해 38만엑(부양 가족 등이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이 잇을 때는 44만엔)을 가산한 금액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 아동 수당 제도 안내, 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annai.html 에서 2019. 10. 31. 인출

지급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0월, 2월에 이루어지며, 6월에는 2~5월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 한 달의 다음달 분부터 지급되지만 출생일이나 전입(이사)시점이 월말에 근접한 경우 신청일이 다음 달이 되어도 15일 이내에 신청 월부터 지급 된다.

2) 보육지원

일본은 아동 교육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신윤정 외, 2018: 442). 2019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유아 교육 및 보육의 무상화 제도가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유치원, 탁아소, 기타 인정되는 기관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의 모든 어린이가 대상이 되며, 0세부터 2세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인가 탁아소 및 인정 어린이원, 인가 외 보육시설(일반인가 외 보육시설, 지방 자치 단체 인증 보육 시설, 탁아서비스 허가 외의 사업소 보육 등), 지역 형 보육(소규모 보육, 가정 보육,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소 보육 등),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장애아 통원 시설 등이 해당된다.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따라 무상보육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0세~2세 아동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무료 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가장 첫 번째 자녀를 기준으로 둘째 자녀는 반액, 셋째 자녀는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 다만, 연 소득 360만 미만의 세대는 첫째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다. 3세~5세 아동은 모든 아동의 이용료가 무료이지만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치원은 월 2.57만엔까지만 지원액이 정해져 있다.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세가 된 후의 4월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한 전까지 3년간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진다. 통원차량비, 식자재비, 행사비 등을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반찬(간식 포함) 등의 비용은 연 소득 360만엔 미만세대와 세 번째 자녀 이후부터는 면제가 된다.

〈표 Ⅲ-16〉 무상보육 지원

구분	대상
탁아소, 인정 어린이원, 지역 형 보육	(0세~2세) 주민세 비과세 세대 무료 (3세~5세) 모든 어린이 무료
유치원	(3세~5세) 월 25,700엔까지 무료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http://www8.cao.go.jp/),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개요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musyouka/gaiyou.html#nintei 에서 2019. 10. 31. 인출

둘째,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 주도형 보육 시설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0세~2세 아동에 대해서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무상교육이 지원되며, 3세~5세 아동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응하는 보육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탁아소 대기 아동의 대기를 해소하고, 일과 육아 양립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대상이 되며, 직원과 지역으로 구분된다. 직업 범위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지원의 아동이며, 지역범위는 어린이·육아 지원법의 보육 인증을 받은 자의 아동이 대상이 된다(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홈페이지, 2019년 11월 1일 검색).

셋째, 유치원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시정촌에서 "보육의 필요성 인증"[17]을 받아야 한다. 유치

17) "보육의 필요성 인정" 요구 사항은 취업 등의 요건(인가 탁아소의 이용과 동등한 요건)이 있으며, 거주하는 시정촌에 확인해야 한다.

원의 이용은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월 1.13만엔의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넷째, 인가 외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시정촌에서 “보육의 필요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0세~2세의 아동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월 4.2만엔 까지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세~5세 아동의 경우 월 3.7만엔 까지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가 외 보육 시설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사업은 임시 보육 사업, 병아 보육 사업, 가족 지원 센터 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 즉, 인가 외 보육 시설은 일반적인인가 외 보육 시설, 지방자치단체 자체 인증 보육 시설, 탁아 서비스 허가 외의 사업소 보육 등을 의미한다.

3) 교육지원

일본 아동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지만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의무교육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주배경 아동이 학교에 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신윤정 외, 2018: 445). 즉, 이주배경 아동이 교육을 받을 연령이 되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토 취학통지서가 발급되는데, 취학을 희망할 경우 의사를 표현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홍현미라 외, 2016: 45)

으로서 사실상 일본 국적의 아동과 교육정책에서의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은 만 6세부터 만 15세 까지 9년 동안 초등학교·중학교·중등교육학교(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초등부·중학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특별지원학교(초등부, 중학부), 중등교육학교(전기과정)의 수업료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이들 학교에 취학이 곤란하다는 인정을 시교육위원회(지역에 따라 구교육위원회), 또는 정촌교육위원회(시구정촌 교육위원회 등) 등을 통해 받은 경우 학요움구입비와 학교급식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교육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이 일본국적의 학생들과 동일한 학교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언어의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의 경우 어릴 때 혹은 일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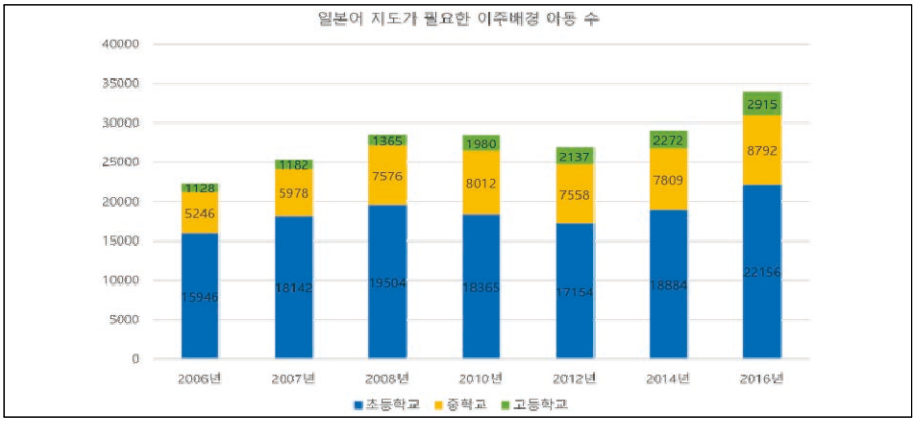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어의 한계가 존재하고, 일본에서는 이를 인식하여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습득을 위한 별도의 일본어 교육을 제공한다.

2016년(헤세이 26년)에 제도 마련을 통해 외국인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서는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 및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 교육 과정”은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외국국적의 학생)들이 일본어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어나 각 교과의 지도 등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맞추어 편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 수는 연도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부과학성에서 2019년 3월에 발표한 외국인 아동 학생 수용 안내서에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의 총 수는 2016년 총 22,413명에서 2016년 34,33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안내서에서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일본국적 아동수를 발표하였는데, 2006년 3,868명에서 2016년 9,612명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 거주하는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의 증가(2006년 대비 2016년의 증가는 53%)와 일본 국적을 가졌지만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의 증가(2006년 대비 2016년의 증가는 149%)의 총 증가율이 약 200%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학생들을 일본 내에 적응을 돕기 위한 것과 더불어 교과를 이해할 수 있는 선행과정으로도 일본어 교육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19]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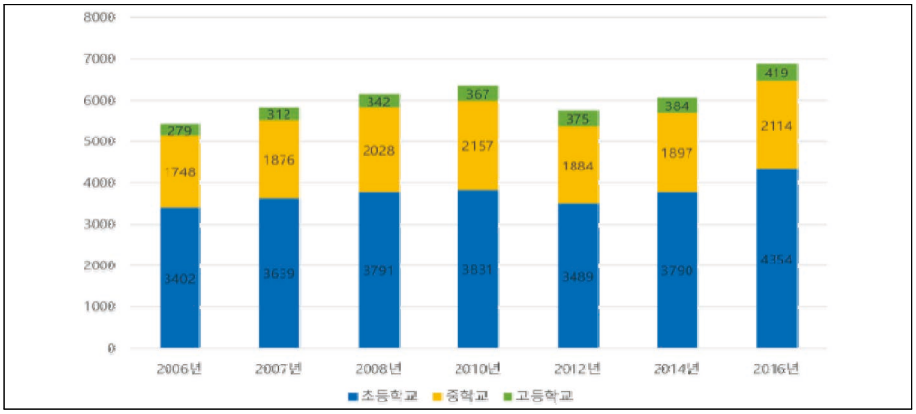
주: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에 대한 수치는 생략함

출처: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 외국인 아동 학생 수용 안내서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1304668.htm 에서 2019. 10. 31. 인출 및 수정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의 증가하는 수와 더불어 이들이 재적하는 학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이 재적하는 일본 내 학교는 2006년 5,475개소에서 2016년 7,020개소로 약 1545개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의 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20]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 수

(단위: 수)



주: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에 대한 수치는 생략함

출처: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현황(2016년 조사) http://www.mext.go.jp/b_menu/houdou/29/06/__icsFiles/afieldfile/2017/06/21/1386753.pdf에서 2019. 10. 31. 인출 및 수정

특별 교육 과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2014년 1월 14일「学校教育法施行規則(학교 교육법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이는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 또는 일본으로 귀국한 아동 학생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것 이였다. 특별 교육과정은 일본어 능력에 따라 일본어를 사용하여 학교 생활의 영위 및 학습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학생의 일본어 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은 상이하지만 연간 10시간에서 280시간까지의 시간적 범위가 제시되고 있다.

특별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일본어 능력에 대한 향상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들의 일본어 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교과 등을 지도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각 교과 지도 내용은 이주배경 아동이 재학중인 학년의 교과 과정에 얽매이지는 않으며,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대상 학생의 선정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다. 즉,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이나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등이며 일본어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및 교과학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별 교육과정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한, 일본어지도 담당 교원이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기도 한다. 즉,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 아동이 주요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소 결

외국의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을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과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주민만을 위한 제도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이민국가의 경우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특히 미국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호주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만 10세가 되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기에 이들 국가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방문한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와 같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주배경 아동을 차별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아동 관련 정책에서 이주배경

아동이 차별받지 않게 한다. 나아가 대부분의 정책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가정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도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역시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호주는 미국처럼 부모가 자국민이 아닐 때 출생 당시에 바로 시민권을 주지는 않지만 10살이 될 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출생등록을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호주와 싱가포르 정책의 특징은 부모의 고용상태에 따라 지원되는 다양한 정책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출산을 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호주와 싱가포르의 경우 부모가 합법적 체류지위를 갖고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다양한 아동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세 국가와 달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이민국가가 아닌 사회·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유사성을 띄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최근(2019년 10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를 실시하며 한국의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과 유사한 제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처럼 무상 교육·보육의 대상을 자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유아 무상 교육·보육의 정책이 우리나라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아동 수당을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정책은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이 언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

01 이주배경 가족 육아 실태 설문조사 결과

02 이주배경 가족 육아 관련 심층면담 결과

03 소결

Ⅳ.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

본 장에서는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의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초등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 환경, 실제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 및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15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의 실태와 지원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총 12명의 이주배경 가족의 부모와 관련단체 종사자를 개별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전사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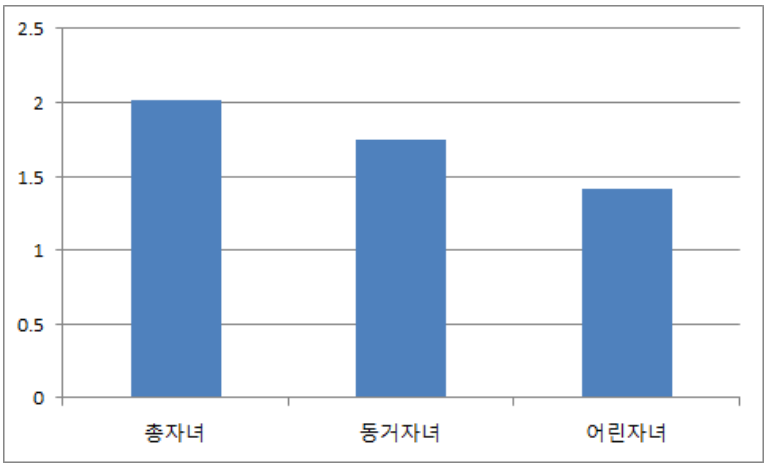
1. 이주배경 가족 육아 실태 설문조사 결과

가. 이주배경 가족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배경 가족의 부모 155명이 참여한 설문의 결과 중 이들 가정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이주배경 가족의 총 자녀 수는 평균 2.01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함께 사는 자녀의 수는 1.75명이며, 그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수는 모두 1.4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 이주배경 가정의 평균 자녀 수



〈표 Ⅳ-1〉 이주배경 가족 설문응답자 일반적 특성(교육년수, 한국체류기간)

	나이		입국전 교육년수		전체 교육년수		한국체류기간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N	141	153	129	150	130	149	137	151
평균	38.04	34.70	11.43	10.95	11.60	11.36	5.98	4.73
표준편차	6.11	6.96	3.38	3.83	3.62	3.94	3.72	3.20

이들 설문에 참여한 이주배경 가족의 아버지의 나이는 평균 38.04세였으며 어머니의 나이는 평균 34.70세였다. 부모들의 학력을 묻는 질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년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류기간은 아버지가 평균 5.98년, 어머니가 평균 4.73년을 보여 아버지의 한국내 체류기간이 어머니에 비해서 조금 더 길었다.

한편 설문 참여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평균 1,671,29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급간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 참여자의 7.7%는 가계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33.5%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그리고 42.6%는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이주배경 가족 설문응답자 일반적 특성(가계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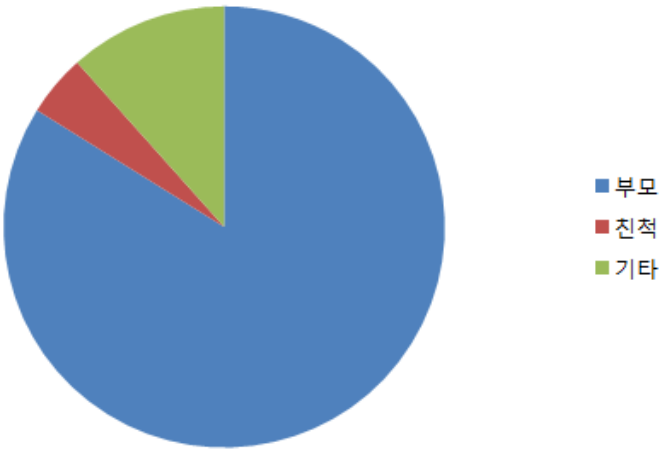
합계	가계 소득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무응답
155명	12	52	66	25
100.0%	7.7	33.5	42.6	16.1

전체 설문 대상자 155명중 72.9%인 113명이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답했고, 27.1%의 응답자는 미취학 자녀는 없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주배경 가족의 가정내 육아 실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이주배경 가족에게 가정내 자녀의 주 양육자를 묻는 설문에 전체 155명 중 83.9%인 130명이 자녀의 부모가 주양육자라고 답했고, 4.5%인 7명만이 조부모등 친척이라고 응답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6명이 어머니 혼자라고 답하거나 아버지 혼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6명과 2명이어 실제로는 90% 가까이가 부모가 주 양육자라고 답했다.

[그림 Ⅳ-2] 이주배경 가정의 주 양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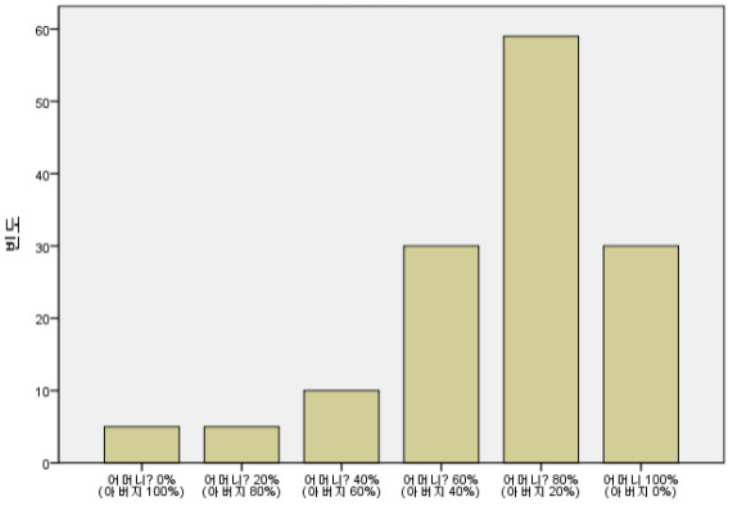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양육분담의 비율을 묻는 질문은 밥먹이기, 옷입히기, 놀아주기, 아플 때 돌보기, 목욕시키기 5가지로 나누어 물었고, 응답은 어머니 0% 참여-아버지 100% 참여, 어머니 20% 참여-아버지 80% 참여, 어머니 40% 참여-아버지 60% 참여, 어머니 60% 참여-아버지 40% 참여, 어머니 80% 참여-아버지 20% 참여, 어머니 100% 참여-아버지 0% 참여로 응답하게 하였다. 155명의 응답자 중에 한부모 가정 등을 제외한 응답을 평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Ⅳ-3〉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양육분담 정도

	밥 먹이기	옷 입히기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봄	목욕시키기
N	139	137	139	140	139
아버지 참여 %	27.9	24.2	35.0	23.7	19.1
어머니 참여 %	72.1	75.8	65.0	76.3	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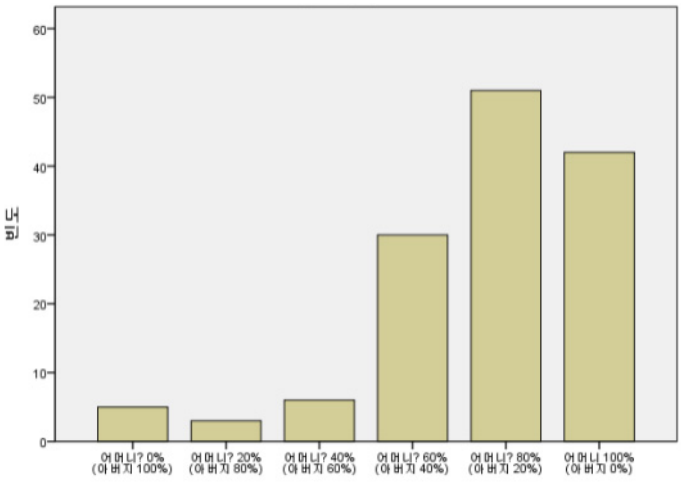
먼저 밥 먹이기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27.9% 수준으로 어머니의 72.1% 수준보다 낮았다.

[그림 Ⅳ-3]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밥 먹이기 분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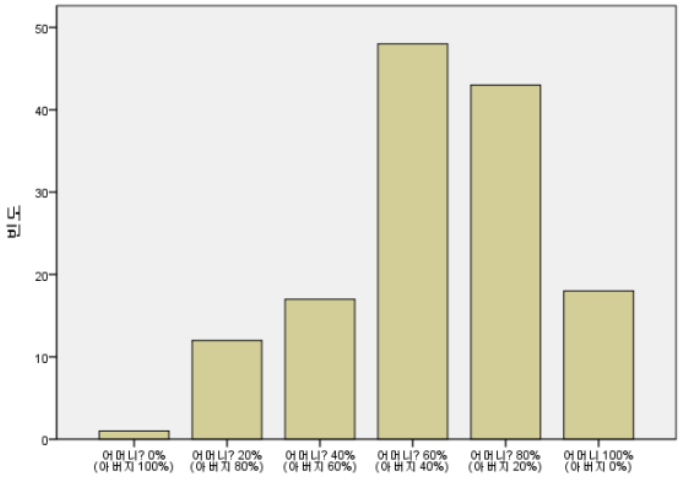
자녀의 옷입히기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24.2% 수준으로 어머니의 75.8% 수준보다 낮았다.

[그림 Ⅳ-4]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옷 입히기 분담 정도



자녀와 놀아주기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35% 수준으로 여전히 어머니의 양육참여에 비해서 낮았으나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육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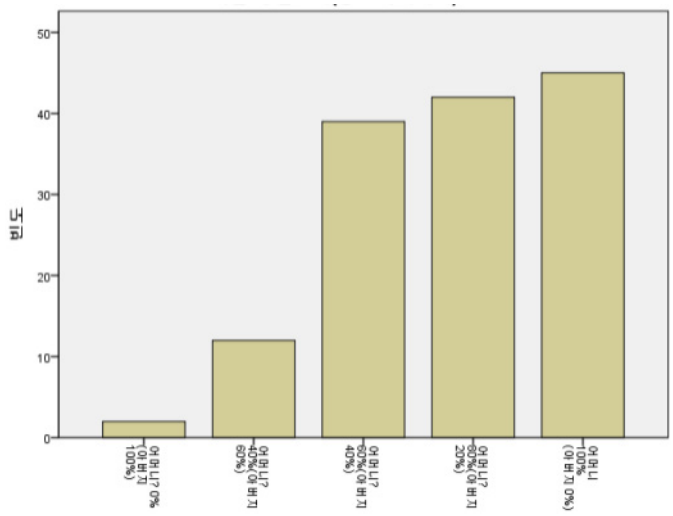
[그림 Ⅳ-5]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놀아주기 분담 정도



한편 자녀가 아플 때 돌보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아버지의 평균적 양육참여는 23.7% 수준으로 낮았으며 다음의 목욕시키기 항목과 함께 어머니가 전담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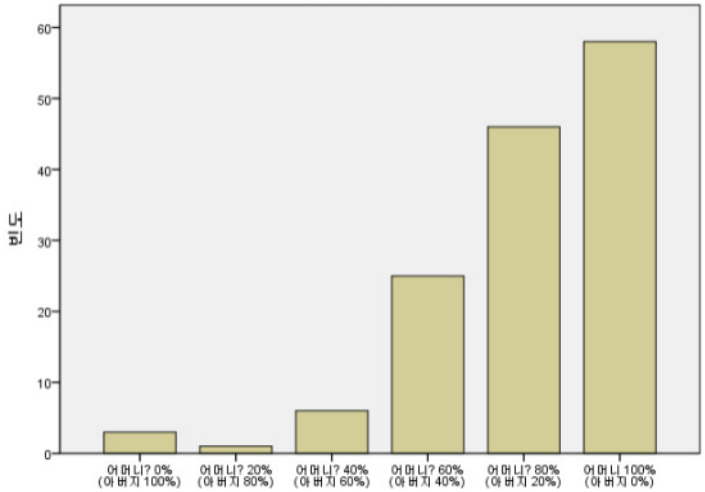
답한 비율이 다른 선택지에 비해 제일 많은 형식의 부적 편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6]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자녀가 아플 때 돌보기 분담 정도



마지막으로 자녀를 목욕시키는 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낮은 19.1% 수준으로 답하였고 이는 전체 139명의 응답자 중 41.7%인 58명의 응답자가 자녀 목욕은 100% 어머니가 담당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림 Ⅳ-7] 이주배경 가족 부모 간 목욕시키기 분담 정도



취침시간을 제외한 자녀를 돌보는데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경우 주중 하루 평균 2.7시간, 주말에는 하루 평균 6.5시간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 주중 하루 평균 8.3시간, 주말에는 하루 평균 12.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녀의 기관 이용실태에 따라 비교해본 표는 다음과 같다.

〈표 Ⅳ-4〉 유아교육·보육 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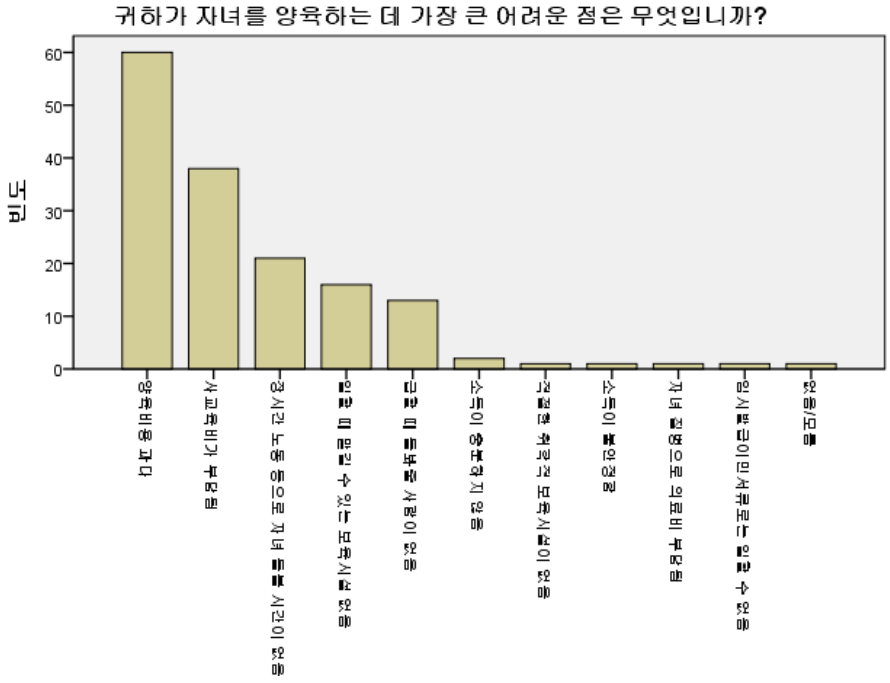
		기관 이용		기관 미이용		t
		평균(s.d.)	n	평균(s.d.)	n	
부	주중	2.64(2.92)	92	2.94(3.98)	18	.381
	주말	6.80(7.33)	74	7.77(8.95)	13	.426
모	주중	7.38(6.49)	91	16.05(9.14)	19	3.933***
	주말	11.63(6.59)	89	18.22(7.47)	18	3.783***

***p<.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경우엔 자녀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와 관계없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중 돌보는 시간이 평균 7.38 시간이었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6.05 시간이라고 표하였고, 주말에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1.63 시간에 비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8.22 시간으로 훨씬 더 오랜 시간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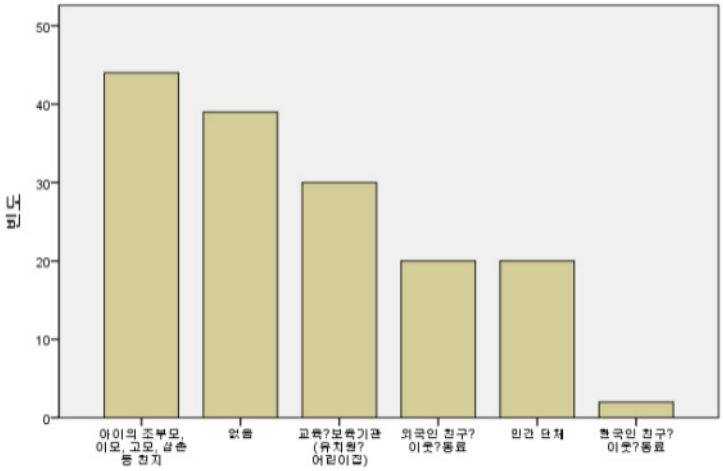
한편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양육비용 과다가 38.7%,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24.5%,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 돌볼 시간이 없다는 의견이 13.5%, 일할 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없다는 경우가 10.3%,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8.4%, 기타 3.2%로 답하였다.

[그림 Ⅳ-8]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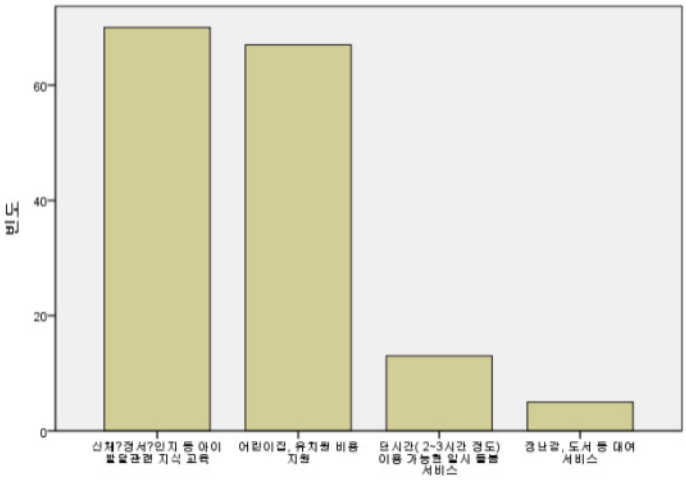
자녀를 양육할 때 긴급하게 대리양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물었을 때, 아이의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지가 28.4%로 가장 높았다. 이주민의 경우 가까이 사는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친척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다음으로 높은 답이 대리양육에 도움을 얻을 곳이 없다는 의견이 25.2%로 1순위와 큰 차이가 없어 등록 이주민의 경우라도 대리양육에 대해 취약함을 드러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4%였으며, 외국인 친구나 이웃, 동료라고 답한 경우와 민간단체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12.9%로 같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친구나 이웃, 동료라고 한 경우는 1.3%였다.

[그림 Ⅳ-9]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긴급히 대리양육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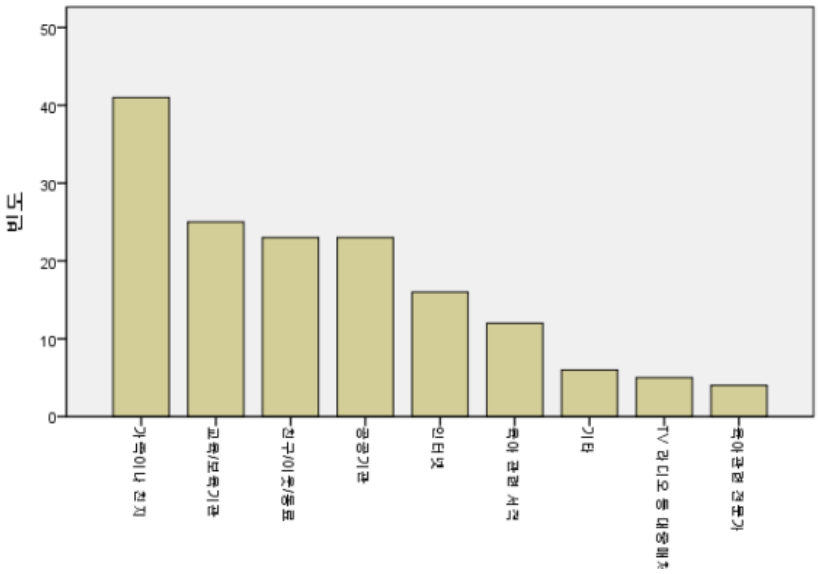
한편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자녀의 발달관련 지식 교육이라고 답한 경우가 45.2%,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43.2%에 달했다. 그 뒤로는 단시간(2~3시간 정도) 이용 가능한 일시 돌봄 서비스는 8.4%, 장난감, 도서 등 대여 서비스는 3.2%였다.

[그림 Ⅳ-10]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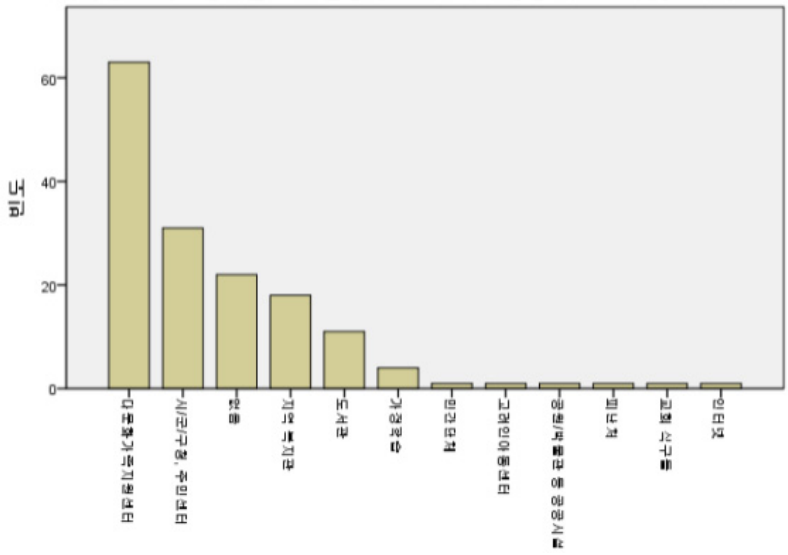
한편 부모님들이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 곳은 가족이나 친지가 가장 높은 26.5%, 다음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16.1%, 친구, 이웃, 동료는 14.8%,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14.8%, 인터넷은 10.3%, 육아관련 서적은 7.7%,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는 3.2%, 그리고 육아관련 전문가가 2.6%로 나타났다.

[그림 Ⅳ-11]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이주배경 부모님들에게 자녀양육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의 공공자원을 물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40.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라고 답한 경우가 20.0%였으며, 지역 복지관은 11.6%, 도서관은 7.1% 였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4.2%가 있었고, 기타 의견 중에는 민간단체나 교회 등을 언급했으며 공원이나 박물관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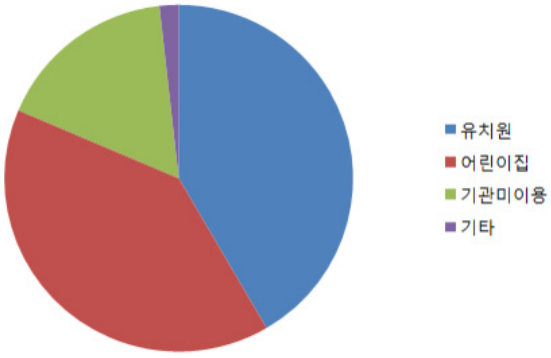
[그림 Ⅳ-12] 이주배경 가족 부모가 자녀 양육에 활용하는 공공자원



다. 이주배경 가족의 유아교육·보육기관 이용 실태

전체 설문 대상자 155명중 72.9%인 113명이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답했고, 27.1%의 응답자는 미취학 자녀는 없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3명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41.6%인 47명,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39.8%인 45명,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는 16.8%인 19명이었고, 학원 등을 이용하는 기타 경우가 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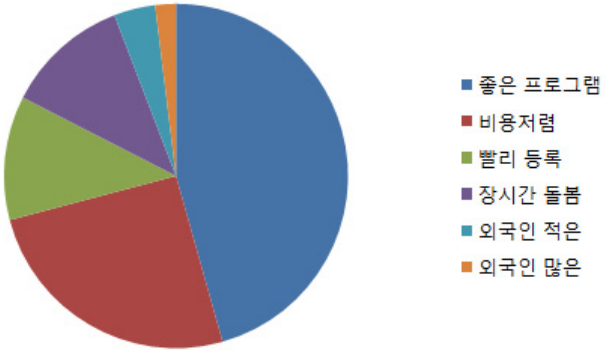
[그림 Ⅳ-13] 이주배경 가족 자녀 유아교육·보육기관 이용 및 미이용 실태



그러나 실제 이주배경 부모를 심층면담한 결과 많은 이주배경 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추어볼 때, 이들의 자녀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를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다만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

자녀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물은 설문에 응답한 103명의 유아 자녀를 둔 이주배경 부모들은 가장 많은 전체의 45.6%인 47명의 부모가 영어나 한글교육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25.2%인 26명, 대기 없이 바로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한 응답과 장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이라는 응답이 각각 11.7%인 12명씩이었으며, 그 뒤로 외국인 아동이 적은 곳 2.6%, 4명, 그리고 외국인 아동이 많은 곳이라는 응답이 1.3%인 2명이었다.

[그림 Ⅳ-14] 이주배경 부모가 자녀의 유아교육·보육기관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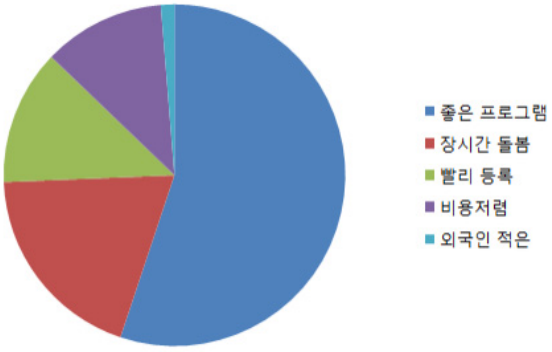
한편 교통시간을 포함한 자녀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97명은 평균 8.20시간이라고 답하였다.

주거지를 처음 결정하거나 이사를 할 당시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고려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3명 중에서 75.7%인 78명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24.3%인 25명이었다.

이사 시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고려했다는 78명에게 어떤 점이 고려되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응답한 유아 자녀를 둔 이주배경 부모들은 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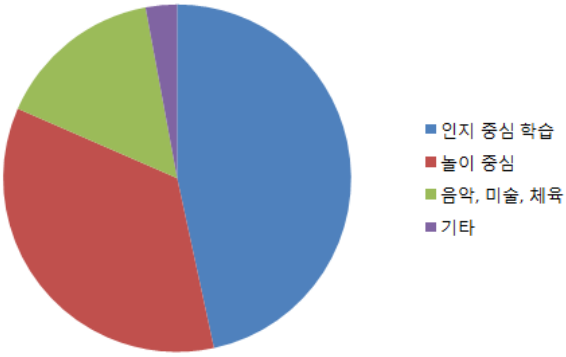
이 넘는 55.1%인 43명의 부모가 영어나 한글교육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이라는 응답이 각각 19.2%인 15명, 대기 없이 바로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한 응답이 12.8%인 10명이었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11.5%인 9명, 그리고 외국인 아동이 적은 곳이라고 답한 응답 1.3% 1명 순이었다.

[그림 Ⅳ-15] 이주배경 부모가 이사 때 자녀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고려하는 기준



한편 한국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103명의 응답자 중 46.6%인 48명은 언어, 수학, 과학 등의 인지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답하였으며, 아동중심, 놀이중심 프로그램이라고 답한 경우는 35.0%인 36명, 음악, 미술, 체육 교육 프로그램이라 답한 경우는 15.5%인 16명, 기타가 2.9% 3명이었다.

[그림 Ⅳ-16] 이주배경 부모가 이사 때 자녀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고려하는 기준



한편,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주배경 부모 94명의 응답에서 매달 기관에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203,80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정에서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8명으로 전체의 8.3%였다.

라. 이주배경 가족의 건강보험 이용 실태

한편 이주배경 부모에게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물었더니 101명이 가입되었다고 답해 최근 법개정으로 건강보험 가입률이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이 이주배경 부모가 느끼는 건강보험 관련 만족도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1점, 조금 그렇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조금 그렇지 않다는 4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먼저 의료서비스 보장 대비 보험료 부담에 대해 물었을 때 “의료서비스 보장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에 평균 2.44의 답을 얻어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에 2.62를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에도 2.76을 보여 자부담 병원비 및 약값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건강보험 외에 가입한 기타 의료관련 보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18.1%인 28명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60,92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주배경 가족 육아 관련 심층면담 결과

가. 이주배경 가족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

1) 병·의원 및 의료(보험) 제도

2019년 7월16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 최소 월 11만원 가량의 건강 보험료를 내도록 바뀌었다.

내국인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의무가입 외국인 최소 비용을 산정했지만 2017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7만원으로 내국인

의 67% 수준임에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를 최소 보험료로 정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이다.

한 신문기사에(이에스더, 중앙일보 2019.10.21.) 따르면 진선미 의원은 “내국인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도 세대원으로 인정해 피부양자로 얹힐 수 있도록 했지만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되어 세대원 구성 제한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 여러 개의 고지서가 청구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비싼 의료보험에도 불구하고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의료보험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의료보험에 대해 불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90829_인도적체류자_시리아 [18929-19238]

통역 : 의료에서 가장 곤란함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지금처럼 회사 직원분들같은 한국분들이 없을 때는 또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이랑도 겹치는데, 아팠을 때 어떤 병원을 가야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그때는 그냥 혼자 집에서 참는 그런 방법으로 버텼습니다.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7203-8167]

(불어 통역) 처음에 병원 이용하는데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많았으나 이제 병원에 자주 비슷한 이유로 가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해서 더 이상 문제는 없다.

(초기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중략...

또한 직장도 없고 ID카드도 없어서 따로 보험을 들려면 비용이 좀 발생했다.

많은 면담 참여자들이 초기 병원 이용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나누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건강보험 없이 병원 이용하기라는 것은 비용에 대한 공포로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도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물론 면담 참여자 중에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있지만, 지역의료보험을 내는 경우에도 이전에 건강보험 없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비 지원을 해주는 단체를 수소문하거나, 난민을 돕기 위해 병원비를 경감해주는 등의 운영을 하는 곳을 찾아야만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190831_외국인유학생_몽골 [5490-5654]

면담자 : 보험이 없으니까 비싸게 말하는데 저희 안산동산교회 다니는 의료적으로 잘 아는 집사님이 있거든요. 집사님 전화했는데 그 병원 소개해줘서 거기서 80% 거의 혜택.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3652-4584]

통역 : 병원을. 저희가 그런 병원을. 00병원이라든지, 무료로 해주는 병원이라든지. 또 000 병원에서 아기 처음에 나을 때 돈이 많이 들었던 것도 000 병원 사회사업부에서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이제 사회사업부에서 그때 제가 이집트에 있어가지고 그때 응급실 비용만 빠진 거예요. 응급실 비용을 다 커버가 됐는데 응급실 비용이 착오로 계속 청구가 됐는데 일 년이 지나니까 내용 증명이 온거예요.

위의 사례와 같이 병원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를 교회나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활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 의원에서 특별히 비용을 받지 않고 난민을 돕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었다.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14606-14763]

통역 : 네. 근데 문 닫으셨어요. 한 번도 못 뵈었는데. 전화통화로만 통역을 하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구요. 다른 시리아 난민한테도 그렇게 하셨데요 그 의사선생님이.

이처럼 건강보험료가 내국인 기준으로도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도입 초기여서 그런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장점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부 면담자 중에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병원을 이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90829_유학생_베트남1-2 [4330-4466]

면담자 : 여기는 교육하고 병원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 찾을 수 있게끔 병원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인권에 베트남보다 더 높아요.

20190830_유학생_베트남2-2 [26076-26772]

면담자 : 임신했을 때 병원 갈 때마다 혼자 갔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신랑하고 엄마 같이 가잖아요. 나 왜 이리 혼자 고생하나 베트남 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있자고 해서 여기는 병원이 베트남보다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있었어요. 너무 빠빴는데 힘들어도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냥 신랑한테 큰소리 했어요. 그때는 배려 많이 했어요. 신랑이 많이 참았어요.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3056-3453]

통역 : 네. 기적의 애예요. 기적의 애. 선생님들이 다 떼라고. 너무 아파서 낳아가지고. 엄마가 담도염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산모를 위해서 아이를 없애야 한다고 했었는데.. 진짜 얘는 기적의 애예요. 엄마가 급성 신우염 걸려서 그때도 생명이 왔다갔다 했고. 워낙 위에 혹이 많아 가지고. 위도 저희가 수술하려고 하다보니까. 위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안좋은 상태에서 계속 아팠어요. 첫째도 그랬지만 둘째는 특히나.

그러나 일선 보건소에서 정책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민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0829_유학생_베트남1-2 [10975-11521]

시민단체 간사 : 보건소 필수 예방접종도 미등록 아이도 다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몰라요

면담자 : 네 맞아요. 안해줘요.

시민단체 간사 : 저희가 보건소에서 거절한다는 얘기가 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에 왜 이런 지침을 안내렸냐라고 이야기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로 보내고 하거든요. 필수 예방접종은 비자 상관없이 무료로 하는거에요.

면담자 : 저희 집도 미등록애기 낳았잖아요. 그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 애기만 무료로 해 주는 거라서 한국 애기만, 등록애기만 혜택받을 수 있다고.

시민단체 간사 :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34919-35110]

통역 : 네, 서울시에서 하구요. 서울에서는 보건소에 가면 산전진료라는거 해주고 비타민도 주고, 칼슘도 주고 그러는데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를 꼭 찾아가서 데려가는데, 구미에 갔더니 절대 안된다고

물론 지자체별로 각 보건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의 사례처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무료 백신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긴급한 의료가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가 이들을 돕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단체의 후원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13099-13835]

통역 : 약혼녀가 언제 죽을지 언제 IS한테 잡혀갈지 모른다고 다 때려치고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이후에도 많이 걱정을 해요 남편. 근데 애들 뭐 계속 그러니까 집안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자주 가고. 엄마도 뭐 아무리 뭐 저희가 무료 병원이런데 한다고 해도 돈이 드니까. 많이 아파서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실은 그때는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너무 큰 도움이 더칠드런에서 그 프로그램 해주신게.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14065-14581]

통역 : 네. 엑소도스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저귀라든지. 희망공제, 희망의 친구들 의료공제회에서 거기서 의료비가, 저희가 무조건 무료로 하는 걸 찾는게 아니라. 왜냐면 무료라든지 지원을 한 번하면 꾸준히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 근처에 자도 지금 집을 모르는데 한 번 너무너무 애기가 아파가지고 열이 막 나가지고 저희 큰 병원을 오라고 말도 못하고, 근처에 있는 병원 찾아가라고 말을 해줬는데 진짜 2년 반을 그 의사선생님이 돈을 안 받고, 계속 돈을 낸다고 하면 안된다고. 00이가(둘째) 이쁘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의무의료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일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마친 후에는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점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가족의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보건소를 통한 보건 서비스 전달체계가 보다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 안전

연구자들이 면담자들에게 한국을 선택한 이유, 한국의 장점에 대해서 이주배경 가족 면담자들에게 물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답은 바로 “안전”이었다. 특히 내전 등으로 출신 국가가 불안정한 난민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점을 주저하지 않고 안전을 꼽았다.

>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9182-9788]
>
> 올 해는 미국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근데 요즘에 마음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도 다 문제 있어요. 근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좋았어요. 비록 한국이 전쟁국가라고 하지만 안을 보면 되게 안전한 나라라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거나 그랬을 때 안전하게 느껴져요. 미국도 유럽도 가보면 테러도 있고 총기 같은 사건도 많고 그런 걸 보면 한국도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교육이 물론 한국 학생들이 약간 교육열이 강한게 마음에 들었고 자기 아이들도 공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른 나라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부모님 존경도 안하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 한국이 그런 것들을 교육 시킨다고.

물론 면담자 중의 일부는 한국사람들의 일부 차별적인 시선을 경험한 것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 20190812_난민_재정착난민1 [7825-7911]
>
>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말하면서 툭치고, 말을 안하고 행동으로 하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가족 면담자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총기 등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고 범죄율도 낮아서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의 큰 장점으로 들었다.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452-600]

통역 : 아니요. 여기가 거기서 있는데 폭격을 맞아 가지고 그 파편이 위로 막 들어가고 그런 상태였어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가지고 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864-960]

통역 : 터키 통해서 000씨가 이 지역에서 여성들을 납치하고 그럴 때라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면담자는 연구자에게 정색을 하며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자신의 출신국에서는 절대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면 뒤돌아서서 총에 맞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안전은 내국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한국의 장점이라고 여겨진다.

3) 교육

이주배경 가족이 한국의 또 다른 장점으로 든 것은 교육이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출신국에 따라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기는 했지만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출신국보다 한국의 교육과 제도가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20190827_난민_인도적체류_중국 [10897-11307]

면담자 : 한국은 문화와 생활방식이 중국과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육은 중국보다 제 생각에는 좋은 좀 더 많아요.

연구진 : 중국보다 한국이 교육이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면담자 : 제 생각에는. 아이 자유시간 많이 있어요

연구진 :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자유시간이 많이 없어요?

면담자 : 대학부담 많이 있어요. 한국 사교육도 지금 심해요. 중국은 더 심해요. 놀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20190831_외국인유학생_몽골 [21267-21546]

면담자 : 몽골에서는 교육 무지 많이 시켜요. 한국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하잖아요. 몽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몽골에서는 학교 들어가면 글씨 다 가르치고 한국에서 숙제도 거의 안주잖아요. 몽골은 숙제도 엄청 많이 줘요. 우리도 사실 한국에 살다 보니 몽골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이라 생각해요.

비록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 너무 인지중심적인 면에 몰입되어 있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위의 예처럼 일부 출신국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는 한국이 오히려 더 균형잡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일부 면담자의 경우에는 육아문화가 출신국에 비해서 더 민주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출신국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체벌을 쉽게 하거나 학교 문화가 여전히 권위적인 경우 한국의 양육 및 교육 문화가 민주적이라고 느끼고 이를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22059-22718]

통역 : 지금 볼 때 제일 큰 차이점은 여기 한국에서는 육아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이론적인 것이나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애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차이나는 거는 거기는 애를 많이 때린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애를 때리는 걸 많이 못 봤고, 아이에 대해서 많이 참아 주는 것 같고...

20190829_유학생_베트남1-2 [4330-4466]

면담자 : 여기는 교육하고 병원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 찾을 수 있게끔 병원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인권에 베트남보다 더 높아요.

20190829_인도적체류자_시리아 [25229-25597]

통역 :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데 시리아에 있을 때는 아이를 어린 아이로 대하지 않고 더 나이가 많은 것 처럼 대하는 엄격한 성향이 있는데. 아이를 대하는 성향이 가장 다르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어하고 시리아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좋아해서 학교 가는 걸 오히려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20190829_인도적체류자_시리아 [25942-26410]

통역: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부모님들이 엄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가족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원들의 태도가 확실히 너무나 엄격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 딸이 시리아로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시리아 학교들이 교원들이 덜 엄격해졌고 10년 전쯤에 체벌 금지가 생겨서 못 때리게 되었는데 한국 교원들보다는 더 엄격하고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딸이 시리아로 가면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위의 면담사례처럼 가정의 양육문화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한데 반해 한국에서는 유아들에게 상대적으로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면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만 다른 한국 부모님들처럼 사교육에 대한 걱정은 이주민들 역시 하고 있다.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8769-8938]

크게 보면 교육이랑 급식인데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기도 하고 큰 아들 같은 경우는 태권도도 하고 한글이나 수학 같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주로 좀 사교육 비용이 좀 많이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12616-12880]

한국 같이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가 예를 들면 인정받지 못할 때 처럼 다른 한국인들과 평등한 교육을 못 받고 안 좋은 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고 그랬던게 별로여가지고 이제 바라는 것은 한국 국적이든 외국인이든 난민인정자든 다 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20190827_난민_인도적체류_중국 [45303-45359]

면담자 : 한국에서 사교육 진짜 심해요. 조금 걱정 있어요.

위의 면담사례에서 면담자는 교육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며 특히 사교육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그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측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표출하였다.

20190829_유학생_베트남1-2 [2007-2122]

면담자 : 사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너무 비싸서. 교육비하고 생활비하고.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물류 같은 건 비쌌잖아요

나. 일-가정 양립

1) 일하고자 하는 의지

이주배경 가족들은 모두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컸다. 대부분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거나 시간외 근로도 자진해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90812_난민_재정착난민2 [2288-2401]

엄마께서 평상시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7시 15분에 출발해요. 아기가 자면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줍니다. 000 엄마가.

20190812_난민_재정착난민2 [7266-7474]

직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가시나요? 토요일에도 추가로 일하실 때가 있나요?
지금 없지만 다음에 나중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옷걸이 만들어요.
... 중략 ...
오버타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애기 때문에 안돼죠.

20190829_유학생_베트남1-2 [3843-4096]

연구진 : 12시간 일하고 논문쓰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혹시 나중에 학위를 받으셨으니까 베트남에 돌아갈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

면담자 : 솔직하게 2015년에 대학교 졸업 했을 때 그때는 베트남 가자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 신랑 아직은 한국에 있고 싶어해서 있었어요.

다음의 사례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사례이다. 면담자 중에는 전업주부인 부모님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었다.

20190831_외국인유학생_몽골 [9150-9519]

면담자 : 네. 한 시간 정도. 아빠 올 때까지
연구진 : 지금 그 어머니는 지금 공장에서 일 한다고 했고, 아버지는 어떤?
면담자 : 아빠도 공장에서
연구진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면담자 : 아빠는 8시부터 5시 반까지
연구진 : 어머니는요?
면담자 : 저는 9시부터 6시인데, 잔업하면 좀
연구진 : 잔업이 있고, 어쨌든 아버지가 조금 더 일찍 끝나시니까 애들은 아버지가 다 봐주시겠네요

20190829_인도적체류자_시리아 [8670-8987]

연구진 : 구직중이라고 하셨는데 4시반이면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오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전에 끝나시는 일을 구하시는건지 아니면 만약에 늦게 끝나시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실 건지, 저녁에는 어떻게 돌보실 계획인지?

통역 : 무조건 4시 반에 끝나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이후에 끝나면 제가 맡길 때가 없어서. 지인이 없으니까

20190831_이주노동자_방글라데시 [18296-18447]

우리 와이프도 일 안해도 되는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얼른 소통이 되야하니까 일 조금만 해도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2) 비슷한 직업

이주배경 가족들의 출신국에서의 직업이나 전공은 다양했다. 간호사 출신, 과학자, 유력 정치인, 사무직 노동자, 헤어 디자이너, 바리스타 등 다양했지만 한국에서의 직업은 대부분 남성은 공장의 생산직, 여성은 공장 생산직 혹은 식당의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20190812_난민_재정착난민1 [1914-2168]

지금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공장에서
이 일을 여기와서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와서 이 기술을 배우신 건가요?
여기와서, 거기 센터에서 회사 보냈습니다.

20190827_난민_인도적체류_중국 [263-364]

면담자 : 지금은 건설일 해요. 아파트 만들어요.

20190814_난민_아프리카1 [3207-3397]

그전까지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했었고 이번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면서 하게 된 직장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일이 첫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18일이 되면 이 직장에 다닌지 1년 된다.

일부는 시간제 개념으로 출신국의 문화나 언어를 활용해 학교의 다문화 강사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규 직업으로는 단순 생산직 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90827_난민_인도적체류_중국 [4546-4813]

연구진 : (하시는 일은) 결혼이민자들 도와주는거예요?

면담자 : 초기교육, 생활상식, 한국문화. 처음에 한국 와서 비자 어떻게 하는지.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저는 옆에서 멘토해요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1958-2207]

어머니는 지금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장 없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다문화 콩고 어린이집에서 가끔 가르쳐줘요.
그전에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비자가 없는 관계로 정규적인 직업은 가질 수 없는 상태...

20190827_난민_인도적체류_중국 [8924-9098]

면담자 : 지금 일은 알바인 것 같아요. 올해는 중국은 한국 국적 취득자 사장이 아는 사장이 있어요. 일하면서도 일당있어요.

연구진 : 일당으로 받는 건가요?

면담자 : 비자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그러나 모든 이주 배경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증의 유형에 따라 정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증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좋은 작장을 얻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비자 문제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면담자 중에서 일부 사례는 경기침체로 인한 업무시간이 감소되거나, 정직원이었던 신분이 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2802-3070]

작년에 일 있었는데 회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람 많이 없고 일도 없어요. 원래는 거기 계속 정직원이었는데 회사가 잘 안되서 정리해고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필요할 때 마다 부르는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고 있다.

20190904_재정착난민가정_미얀마 [9530-9729]

통역 : 공장이예요. 여기 난민사람 거의 거기. 자동차 부품. 자기 남편 7시 출발하고 오버타임 없으면 6시반 퇴근하고 오버타임 없으면 9시반까지. 사장님까지 계속 오버타임 줍니다. 왜냐면 애기가 너무 많아서.

20190831_외국인유학생_몽골 [18993-19160]

면담자 : 네. 회사에서. 원래 남편 그만두고 잔업 좀 잘 하는데 들어가면 좀 더 잘 받을 텐데 근데 못 나가고 그 사람들 지금같이 잘 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만 생각하고 나가냐고

일부 출신국의 이주민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서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1608-2187]

통역 : 네. 애초에. 여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친구하고 둘이서, 여러 명이서 자동차 수리 관련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친구들이 여기 자동차, 중고 자동차 사러 시리아 분들이 오시는데, 중고 자동차를 사려면 그 사람이 이제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을 한 사람씩 데리고 와요. Machanician을 데리고 와서 뭐가 고장이 났는지, 그래야 그 부품을 사고 고장난 부품을 고쳐서 가지고 가고, 여기서 필요한 부품을 사가고 하기 때문에 판매상들이 항상 Machanician을 한 명씩 데리고 오는데, 여기 근처에 사는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라 상인하고 들어왔다가 가기 전쟁 나니까 여기 들어오고.

3) 성공적인 정착

한 이주배경 부모의 경우 생산직 중에서도 단순 생산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옮겨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면담자의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학교도 다니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여 빠르게 한국의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90831_이주노동자_방글라데시 [2582-2959]

바뀌는 이유가 또 있어요. 로프회사가 판매 회사인데 거기서 계속 일하면 앞으로 기술이 없어요. 기술 좀 배우고 싶어서. 계속 비자가 바뀌니까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때 돌아갔는데 그냥 돈만 생기고 여기서 일하면 돈 벌고 끝나면 집에 가고. 근데 여기 있다가 좀 기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똑 같은 일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 일하니까 지금 월급 엄청 많이 받아요.

20190831_이주노동자_방글라데시 [3289-3641]

네. 거기 들어가서 좀 배운 거예요. 경력이 2년 정도 제가 하고 있는데 5년, 7년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없이 400만원 500만원에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데,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일을 빨리 그것도 가서 제가 할 수 있어요. 몇 년 걸리냐고 물어봐요. 1-2년하면 안되요. 기술이.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여러가지 다니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그 다음에 이런 저런

4) 일과 육아

그러나 맞벌이를 원하는 이주배경 가족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의 문제로 인해 구하는 직업의 시간 유형을 맞추기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90829_인도적체류자_시리아 [8670-8987]

연구진 : 구직중이라고 하셨는데 4시반이면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오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전에 끝나시는 일을 구하시는건지 아니면 만약에 늦게 끝나시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실 건지, 저녁에는 어떻게 돌보실 계획인지?

통역 : 무조건 4시 반에 끝나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이후에 끝나면 제가 맡길 때가 없어서. 지인이 없으니까

한 면담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중에 자녀로 인해 구직이 거절된 경험도 있다고 알려왔다.

20190830_유학생_베트남2-2 [3306-3584]

면담자 : 힘들어요. 그래도 애기 낳아도 취직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문화도 그렇기도 하고 여기 친척 없어 가지고 애기 잠깐 볼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도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해요. 여기 싫어해요

연구진 : 회사들이 아이 있다고 하면 싫어하는 구나

면담자 : 네 맞아요.

... 중략 ...

면담자 : 네. 안쓰더라도 물어봐요. 지금까지 제가 몇 군데 다녔는데 다 물어봐요. 저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출장 가잖아요. 베트남이나 해외출장 가는데 아이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20190830_유학생_베트남2-2 [15465-15727]

면담자 : 그때는 애기 있는거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8-9시간 봐줄수 있으면 자기도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간단한 일도 찾을 수 있어서 물어봤어요. 거의 시간 안 맞았어요. 여기 식당일하면 8시 8시반 9시 시작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9시에 시작하면 9시전에 와야 해요.

위의 사례들과 같이 자녀 양육 및 돌봄의 문제로 인해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고자 하여도 구직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아주배경 가족의 경우 어머니는 구직중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았지만 아버지는 대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면담 가족의 아버지들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0812_난민_재정착난민1 [15707-15835]

평일에는 너무 일찍 츨근해서 늦게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주말에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도와주시나요?

도와주십니다. 아이들 샤워해주고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32730-33380]

통역 : 아빠가 많이 자상해서. 보통은 이태원에 가서 사오고. 여기 코스트코 같은데, 수퍼 같은데 가고. 애들하고 놀고 이렇게. 일요일 밖에 안 쉬니까 그런데. 지난 주에는 여기 뭐 놀이공원 같은게 있어서 되게 재밌게 놀고 왔데요.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은 한 4월되면월부터 속초로 가더라구요. 제가 따라서 한 번 가봤어요. 처음으로 이번 주에 지난 주일날 갔었던 곳이 제일 가까운 곳을 가봤데요. 지역 정보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 라파엘에서 하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나머지 두 가정은 거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시죠. 지금 이제 자기가 제일 큰 행사들은 남편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것. 그 집에 있는 애들이랑 노는거.

20190829_인도적체류자_시리아 [24591-24834]

통역 :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빨리 오는거라고. 전부다 같이 해서 아이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같이 한다고.

연구진 : 다른 시리아 아버지에 비해서 많이 도와주는 아버지네요

통역 : 네. 다른 시리아 사람 같지 않다고

20190830_유학생_베트남2-2 [10552-10816]

연구진 : 남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아이 돌보는거?

면담자 : 네

연구진 : 주로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뭐 도와줬어요?

면담자 : 제가 요리하면 신랑은 애기 봐요

연구진 :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켜주고요?

면담자 : 네. 시켜줘요. 너무 착하고 잘 도와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한 면담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이유로 맞벌이라고 들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하니 집에서의 가사와 양육 역시 부부 간에 잘 분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90831_외국인유학생_몽골 [13835-13944]

면담자 : 근데 몽골 남자들이 진짜 잘 해줘요.

연구진 : 원래?

면담자 : 원래 잘 해줘요. 어차피 맞벌이 해야 되니까

부부간의 양육분담은 어쩌면 이들 이주배경 가족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도 모른다. 다음의 사례는 이주배경 가족이 대부분 가까운 친척이 가까이 살지 않고 아는 친한 지인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부부가 오롯이 이를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을 잘 드러낸다.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5918-6156]

보통 다들 다른 가족들도 일단 그런 부탁할 상황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 다른 가족들도 아이들이 있어서 힘든데 맡길 생각하기 어렵다고, 교회에서 만나는 분한테 한 번 부탁했었는데 그 분이 불법체류자여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해서 그런 걸 꺼려했었다고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6737-8571]

통역 : 친정이나 시댁식구 없다는게 너무 속상한데. 다행히 여기는 같은 아파트내에 불임 여성 두 명이 남편들이 거의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있으니까 공동육아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긴 실은. ...중략... 다들 여기 아랍문화는 대가족제도라서 이런 상상을 못 하거든요. 아무도 없는데서 애를 낳는 걸. 친정어머니가 매일 우셨데요. 전화만 하면. 도대체 아무도 없는데서 애를 어떻게 낳냐고. 그 문화에서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척들 다 있는데서 애를 베고 낳고 기르고 하는데. 남편이 진짜 많이 도와줬데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사람이 자상해서.

이와같이 이주배경 가정의 경우 주변에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이 많지 않기에 돌봄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0812_난민_재정착난민1 [1630-1844]

그럼 혹시 어머님도 나중에 일 하러 가실 생각은 있으신거잖아요. 그럼 언제쯤 직장을 구하실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제가 회사에 다닐 수 있으면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직장 안되면 집에서 제가 키워야죠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야근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힘들지만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반긴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면담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에 의하면 공단이 밀집된 안산 및 경기도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에 인접한 곳에 사는 이주민의 경우 농장 작업의 특성 상 새벽부터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창 일할 시기에는 5시부터 일해야 해서 거주지에서는 4시에 일터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24시간 보육 시설 외에 인가된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이들의 자녀를 돌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들은 미인가 시설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 미인가 시설은 제도권 밖에서 이들의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났다.

다. 보육에 대한 추구

1) 맹모삼천지교

한 면담자의 경우 자녀의 어린이집을 위해서 집을 이사했다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어머니가 그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거리 문제로 이사까지 결정하는 데에는 다른 요소도 있었겠지만, 자녀를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20190830_유학생_베트남2-2 [20891-20972]

면담자 : 네, 처음에는 여기 아니고 멀리 살고 있었는데 어린이집 때문에 이사했어요.

특히 이 어머니의 경우 단지 보육 시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질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90829_유학생_베트남1-2 [4970-5655]

연구진 : 경기도에는 시마다 세 군데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 30% 보육비를 깎아주는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면담자 :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연구진 : 혹시 알아보신적 있으세요?

면담자 : 아니요. 지난번에 본 적 있어서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제가 혹시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거긴 지원받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보다 차이가 있다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편 면담과정에서 이주배경 가정의 부모님들이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종종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원금을 받는 곳에서는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경우보다 질낮은 교육 보육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 다른 면담자의 경우에는 안산시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정책이 도입되자 인근 도시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경우였다. 주거지가 인근이어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때마침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지만 면담자는 전에 살던 곳에 공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전했다.

20190831_이주노동자_방글라데시 [7942-8483]

이것 때문에 넘어 온거 맞아요. 이것도 좀 생각해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집 근처에 원래 시흥에 계속 산 이유가 집 근처에 시흥어린이집 있었어요. 거기 3년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거기 입소하려고. 근데 거기서 한국사람하고 중국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아예 안돼요. 그 다음에 제가 시흥에 사는데 안산 여기 난민 거주민 어린이집 있어요. 거기 전화하니까 바로 자리가 있으니까 2018년부터 거기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고 있는데 집이 여긴데 여기 자리가 더 없는데 멀리 살아서 그냥 질문도 안하고 어린이집 근처에 이사왔어요. 어린이집 거기 계속 다녔어요 2년 동안.

한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체제는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선발할 수 없음에도 아마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해 늦게 입소하는 것을 체류자격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0831_이주노동자_방글라데시 [38989-39694]

특히는 저희는 여기는선생님들하고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 4명에 한 명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잘 돌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도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만 시립에 보내는 건데, 그 전에 개인으로 보냈는데 두번째는 아파트 안 쪽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제일 새거예요. 4개월만 다녔는데 거기서도 노래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놀이터에가서 놀이하고 배우는거 엄청 빨리 배웠어요. 거기보다 여기는 시립하고 개인은 제가 거기에 여러가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있는데 잘 안지내요, 누가 때리고 누가 시끄럽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나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배우고 어린이집 끝난 다음에 놀이터에서 같이 좀 놀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좀. 배우는 건 거기서 제일 빨리 배웠어요.

위의 면담 사례는 아버지였음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름 파악하고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부모님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이주배경 자녀를 위한 질높은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미인가 보육시설 이용 혹은 방임

농촌에서 일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일터로 나서는 맞벌이 이주민들은 주로 미인가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촌과 인접한 지역의 NGO 단체 관계자는 5명 정도의 영아를 돌보는 미인가 가정어린이집은 1명당 35~45만원의 비용을 받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밝히며 주변에 이런 곳이 약 2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는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으나 주로 3~5세 중심이며 운영시간이 8:30~17:00 정도로 인근 농촌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시간이 문제라고 말하며, 다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부모의 경우 이런 인가 시설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농촌지역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장시간의 노동, 혹은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를 감당할 수는 없다.

>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낸다 하더라고 사실 이게 다 100% 커버되지 안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방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방임?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그리고 이전에 조사해보면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을 놓고 부모님이 출타를 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들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토요일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행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으니까 엄마가 공장 데려가서 한쪽에서는 아이가 놀고 한쪽에서는 엄마가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저희 지역에선 있었죠. 그런걸 보고 그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그게 보이잖아요. 자칫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게 사실
>
> 2019 8월 22일 NGO 대표 면담

또한 이러한 이주민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의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12시간 미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입소대기시스템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등록하기에 어린이집에서 이주민의 자녀라고 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어린이집에서 거절 당한 경우 경기도 북부쪽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기도 하고, 여기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라는 전화도 받고 그랬었어요.

연구자) 거절당한 이유가?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주노동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 인터뷰를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내보낼 건 아니고 외국 아이들이 오면 받아줄 건가,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60% 이상이 받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일단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 부모님들이 싫어한다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

2019 8월 22일 NGO 대표 면담

이와 같이 어린이집 입장에서 장시간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이주민의 경우 여러모로 운영에 문제로 여기고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 줄어들면서 이런 입소 거부 문제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역에 따라 아동이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입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디어 사용

모든 면담자는 집에서 자녀와 모국어를 사용해 의사소통하고 있었다. 한 면담자는 주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의사소통한다고 했으나 난민 캠프에 지낼 당시의 영향을 받은 자녀의 언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국어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 이주배경 부모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어를 자녀에게 꾸준히 가르치기 위해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3514-3775]

네, 한국사람이예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불어보다 한국어 더 좋아하고 편해해요.

(연구자) 집에서 그러면 불어를 책으로 가르치거나 따로 교육하시나요?

네네, 안산 도서관에 불어책들이 있어서 그거 이용해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역의 도서관에 불어 서적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도서관이 다양한 언어의 서적을 구비할 수 없다면 언어별로 거점 도서관을 선정하여 지역에서 가족의 언어로 된 서적을 구비한 도서관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한편 위의 부모는 자녀에게 휴대전화는 허용하지 않고 텔레비전으로 제한된 시간만 가족의 언어인 불어방송을 시청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클수록 한국어 방송을 더 선호하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11553-11693]

다같이 TV로 불어 방송 본다고 하네요. 유튜브에서도 한국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어 만화 같은 것도 본다고. 하루에 30분씩 불어 만화 채널 같은거

20190814_난민_아프리카2 [11695-11964]

어머님이 보시기에 다 관찰하실 수는 없을지라도 비율로 보자면 불어 방송을 보는 비율과 한국어 방송 보는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주로 한국 쪽으로. 부모님쪽에서는 불어쪽을 보게끔 하긴하지만 한국어가 더 편하고 친구들이 한국어로 된 걸 보니까 같이 얘기하려면 봐야 해요.

다른 면담자의 경우에도 자녀의 과도한 핸드폰 사용한 동영상 시청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829_유학생_베트남1-2 [14246-14516]

면담자 :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 많이 보지 않게 협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진 : 잘 따르나요? 아이가 저항하지 않고 잘 따르나요?

면담자 :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해요. 어렸을 때는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적응했어요

그러나 부모가 지나치게 모국어 방송을 보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해당 통역가는 이 가정과 오랜 친분을 쌓아오며 자세한 이야기를 부가설명해 주었는데

통신의 발달로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방송하는 미디어가 많아져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도 줄어들고 자녀들의 멀티미디어 시청에도 너그러워지는 것을 걱정하였다.

20190828_난민_인도적체류_시리아 [43234-43654]

통역 : 사실은 그게 문제인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TV를 안봐요. 다른 집들 같은 경우에는 올레라든지 연결해서 한국 TV를 보면서 엄마도. 근데 지금 엄마들이 터키 드라마에 빠져있거든요. 터키 드라마에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어도 안 배우고, 애들 육아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 엄마들이 지금 있어요. 이 엄마는 지금 괜찮지만, 서울에 있는 엄마 하나는 아이한테 아예 알림장 전혀 자기가 몰라도 다른 딸이 있어서 보면 되는데 전혀 신경 안쓰고

3. 소 결

본 장에서는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를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중 두드러지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주배경 가족의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한국 내에 자녀를 돌보아줄 친척이 많지 않은 이주배경 가족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긴급히 대리양육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기관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4 이상이 아무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도 이어지는 결과이다.

부부간의 양육분담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돌보는 것이나 목욕시키는 것은 더욱 어머니가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양육시간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하여 주말이나 주중이나 더 적었는데,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어머니의 경우 유아가 기관을 이용하는 주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전체 이주민 중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어머니의 소위 “독박육아”가 가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설문을 통하여 이주배경 부모님들은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을 물었을 때 부모

교육을 제일 우선으로 꼽아 자녀의 발달에 관한 지식 등을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 실태를 묻는 설문을 통해 연구진은 설문에 참여한 이주배경 가족 중 83.2%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인데, 임의표집에 의한 결과이기에 일반화하기엔 어려울 수 있지만, 갈수록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사를 하는 경우에 자녀의 교육·보육 기관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이 75.7%여서 이들 이주배경 가족의 삶에서 교육·보육 기관이 매우 중요한 관심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이주배경 가족이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선택하는 이유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이라고 답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또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주배경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분야도,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야도, 그리고 역설적으로 만족도도 높은 분야가 의료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이주배경 부모들은 자녀 양육 이전에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근 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그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주민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사교육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여서 그런지 교육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한편 설문지 분석에서도 이주민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담에서도 이주민들은 학력이나 전공 분야에 무관하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단순 노동으로 유사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특히 어머니의 경우에는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연구진은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으로 이사를 갔다는 면담자를 여럿 접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원하는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입소가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어서, 어떤 이는 보육료가 지원되는 지자체를 찾아서 등의 이유로 이사를 했었노라고 이야기하였다.

V

이주배경 가족 육아지원 방안

01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의 방향

02 이주배경 가족 육아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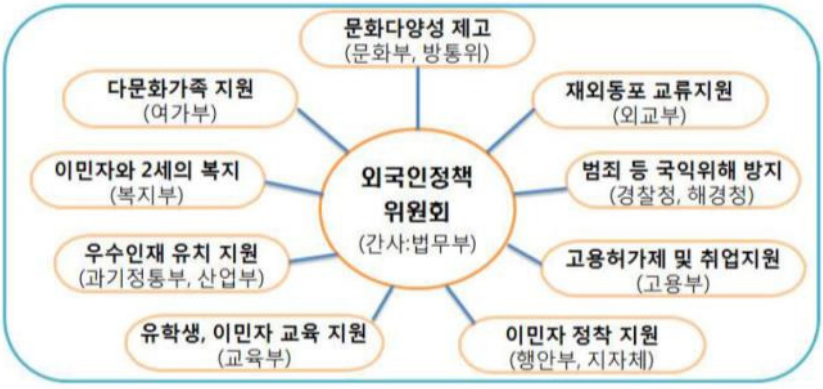
03 주체별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 제언

Ⅴ.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의 방향

1.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의 이주민에 대한 기본 정책은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으로 매우 다양한 부처가 포함되어 있다(법무부, 2018).

[그림 Ⅴ-1] 외국인정책위원회 분야별 담당 위원부처



출처: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p.4.

법무부(2018)는 외국인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5가지로 개방, 사회 통합, 안전, 인권, 협력으로 밝히고 있다. 즉, 개방을 통한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럼에도 안전하고, 한편으로는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며, 상호간에 협력하는 사회를 그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인권, 이주 아동의 권리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기본적으로 아동과 그 아동의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는 국제아동협약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도 출생지역이나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되어 있어 한국 국적의 원주민과 구별되어 처우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존재한다.

특히 다양성의 시대, 저출산의 시대에 이주민이 더 늘어가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교류 역시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포용정책은 해당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절실한 정책이다.

아동의 국적권은 사회적으로 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연구자, 그리고 관련 단체 등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처럼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등록된 이주배경 아동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국적을 중심으로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정책을 보편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출발해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사회 통합적 관점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정책의 기본 방향의 두 번째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부처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민 정책과 관련한 부처는 거의 모든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이주배경 가족의 문제는 소수의 주관부처가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이며, 다양한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이주민의 수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정책은 여전히 해당부처의 우선순위에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이주민 가족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간의 상설적이고 능동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사회 통합적 관점은 정책 공급자의 통합적 지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의 대상인 이주민과 그 가정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 구성원별로 국적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혹은 귀화자, 그리고 연령에 따라 성인과 아동, 체류 자격에 따라 영주권자, 취업이 가능한 정도, 수학이 가능한 정도 등이 모두 다르다. 이처럼 개개인의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정책이 모두 나뉘어 있어서 복잡하고 담당 부처 및 행정기관, 전달체계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주민과 그 가정을 통합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지하고 이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다. 이주민의 불가시성(invisibility) 해소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정책의 세 번째 기본 방향은 이주민의 불가시성 해소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이주배경 가족 육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가시성(invisibility) 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각종 교육 및 보육 통계에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추정치만 존재할 따름이다.

이주배경 아동,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이 부모의 출신국가인 경우도 있으나 한국에 대사관이 없거나 난민의 자녀나 여러 사정에 의해 국적국에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현재 가능한 최선의 신분 확인은 출생신고 접수증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2018)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헌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개방된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 이주배경 가족이 각종 통계 및 정책의 기본 검토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이주배경 가족 육아지원 방안

연구진은 위와 같이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지원 3대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가. 법령에 따른 적극적 지원

일부 기 도입된 이주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관 및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정기관 및 전달체계에서 이와 같은 이주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담당자도 인지하고 있으나 일선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어 별도의 수기작업을 통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가 이주민과 원주민을 구별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발굴도 함께 이루어져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이주민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 지원체계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금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는 아동의 국적이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다. 초등 입학전 90% 이상의 유아가 거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주배경 가정의 아동과 다른 아동 간의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특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경우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의 경우 등록 이주 아동일지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초등학교 이전에 이들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안산시에서 이주민 영아 및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인상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유아의 보육료 및 학비 지원 정책은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체계가 아닌 이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아동이 이용하는 교육·보육 시설 중에는 미인가 시설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 이주아동이 미인가 시설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가시설에서 이들 이주아동을 입소시키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절차상 까다로워서, 혹은 다른 부모님들이 꺼려서 등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주아동의 입소를 반기기보다는 가급적 다른 기관으로 갔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기관의 운영의 불법적, 편법적 운영 요소로 간주되어 더욱 입소가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 기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와 제도가 오히려 이주민이 인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이주아동이 이용하는 인가시설의 경우 이주아동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원 등과 같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주배경 가족의 경우 종종 출신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한 달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아동을 위한 자리를 비우기가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이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미인가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간접 지원

이주아동을 수용하는 시설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편으로는 인가 및 등록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으나 한편으로 이들 기관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이러한 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태에도 공백이 존재한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시설에는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하다가, 정작 인가시설이 되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민간단

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후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경계선상에 있는 기관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이들을 후원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고려인 마을의 경우 미인가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미인가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가능한 간접 지원을 모색하고, 한편으로 미인가 시설 역시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인가시설과의 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라. 이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지원

본 연구를 통하여서 이주민의 교육수준과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및 자녀의 교육 및 보육 체계에 대한 이해도 등에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2차집단과의 관계(weak tie)가 약한 이주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연 및 지연에 의한 1차집단의 관계(strong tie)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더욱 strong tie 에 의존도가 높으며 이러한 strong tie 에 의존한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감수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주배경 가족의 낮은 학력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을 통해 이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부다처, 조혼,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모를 위한 교육기회는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 교육, 등이 우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의 도서관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및 교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별로 특정 언어 및 문화적으로 특화된 기관을 지정하여, 각 문화권 및 언어별 자료를 접근하기 쉽게 배치한다면 이주배경 가족이 쉽게 접근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주민 부모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이주민 부모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주민 부모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자녀의 교육 및 보육 기관을 통해서도 부모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 이주민 정책 조율을 위한 컨트럴타워 구축

이주민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앞서 이주민 가족 육아정책의 방향에서 밝힌 바가 있다. 안산시에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있고 이는 시청과는 별도의 청사를 사용하며 같은 건물 내에 각 부처의 파견 사무소가 위치해 이주민이 원스톱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렇지만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한 직원은 연구진과의 면담에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수의 직원이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도맡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컨트럴타워의 역할은 관련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역할은 필요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소수의 이주민 관련 부서가 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극적인 처리는 담당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 전반이 이주민 혹은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분야에서 이주민이 맞는 문제가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바. 영유아 자녀 가정의 지역 건강보험료 지원

2019년 7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면서 많은 이주배경 가족의 부모들이 환영의 목소리로 이를 반겼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주민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여전히 원주민에 비하여 자부담하는 진료비와 약값 등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 뿐 아니라 구직 및 취업이 제한적인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역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저소득 가구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중위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녀를

임신하고 있거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매우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현재 유학생들에게는 의무가입을 유예할 수 있고, 또한 50%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주체별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 제언

가. 중앙정부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을 통해)에서는 영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국민에 한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 역시 국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앞서 살핀바 대로 이주민이 직접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세금이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은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정책대상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국민을 기반한 접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을 포함한) 주민을 기반을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접근에 기반하여 각 부처, 특히 보육·교육 관련 부처의 기본계획 수립에 이주민과 이들의 자녀를 모두 포괄한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자를 고려하고 이들이 취학수요조사 등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양한 정책 중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정책을 가려야한다. 2016년 독일연방정부의 아동 양육수당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아동 양육에 대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아동 양육수당을 주로 이민자, 저소득층에서 수령하며 이로 인해 이들이 기관에서 보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역설에 대한 우려가 논란거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주배경 가족에게 국민과 동등하거나 준하는 정책 방향으로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등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이주민을 구분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안산시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매결연 등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도 갈수록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는 없다. 안산시의 경우 특수한 사례일 수 있지만, 안산시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이주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궁극적으로 지자체는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선택이 결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정책임이 밝혀질 것이다.

다. 시민단체 등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이주민의 정착부터 취직, 자녀양육 등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시민단체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의 가정에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활발히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동관(2016).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IOM 이민정책연구원

강희영, 문영민(2017).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관계부처 합동(2015). 2015~2019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2015). 국내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보고서.

국세청(2019. 1. 15). 보도자료. 2018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권미경·이재희·최인화 (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나희(2019). 이주아동보육가이드북. 아름다운재단지원

김보연(2019). 토론문, 외국아동의 국내로의 국제입양 관련 헤이그입양협약 이행 준비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집.

김소영, 송효진, 김연재(2016). 이주가족의 경험을 통해 본 자녀 보호 이슈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45-158

김용미(2007). “미국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관리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아동교육. 16(2). pp: 17-30.

김이선. (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김철효(2011).Global Migration Trends.

김철효(2011).Global Migration Trends.

김철효·김기원·소라미·신예진·최서리(2013).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김판준. (2018).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자녀 현황 및 과제. 디아스포라 연구, 2018(12), 121-138.

김현미·이호택·이혜진·신정희·이연주·김주현·정혜연(2013). 한국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김현미·이호택·최원근·박준규·류유선(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김환학(2016).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 합리적 난민 인정절차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법무부.

난민인권센터(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남영옥(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37-47

노충래·고주애·윤수경·김주리(2017)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노현웅(2019. 6. 24.). 외국인은 한국에 기여한 바 없다? 황교안의 주장은 틀렸다, 한겨레신문.

문병기·장임숙·정동재·송형주·박미정(2018).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법무부

문부과학성(2015). “외국인 아동 학생을 위한 취학 가이드 북”

문부과학성(2016).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현황”

박범종(2017). 다문화마을 특구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박봉수·선곡유화·이영선(2014).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 고찰: 학교 적응 및 지원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0. pp: 62-91

배상률·고은혜(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 ~ 2022년). 법무부.

법무부(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2015). “2015년도 드림스타트 국외연구 결과보고서”.

빈현준·육동형·강성환·공존행(2018).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법무부

송미영(2016). 충남 외국인 유학생 인권실태조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송효진·김소영·이인선·한지영(2015).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윤적·유재언·김혜영·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2019). 헤이그입양협약 이행 관련 외국아동의 한국입양체계 내 실무준비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정책방안 중심으로, 외국아동의 국내로의 국제입양 관련 헤이그입양협약 이행준비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집.

신윤정·이창원·이규용·Li Hua·Nguyen Thi Tham·Maruja M.B. Asis·Sachi Takahata·Hong-Zen Wang·장은숙·전임자·양미선·최혜리·최서리김철효·이탁건·권영실·박미화·

신은주·조성희·김희주·박정아(2018). 난민아동지원 성과평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안천(2011).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본 거주 외국인의 현황”. 민족연구. 48. pp: 60-74.

오정은(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조사 II. 재외동포재단

이상지·강동우·김이선·최윤정·주수인(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유민·오은정(2016). 2016 국내외 난민아동 서비스 체계 현황 조사, 세이브더칠드런.

일본 문부과학성(2014).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명 등의 시행에 대한 통지

일본 문부과학성(2019). “외국인 아동 학생 수용 안내서”

장명림·권미경·김혜진·공요은(2013). 취약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장복희(2008).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국내법제도 개선, 원광법학, 24권 4호, 291-320.

장임숙(2018). “싱가포르의 이주아동에 관한 정책”.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상우·박지인. (2018).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11(1).

정철운(2019. 3. 7.) 루렌도 가족, 인천공항 벗어나 ‘난민’될 수 있을까, 미디어 오늘.

중앙일보(2018.06.01.). “일본 출산율 1.43, 그래도 1.05 한국보다 훨씬 높아”.

2019년 11월 4일 검색(https://news.joins.com/article/2267789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2019년 1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 에서 2019. 3. 11. 인출.

통계청·법무부(2018). 보도자료: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역사와 최근 이슈”.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2016. 2. Vol.5.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홍현미라·장혜림·이세원·이은정·오윤진(2016).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현황 및 정책 연구”. 아름다운재단

홍현미라·장혜림·이세원·이은정·오윤진(2016).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현황 및 정책 연구”. 아름다운재단

DIAC.(2011). The People of Australia - Australia's Multicultural Policy. In DIAC(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Guillén, M. F. (2001). Is globalization civilizing, destructive or feeble? A critique of five key debates in the Social Science Litera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235-260.

Keith McNamara(2016). “Dual Language Learners in Head Start: The Promises and Pitfalls of New Reforms”.

Maki Park and Caitlin Katsiaficas(2019). “Leveraging the Potential of Home Visiting Programs to Serve Immigrant and Dual Language Learner Families. 미국 이민정책연구원. 2019년 8월.

National Home Visiting Resource Center(2018). 2018 Home Visiting Yearbook.

Portes, A., & Fernández-Kelly, P. (2008). No margin for error: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among disadvantaged children of immigrant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0(1), 12-36.

〈웹페이지〉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https://www.dhs.gov/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http://news.kotra.or.kr/

미국 이민정책연구소. https://www.migrationpolicy.org/

싱가포르 사회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sf.gov.sg/

싱가포르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singstat.gov.sg/

일본 기업주도형보육사업 홈페이지
https://www.kigyounaihoiku.jp/institution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cao.go.jp/

일본 내무성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헤드스타트 홈페이지. https://eclkc.ohs.acf.hhs.gov/

호주 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humanservices.gov.au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abs.gov.au

Abstract

Investigation on the childcare and the support policy for the family with migrant background

Wonsoon Park, Ja Yeun Koo, Bomi Kim, and Da Hee Lim

The number of migrants staying in Korea is increasing and it has long been over 2 million. Depending on the growing number of migrants, their contribution to Korea's economy is significant. Migrants directly pay an income tax of more than 1.2 trillion won, and their overall economic impact is estimated more than 53 trillion won.

Compared to this growing number of migrant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childcare policies for their children could not keep up the pace. This study deal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 rearing of migrants with children lower elementary schoolers or younger children.

The researche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2 migrants and 3 migrant support work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researchers and, in some cases, by relevant civil society workers and interpreters. The study also surveyed 155 migrants from 27 countries. The questionnaire was translated into English, Russian, Chinese, French and Arabic.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through the web was answered by accessing the Internet through a mobile phone and a personal computer, but there were some cases where a paper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web.

More than 25% of the migrants in the survey answered that they have no one to ask take care of their children when they had emergency.

Paternal care rate was too low, especially the families who care their children at home because of long working hours. Most migrants who send their children to child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were paying self-pay, which averaged about 200,000 won. On the other hand, foreigners were satisfied with the newly introduced health insurance mandatory system in July 2019.

In-depth interviews show that migrant parents are no les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s education. Migrants' birth declaration has both negative aspects of state control and positive aspects of ensuring individual status. However, in many cases, there are limitations in providing basic services in Korea, so a system is needed to verify births and prove them separately from citizenship. In addition to the migrant children, there is a need for parental education. To this end, more support is needed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such as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Migrants have no choice but to use unlicensed facilities. In this case, they face the double difficulty of not being able to guarantee the level because they are placed in blind spots of various kinds of management as well as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in the case of unauthorized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rvice support through indirect support measures such as the support of manpower to the sponsoring instit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guarantee the minimum quality level, such as program support, for unlicensed facilities.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6 points;

First, active support under the law is needed.

Second, childcare and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young children of migrants should be reinforced.

Third, Indirect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unregistered childcare facilities is required.

Fourth, systematic parent education support for migrants is required.

Fifth, control towers for policy coordination for migrants are needed.

Sixth, local health insurance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is required.

Key words: migrant background, childcare, childcare subsidy, paternal parenting

부록

부록 1. 면담질문지

1. 이주아동 부모

구분	내용
기본 정보	•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귀하의 자녀는 몇 명이며, 몇 년생입니까? • 귀하의 자녀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 가족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 및 돌봄	•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 등이 있습니까? • 자녀 양육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귀하의 출생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의 자녀 양육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 귀하의 자녀는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이용하는 경우: 현재 다니는 보육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육기관을 보내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자녀의 보육기관 생활은 어떠한가요? 자녀의 등원 및 하원시간은 몇 시입니까? 보육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면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육기관을 보낸 적이 없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아이는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자녀와 평일과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 자녀 양육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병원이나 약국 이용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자녀의 언어	• 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 자녀의 언어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취업	• 가족 중 취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취업한 가족의 직장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 취업한 가족의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인적 네트워크	• 현재 주로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출신국 사람들과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이 있으십니까?

2. 이주아동 보육 기관 종사자

구분	내용	상세내용
시설 운영 관련	어린이집 설립 배경	•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설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어린이집 운영 규정	• 어린이집 입소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외국국적자인 이주아동도 입소대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우선입소 순위를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선입소 순위를 부여합니까? •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현재 보육료 지원이 국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인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으며 혹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 현황	• 체류자격별 아동 현황(등록/미등록 등) • 시간이용별 아동 현황(종일/24시간 등) • 연령·국가별 아동 현황 •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이주배경의 아동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이나 특징이 있습니까?
	운영상 어려움	•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 그 외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주아동 관련	어린이집 이용 전	• 어린이집 입소 전에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돌봄 환경에 있었습니까?
	어린이집 이용 후	•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다른 아동에 비해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 만약 두드러진 특징 및 차이가 있다면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 어린이집 적응, 언어 및 의사소통, 건강, 친구 관계 등은 어떠합니까?
이주아동 부모 관련	어린이집 이용 관련	• 지역의 이주노동자 중에서 어떤 부모가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어떤 부모가 이용하지 못(안)합니까? (등원시간과 출근시간의 차이 등)
	교사와의 소통	• 이주노동자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원활히 의사소통합니까?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어린이집에 요청하는 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양육 및 교육	•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원 방안	보육시설 및 이주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전달체계 및 기관에서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예. 교육자료, 보육료 지원, 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건비 등) • 이주아동 보육 기관 종사자로서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를 위해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재정, 법령, 제도, 사업 등)

부록 2.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 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 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 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 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 ·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 ·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12.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 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교수(E-1)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 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 · 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 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절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2. 선원취업(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제3조제1호 · 제2호 · 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 · 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 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 · 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25.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9.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 · 업무연락 · 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 · 제철소 ·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 · 환경설비 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파) 생활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너)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 · 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02)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저) 한식 음식점업(5611) 처) 외국인 음식점업(5612) 커)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터)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허)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로)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모)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보)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소)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오) 욕탕업(96121) 조) 산업용 세탁업(96911) 초)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코) 가구 내 고용활동(97)
30. 기타(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1의2]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 전문(全文) 〈개정 2018.9.18.〉

부록 3. 이주배경 가족 양육 실태 설문

ID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

안녕하십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코시안의 집, 피난처, 고려인 인문사회연구소, 아시아의 창, 글로벌호프 희망의 마을센터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고 확인한 분들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분께서 설문 응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위의 기관에 확인하시고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연락처: 육아정책연구소 김보미 연 구 원 (02-398-7746, bom85@kicce.re.kr)
박원순 부연구위원(02-398-7741, wonsoonpark@kicce.re.kr)

설문 응답자 확인

SQ1. 실례지만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와 배우자는 모두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입니까? (귀화 신청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reject)

SQ3. 귀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reject)

SQ4. 이 설문을 추천받은 기관은 어디인가요?
① 코시안의 집 ② 피난처 ③ 아시아의 창
④ 고려인문화사회연구소 ⑤ 글로벌호프 ⑥ 해당 없음(▶reject)

SQ5. 귀하의 이름 혹은 닉네임(추천 기관 확인용)
( )

탈락 문구: 이 설문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시안의 집, 피난처, 고려인 인문연구소, 아시아의 창, 글로벌호프 희망의 마을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기관/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관/단체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기초 정보

구분	Q1. 아버지	Q2. 어머니
출신 국가		
나이		
교육연수(한국 입국전)		
교육연수(전체)		
한국내 거주기간(년)		
체류 비자		

구분	Q3. 자녀 수
총 자녀 수	
초등 3학년 이하 자녀 수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	

Q4. 자녀의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① 자녀의 부모
② 친척(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등)
③ 자녀의 형제, 자매
④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Q5. 귀댁의 (세후)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단위 : 만원)
( )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이용 실태

Q6.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Q15)

※ 자녀가 여럿일 경우 미취학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Q7. 귀하의 자녀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어린이집(▶Q9)
② 유치원(▶Q9)
③ 미술학원 등 반일 이상 다니는 유아 대상 학원(▶Q9)
④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음(▶Q8)
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Q9)

Q8. 귀하의 가장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미술학원 등 반일 이상 다니는 유아 대상 학원
④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음(▶Q15)
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Q9.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 등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였습니까?
① 좋은 프로그램(영어, 한글 교육 등)
② 빨리 다닐 수 있는 곳
③ 비용이 적게 드는 곳
④ 외국인 아동이 적은 곳
⑤ 외국인 아동이 많은 곳
⑥ 장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

Q10. 교통시간을 포함하여 자녀가 유아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입니까? (단위 : 시간)
( )

Q11.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주거지를 정하거나 이사를 고려할 때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Q13)

Q12.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 등의 어떤 점이 이사 시에 고려가 되었습니까?
① 좋은 프로그램(영어, 한글 교육 등)
② 빨리 다닐 수 있는 곳
③ 비용이 적게 드는 곳
④ 외국인 아동이 적은 곳
⑤ 외국인 아동이 많은 곳
⑥ 장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

Q13. 한국 유아교육/보육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①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② 언어, 수학, 과학 등 인지 중심 학습
③ 음악, 미술, 체육 교육 프로그램
④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Q14. 귀댁 자녀의 교육/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매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십니까? (단위 : 원)
( )

가정 내 양육

Q15. 귀댁에서 부부간 자녀 양육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참여비율**을 답해주십시오.

참여비율	어머니 0% 아버지 100%	어머니 20% 아버지 80%	어머니 40% 아버지 60%	어머니 60% 아버지 40%	어머니 80% 아버지 20%	어머니 100% 아버지 0%	비해당 (한부모)
밥 먹이기							
옷 입히기							
놀아주기							
아플 때 돌보기(병원 데려가기)							
목욕시키기							
종 합							

Q16. 귀댁에서는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주중과 주말에 자녀를 돌보는 데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시는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Q16-1. 아버지	Q16-2. 어머니
주중(하루 평균 시간)		
주말(하루 평균 시간)		

Q17. 귀하는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Q18. 귀하의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를 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 일이 바쁘기에(늦은 퇴근, 주말 근무 등)
② 평소에 육아에 관심이 없기에
③ 자녀 양육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④ 관심은 있으나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하기에
⑤ 다른 가족들이 아이 돌보기를 다 하기 때문에
⑥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Q19.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양육비용 과다
②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③ 일할 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음
④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음
⑤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려움
⑥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Q20. 자녀를 양육하면서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① 아이의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지
② 외국인 친구·이웃·동료
③ 한국인 친구·이웃·동료
④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⑤ 민간 단체
⑥ 없음
⑦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Q21.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① 신체·정서·인지 등 아이 발달관련 지식 교육
② 장난감, 도서 등 대여 서비스
③ 단시간(2~3시간 정도) 이용 가능한 일시 돌봄 서비스
④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지원

Q22. 육아 관련 정보를 어디서 주로 제공받습니까?
① 가족이나 친지
② 친구·이웃·동료
③ 인터넷(까페, 블로그 등)
④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⑤ 육아관련 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⑥ 공공기관(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등)
⑦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⑧ 육아 관련 서적(잡지 포함)
⑨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Q23. 귀하가 평소 자녀 양육을 위해 활용하는 지역사회 공공 자원은 무엇입니까?
① 시/군/구청, 주민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지역 복지관
④ 도서관
⑤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의료 관련

Q24. 자녀는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Q26)

Q25.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세부항목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Q25-1. 의료서비스 보장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Q25-2.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Q25-3.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Q26. 자녀는 건강보험 외에 기타 의료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종료)

Q27. 보험료는 매달 얼마입니까?
(단위 : 원)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20
9 791190 485012
ISBN 979-11-90485-01-2